

연구보고서 2012-10(제467권)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전대욱 · 박승규 · 최인수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2012. 12

연구진

연구책임 : 전 대 욱 (수석연구원)

연구진 : 박 승 규 (수석연구원)

최 인 수 (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관련정책의 지향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는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격차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는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반면,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요원하다. 일찍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의 실패로 대별되는 공공재와 분배·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 후반 EU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파탄 등으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심도시가 아닌 주변의 소규모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현대 산업사회에서 무너진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UN에서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발전전략(Community-Based Development)로부터 보다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법제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은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발효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구현을 위한 노

력은 지역적인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쇠퇴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주변지역들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나 수원시, 순천시, 완주군 등 자치단체에서도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함께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발전패러다임의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당당한 세계무대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 하에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가속화시키고 지역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의 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로부터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점정책(기본)연구과제의 하나로 기획된 본 연구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세 명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표환



그간의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밀집적 중심지가 아닌 주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이탈, 인구감소 등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공동체,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의 지속가능하며 내발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구현을 통해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국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정부주도적인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달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이 갖는 정부주도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을 극복하고자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육성과정의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 및 검증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십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성공요인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가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근린공동체 등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과, UN 등의 정책연구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 및 구미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미국의 근린개발회사(CDC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등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각 사례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와 정성적인 분석 외에, 국내의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등에서 성공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19개의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사례를 선정하여, 이에 관해 문헌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발전과정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개별사례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들의 중요성과 사업추진 전후의 요인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10개의 세부 측정항목들로 조작적 정의되었고, 설문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실제적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정태적인 상황에서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넷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통해 그 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발전전략의 수립은 마을공동체 발전의 본원적 과정에 대한 정성적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인과지도(CLDs : Causal Loop Diagrams)를 도출하

고 이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전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대안으로서 최근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법제 및 정책분석을 통해,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각종 조례분석과 정책추진 체계, 지원방안 등을 서베이하고 앞선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책수단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 고찰 및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들-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십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을 도출하였고, 심층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태적인 마을공동체 발전모형을 통해 중장기 정책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최근 1~2년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마을만들기 법제 및 지원정책 등을 고찰하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와 지원수단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성공요인과 정책대안들은 개별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구조화된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될 수 있으며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의 외생적 충격요인 등 다양한 미래변화요인들을 감안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

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의 도출 및 검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풍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방안, 실증사례 분석과 모형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폭넓은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와 정책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과 재정지원 방안,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계정책 활용방안 등은 정부주도적 혹은 기타 외부이해당사자의 주도에 의한 발전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에 기반이 된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담당자들의 철학과 마인드 형성은 물론 실제적인 정책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목 차



- 1 1
 - 1 1
 - 2 3
 - 1. 연구의 범위3
 - 2. 연구의 방법4
 - 3. 연구의 흐름과 구성6
- 2 8
 - 1 8
 - 1. 『지역공동체』의 개념8
 - 2. 『지역공동체 발전』의 개념11
 - 3.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12
 - 2 19
 - 1. 지역공동체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19
 - 2.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 패러다임 변화21
 - 3.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필요성 대두22
 - 4.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기제와 요인25
 - 3 32
 - 1. 한국의 관련정책 및 제도적 변화32
 - 2. 해외의 관련정책 및 제도적 논의36
 - 4 43
 - 1. 경험적 선행연구43
 - 2.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성공요인46

3	52
1	52
2	54
3	81
4	86
1	86
2	90
1. 기초 추진현황 및 만족도 조사	90
2.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	100
3	105
1. 모형 설정	105
2. 변수 생성 및 추출	110
3. 분석 절차 및 방법	111
4. 영향구조 분석	113
5. 영향구조 분석 결과	131
4	143
1. 모형 개요 및 설정	143
2. 영향구조 설정 및 분석	146
5	155
1	155
2	157
1. 마을공동체 현안문제와 협력과정	158
2. 마을공동체 비전과 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164
3	171

6	177
1	()	177
1.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177
2.	광역자치단체	179
3.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180
4.	도의 기초자치단체	182
5.	광역자치단체 조례비교	183
6.	기초자치단체 조례비교	188
7.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안	193
8.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안	200
2	207
1.	협동조합의 개요	207
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208
3.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210
3	212
1.	기존 한계 및 방향	212
2.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원칙 및 방향	212
3.	제도적 정책추진 방안	214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 추진	215
5.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215
6.	중앙과 광역 시도 및 시군 마을단위 중간지원조직	216
7.	공동체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217
7	218
1	218
1.	연구목적 및 개념적 접근	218
2.	설문조사 및 요인검증	220
3.	중장기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222
2	225

【 】	227
Abstract	234
【 】	236

표 목 차



〈표 2-1〉	지역공동체 발전 추세에의 변화	20
〈표 2-2〉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7
〈표 2-3〉	정부주도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례	30
〈표 2-4〉	민간주도의 지역공동체 운동사례	30
〈표 2-5〉	MB정부 이전 최근 10년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3
〈표 2-6〉	중앙부처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현황	34
〈표 2-7〉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국내)	45
〈표 2-8〉	지역공동체 발전의 경험적 성공요인과 세부 성공요인	48
〈표 3-1〉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한 자료특성	53
〈표 3-2〉	마을공동체 분석사례에 대한 사례별 특성요인	82
〈표 4-1〉	지역공동체 설문조사 내용	87
〈표 4-2〉	만족도 조사 기초분석 결과	90
〈표 4-3〉	지역공동체 지원 이후의 만족도 변화	99
〈표 4-4〉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이전)	101
〈표 4-5〉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이전)	102
〈표 4-6〉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이후)	103
〈표 4-7〉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이후)	104
〈표 4-8〉	수정된 분석모형의 추정 영향 구조	110
〈표 4-9〉	주요 적합도기준별 수용가능 수준	113
〈표 4-10〉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115
〈표 4-11〉	정체성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115
〈표 4-12〉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116
〈표 4-13〉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116
〈표 4-14〉	요인분석 후 지역자원 요인의 상관행렬	117

〈표 4-15〉 지역자원 요인의 공통성	118
〈표 4-16〉 요인분석 후 정체성요인의 상관행렬	119
〈표 4-17〉 정체성 요인의 공통성	119
〈표 4-18〉 요인분석 후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상관행렬	120
〈표 4-19〉 인력 및 교육 요인의 공통성	121
〈표 4-20〉 요인분석 후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상관행렬	121
〈표 4-21〉 리더 및 지원 요인의 공통성	122
〈표 4-22〉 요인분석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123
〈표 4-23〉 요인분석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124
〈표 4-24〉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125
〈표 4-25〉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성분행렬	126
〈표 4-26〉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126
〈표 4-27〉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127
〈표 4-28〉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성분행렬	128
〈표 4-29〉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128
〈표 4-30〉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129
〈표 4-31〉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성분행렬	130
〈표 4-32〉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131
〈표 4-33〉 요인분석에 대한 기본 경로방정식 결과(지원 전)	133
〈표 4-34〉 요인분석에 대한 기본 경로방정식 결과(지원 후)	134
〈표 4-35〉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134
〈표 4-36〉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전)	137
〈표 4-37〉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후)	138
〈표 4-38〉 수정된 경로모형의 효과분석(지원 전)	140
〈표 4-39〉 수정된 경로모형의 효과분석(지원 후)	142
〈표 4-40〉 구조방정식 결과(지원 전)	147
〈표 4-41〉 구조방정식 결과(지원 후)	149
〈표 4-42〉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정	150

〈표 4-43〉	구조방정식의 효과분석(지원 전)	153
〈표 4-44〉	구조방정식의 효과분석(지원 후)	154
〈표 5-1〉	동태적 인과관계 모형(CLDs) 및 분석결과 요약	171
〈표 6-1〉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179
〈표 6-2〉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181
〈표 6-3〉	도의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183
〈표 6-4〉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184
〈표 6-5〉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1	189
〈표 6-6〉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2	191
〈표 6-7〉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207
〈표 6-8〉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원칙	208
〈표 6-9〉	협동조합과 일반회사간 비교	209
〈표 6-10〉	협동조합의 유형간 비교	210
〈표 6-11〉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추진내용 및 방향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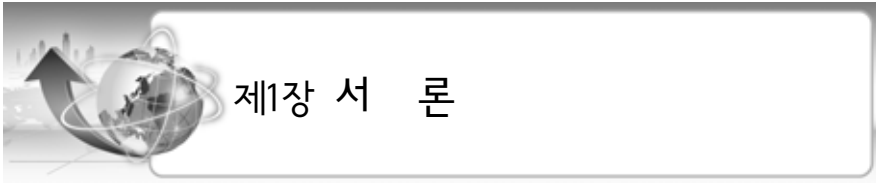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 구성체계	6
〈그림 2-1〉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CDD)”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념	13
〈그림 2-2〉	해외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개념 변천과정	21
〈그림 2-3〉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개념 변천과정	22
〈그림 2-4〉	지역 사회자본 변화와 대안적 지역발전의 대두	23
〈그림 2-5〉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구성요소	26
〈그림 2-6〉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유형	31
〈그림 2-7〉	지역개발법인(CDCs)의 운영지원 체계	37
〈그림 2-8〉	공동체경제발전운동 사회적 경제의 결합에 따른 발전과정	40
〈그림 2-9〉	지역공동체 발전의 경험적 성공요인	47
〈그림 4-1〉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체험)	91
〈그림 4-2〉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브랜드)	92
〈그림 4-3〉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특산물)	92
〈그림 4-4〉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단체)	93
〈그림 4-5〉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목표)	94
〈그림 4-6〉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배려)	94
〈그림 4-7〉	만족도 설문결과: 인력양성 및 교육(대학)	95
〈그림 4-8〉	만족도 설문결과: 인력양성 및 교육(연구진)	95
〈그림 4-9〉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리더십 형성(리더)	96
〈그림 4-10〉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리더십 형성(지원)	97
〈그림 4-11〉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원(중간지원)	97
〈그림 4-12〉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원(민간)	98
〈그림 4-13〉	만족도 설문결과: 전반적 만족도	99
〈그림 4-14〉	요인분석을 고려할 경우의 영향요인 추출 방안	107

〈그림 4-15〉 분석모형의 설정	108
〈그림 4-16〉 영향구조를 고려한 수정된 분석 모형	109
〈그림 4-17〉 영향요인에 대한 설정	111
〈그림 4-18〉 스크리 도표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 추출	123
〈그림 4-19〉 스크리 도표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요인 추출	125
〈그림 4-20〉 스크리 도표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 추출	127
〈그림 4-21〉 스크리 도표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 추출	129
〈그림 4-22〉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기본 경로모형(지원 전)	132
〈그림 4-23〉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기본 경로모형(지원 후)	132
〈그림 4-24〉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구조(지원 전)	135
〈그림 4-25〉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구조(지원 후)	136
〈그림 4-26〉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전)	139
〈그림 4-27〉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후)	141
〈그림 4-28〉 구조방정식 모형의 설정	143
〈그림 4-29〉 구조방정식 영향요인 설정 방안	145
〈그림 4-30〉 구조방정식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를 고려한 가설 설정	145
〈그림 4-31〉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영향 분석(지원 전)	151
〈그림 4-32〉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영향 분석(지원 후)	152
〈그림 5-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정책분석 절차	156
〈그림 5-2〉 CLD A-1: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158
〈그림 5-3〉 CLD A-2: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159
〈그림 5-4〉 CLD A-3: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160
〈그림 5-5〉 CLD A-4: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효과	161
〈그림 5-6〉 CLD A-5: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소통	162
〈그림 5-7〉 CLD A-6: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인구 유입	163
〈그림 5-8〉 CLD B-1: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164

〈그림 5-9〉	CLD B-2: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166
〈그림 5-10〉	CLD B-3: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에 있어서 외부지원	167
〈그림 5-11〉	CLD B-4: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168
〈그림 5-12〉	CLD B-5: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시 외부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결속	169
〈그림 5-13〉	CLD B-6: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의 공유	170
〈그림 5-14〉	CLD: 마을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모형	173
〈그림 5-15〉	중장기적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추진 및 지원전략	17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간의 고도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장과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구성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도시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면서 삶의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인의 감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및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희망하게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구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 지역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국가가 수행하였으나 정부실패로 인한 중앙의 역할이 한계를 맞았고 더불어 지역이 세계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노출되면서 시장논리에 의해 삭막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즉, 공공재 및 공공선과 같은 공적가치를 책임지던 정부가 정부실패로 인해 더 이상 그와 같은 역할을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자, 대안으로 나타난 영역이 시민사회이며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탄생으로 연결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왜 추진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부합하여,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는 과거

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이 한정적이었고 가족주의와 생산방식 등 내재적 요인들에 따라 단결력이 높았으나, 오늘날은 공간개념이 해체된 것은 물론 핵가족화 및 서비스경제의 발전 등에 따라 물리적·정서적 지역공동체 개념이 붕괴되고 과거와 같은 지역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간개념의 해체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합리적 교환의 기저 하에 호혜와 상호신뢰를 구축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앞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공동체 복원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복원은 지역사회에서 야기되거나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논의 및 협의하기 위함이며, 의사소통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또는 주민협의체 등)를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 공동작업(즉,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와 자치, 신뢰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공동체 복원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된 성장개발 전략을 배제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특성들을 배양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의 정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 중심의 한국사회는 지역공간 특유의 생태와 환경, 지역주민 본래의 정서와 가치를 무시한 채, 비인간적인 획일성과 비장소적인 보편성으로 특징지어졌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복원은 개발주의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조성에 따른 폐해를 청산하고 나아가 생활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근본적 생태환경을 선순환구조로 만드는 데에 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격차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때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발전전략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장동력 기반구축 차원

에서 마을공동체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가능한 도시, 슬로공동체 및 로컬푸드 시스템, 전환 마을 운동 및 녹색마을·로컬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최근 국내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혹은 도입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의 지역격차 해소와 낙후지역의 발전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전략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들간 유기적 연대와 호혜성·신뢰형성, 지역정체성·규범 강화 등 내발적이며 통섭적이고 동태적인 발전기제로 작용한다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새로운 발전전략들의 미래가치 지향적이며 동태적인 과정에 주목하면서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지역간 격차해소와 상생·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들의 최근 흐름과 사례들을 리뷰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실제적 적용패턴을 분석하며, 동 전략들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들을 진단하고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과정의 분석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으로써 이러한 발전전략들이 지니는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지역공동체(community)는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 발전(Community Development)은 지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기술적·물적 지원과정 등을 포괄

한다.

실체적인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지역공동체’는 마을(읍, 면, 동) 단위 혹은 복수의 마을이 연계된 기초생활권(시, 군)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며, 발전전략에 따라 2개 이상의 마을이나 시·군의 연계협력을 포괄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전략은 민간, 공공, 혹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제3섹터가 추진하는 일련의 마을 혹은 지역단위 발전전략을 포괄한다. 단, 계획과정에 반드시 주민들이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실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리뷰·분석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전략’은 주민의 생활방식 전환과 삶의 질 제고, 소득·일자리 등 순환경제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는 국내외 사례들을 의미한다. 이에는 마을기업·(예비)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운동 등 제3섹터 전략,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순환경제 구축 및 지역재생 사례와, 녹색마을, 친환경 유기농축산과 로컬푸드 시스템, 마을단위 문화예술 운동, 슬로시티·슬로공동체 운동, 도시농업 등 환경·사회·문화마을 공동체 운동이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쇠퇴와 경제위기, 기후변화와 대형재난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위기와 해체압력으로부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과 관련된 폭넓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개념적 접근을 위하여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도시·환경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를 지닌 내부연구진의 학제적인 통섭을 기초로 위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발전전략들에 대한 이론고찰 및 개념정립을 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은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주도적 발전전략이므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내부의 역량강화라는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며, 또한 발전과정에서 정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지원 등이 추가적인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문헌 연구의 결과로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공요인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한 분석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제시될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전략의 실제적·정책적 접근을 위한 사례연구 및 현황분석을 시도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20여개의 국내 사례를 도출하여 현장방문·인터뷰 등의 1차 자료수집 방법 및 문헌자료, 미디어서베이 등 2차자료(정성적 및 정량적 행정자료, 통계자료 등)를 통해 심층적 사례 분석이 제시된다. 또한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성공요인과 분석틀에 기반하여 사례별 비교분석이 제시되고 이후에서 제시될 실증분석과 정책대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성공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사례별 대상주민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개별 성공사례에 대한 만족도 및 기여도 분석, 핵심성공요인들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등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핵심 성공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 및 실제적인 정책대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실제적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전략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정성적 정책분석 방법론으로서 시스템다이내믹스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분석법이 시도된다. 이로부터 개별사례에서의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유형화가 제시되고, 유형별 중장기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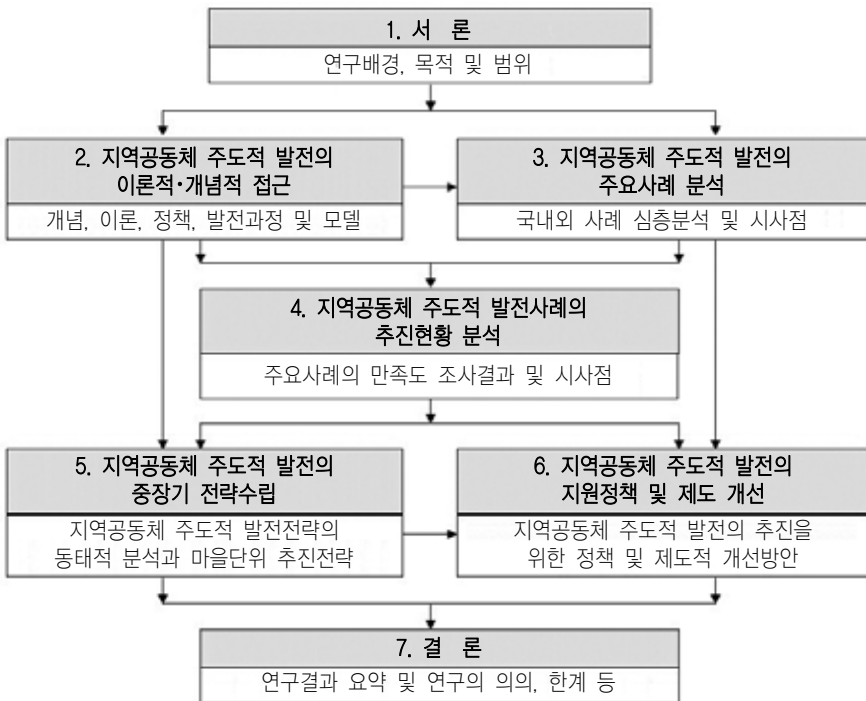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론적·개념적 접근 및 정책분석, 심층 사례연구, 추진전략 수립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책적 추진방안 및 법제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대안의 도출을 위해 앞선 분석결과는 물론, 최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조례’의 비교분석의 결과를 종합한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및 지원제도,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흐름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범위 및 연구의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제2장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의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위하여 개념, 이론, 정책, 발전과정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을 비롯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 구성체계



이후 제3장에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중 국내외 주민주도적 발전전략의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4장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추진현황 분석을 위하여 3장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만족도 및 기여도 분석을 통한 핵심성공 요인의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의 동태적 분석과 마을단위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제6장을 통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제7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등을 정리한다.



제2장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

제1절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

1. 「지역공동체」의 개념

일반적으로 community란 ‘common’ 또는 ‘communal’과 ‘unity’의 합성어로 공동, 공동체계, 공동소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Chaskin, 1997; 정지웅·임상봉, 2000). community는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등으로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주민참여 조직 또는 결사체의 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local society, neighborhood)’와 ‘공동체(community)’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거나(Berkowitz, 2000) 혹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Warren, 1977). 19세기말 튀니스(F. Tonnies)는 지역공동체(community)를, 1) 혈연 및 지연 등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2) 계약 및 협정 등으로 구성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사회인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분류하였다(Harris, 2001: 17-21).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광의적 의미인 ‘목표나 규범,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단’의 개념에 근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재열(2006)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는 전통적 공동체와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야기된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온라인 공동체가 착종되어 존재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공동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근린(neighborhood)’을 들 수 있다. 도시가 발생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집합하는 공간단위가 형성되고, 자연발생적인 경계선이 형성되며 경계선 내의 특정 지역단위를 호칭하기 위한 명명이 시도된다. 여기서 경계선에 의해 형성된 타 단위공간과의 구분된 일정 지역을 ‘근린’이라고 표현한다(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 동일한 개념에 대해 Chaskin (1997: 523)은 “주민의 거주 및 사회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위 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더욱이 근린이라는 단위는 도시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이며 기능적인 단위로써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 정의의 공통점은 지역적으로 구분가능성으로서, 이를 기초로 하는 공동체인 ‘지역공동체(communitiy)’의 개념적 정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Mattessich. et al., 1997)로 볼 수 있다. 공동체는 다양하고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생활, 육아 및 교육 등 대부분의 생존활동을 해 나가며, 지역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유대를 가지는 장소 및 공간을 의미한다(최승호, 2007). 그리고 지역공동체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기반이 되는 범위를 말하며, 소도시 및 촌락을 의미하기도 한다(다무라아키라, 2008).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그 공통요소로서 집단을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지리적 영역·공동의 유대감·사회적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공간),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 결과인 공동의 유대(공동체성)를 제안하고 있다(Hillery, 1955). 공동체에는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식과 전인격적 인간관계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므로 일반 대중사회와 구별된다.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 지니는 정태적인 의식을 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이를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한다(강용배, 2003).

본 연구에서 지역공동체(communitiy)는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는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의식’이 내재되어야 한다. 공동체의식을 Sarason (1974)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함에 대한 인식·상호의존에 대한 인정·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호의존을 유지하려는 의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라는 감정’이라 정의하였으며, McMillan & Chavis (1986)은 ‘구성원자격·상호영향·욕구의 조화와 충족·공동의 정서적 유대’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결국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역에 대해 공유가 있어야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 및 소속감을 유지하는 상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구성요인(Wilkinson, 1991)으로는 우선 지역성(locality)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공동 관심사를 표출하고 공동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들의 종합적인 연결망인 지역단위에 기초한 사회(local society)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단위의 사회 내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호관련된 실천의 과정으로 지역중심의 집합적 실천과정(process of locality-oriented collective actions)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공동의 유대(common tie, common bonds)를 바탕으로 특정한 지역에 기반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면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보다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사회적 응집력·정신적 관여·감정적 깊이 등이 공동체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게 되었다(정남수 외, 2010).

2. 「지역공동체 발전」의 개념

발전 혹은 개발(development)은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일련의 인간활동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는 발전 혹은 개발은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실현하며 뜻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연합체를 결성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개념을 결합한 지역공동체 발전(community development)은 지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의 세 측면에 있어서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즉 지역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948년 영국 식민지 행정관 회의에서의 지역공동체 발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으로, 이러한 주도성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무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956 UN 특별분과위원회의 정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은 어느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세 조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국가적 계획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뭉쳐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한국 대통령령 1384호를 통해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을 칭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관한 공통요인으로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기술적·물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

(1) 참여성 및 주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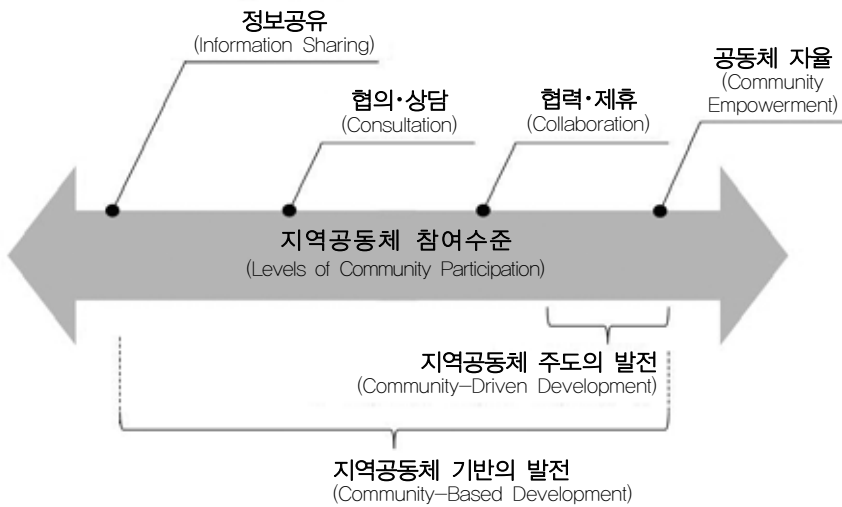
기본적인 주거의 단위인 근린(neighborhood)을 배경으로 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방식을 근린참여라 칭한다(한상일, 2003: 160). 이 공동체주의적 근린참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주민참여방식과 구별된다. 첫째, 참여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계된 경제활동자, 자영업자, 재산소유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참여의 주체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구성원들까지 확대된다. 둘째, 생활속에서 자발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이익집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특정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지리적인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근린참여의 논의에는 지역과 관련된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논한다. 즉, 주민참여제도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최근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Community-Driven Development)’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이하 CDD로 약칭)은 발전과정, 자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한의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말한다. CDD는 지역공동체 스스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만약 정확한 자원과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전제하면서 도출된 개념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는 개념적으로 상위에 존재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발전(CBD: Community-Based Development)’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이

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발전(이하 CBD로 약칭)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비해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CBD 프로젝트는 CDD와 달리 적극적인 참여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공동체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율권에 대한 단순한 정보공유 수준 정도만으로도 CBD로 칭할 수 있다. CDD 프로젝트는 계획, 관리 및 실행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수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이는 CBD로 볼 때 참여도가 가장 높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CDD라고 칭할 수 있다(Tanaka, 2006).

〈그림 2-1〉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CDD)”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념



자료원: Merchant (2010: 5)

이러한 CDD는 각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를 서비스제공자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CDD의 도입된 이후, NGO들은 잘 계획되고 수행되는 CDD 프로그램이 형평성, 포괄주의, 효율성 및 바람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촉진하여 큰 성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습득하였다. 특히 취

약하고 배제된 지역공동체들을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CDD 수행을 통해 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한 조치는 CDD 프로그램을 빈곤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게 하였다. 지역공동체 주도로부터의 야기되는 효율성의 원천은,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자원의 배분, 자원의 낭비와 부패의 감소, 저비용과 큰 효과, 질적 개선과 유지·보수, 자원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초기의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조직관리는 보다 큰 투명성과, 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 촉진된다. 참여, 자율권, 책임감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CDD 원칙 들은 낙후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매우 가치있는 것들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08).

(2)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핵심요인

세계은행(World Bank)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통해 동기부여를 특징으로 한다(Naidoo and Finn, 2001).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발전과정에서 빈곤층을 인적자산과 지역발전의 파트너로 대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이 NGO 기반의 중앙주도적 전략들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CDD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책과 기관의 개혁을 통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강화된 재정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Dongier, 2002). CDD 프로그램은 빈곤한 지역공동체에 주도적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립하며, 그것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을 따른다.

CDD 프로그램의 5개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Merchant, 2010). 첫째, CDD 작업은 주로 지역공동체가 기반이 된 기구 혹은 지역공동체 의회 혹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공동체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는 CDD 프로

젝트 실행의 수혜자가 지역공동체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작은 지역공동체에 대해 중점을 둔 이후로 CDD는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세부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둘째, CDD 작업에서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대표자는 참가방식에 관한 세부프로젝트를 기안하고 계획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부여받는다. 참가방식의 계획에 대한 집중이 CDD 작업에서의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능한 형태의 세부프로젝트의 투자 옵션들은 매우 광범위한 반면, 소수의 세부프로젝트들은 이행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셋째, CDD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이는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것이고 그 자원을 통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에 위임 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동되고 통제되는 자원의 양은 CDD의 실행에 달려 있다. 넷째, 지역공동체는 세부프로젝트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때때로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노동이나 기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공동체는 세부프로젝트에 도급업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혹은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기반시설의 유지와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과 평가의 구성요소는 CDD 세부프로젝트의 특성이 된다. 이것들은 지역공동체가 CDD의 실행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대부분 참가방식의 모니터링, 지역공동체 점수카드 그리고 불만·고충에 대한 교정시스템 같은 사회적 책임도구가 이에 해당한다.

(3)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전개과정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요소에 따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rchant, 2010). 우선, 지역공동체 주민의 조사(Community People Survey)를 실시하여 일정범위의 지역공동체에서 구성원(특히 여성의 경우 중요한 주체로 인식)이 직접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창의적으로 제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으로 참여적 실행연구(PAR :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서부터 공동체 조사연구(Community Resear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반과 민주주의적 소통과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 경제적인 자립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발전 혹은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또한 지역의 자원에 기초한 경제적인 자립이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속되는 외부적 서비스 자원은 때로는 경제적 의존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과정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진정한 리더쉽과 개방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issues and democracy communication)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개별협력 활동가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며, 집요한 질문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적절한 교육 및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유대감을 향상 시켜야 한다. 공동체 주민들의 창의적 활동은 공동체 내부를 넘어서는 교류와 학습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유지·발전되는 과정은 문화적인 다양한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주민워크샵(people workshop), 자기발표 프로그램(exposure program) 등이 함께 공유된다.

더불어 공동체 주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전문성과 공동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로서 대개 많은 국가들에서 ‘개발’이란 이름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강제철거, 환경파괴, 강제이주, 획일적 문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상향식과 동시에 지역공동체조직(CBOs)들이 도시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집합적인 주민권력(people's power)을 형성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변화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범도시간 연대·연계(city-wide network)가 중요한 이유는 대개의 지역발전 혹은 개발협력이 지역서비스 차원의 접근으로

정책변화까지 발전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 시스템으로 실천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가 공통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개방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나효우, 2011:17-19).

(4)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한 공동체 역량강화

한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이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의미하므로, 한상일(201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community capacity building)’가 그 핵심적인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는 호주의 정부개혁에서 시설 및 재정적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직·간접적 목적을 위하여 나타났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지역공동체의 보건을 비롯한 다른 기능적 분야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한 부분 등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Verity, 2007).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역량(capacity)은 개인, 집단, 기관,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활동에 대한 그들의 참여역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는 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이끌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과 공동체 집단의 기술과 능력을 강화하는 활동, 자원 그리고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의 발전과정을 통해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개인들과 집단에게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주고, 네트워크와 상호 보완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게 하고, 둘째, 지역공동체의 이해관계와 네트워크 및 공동체 집단의 강점을 발전시켜 조직의 구조를 발전시키며, 셋째, 이렇게 기술과 구조를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행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

되지만, 반면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보다 건전하고 활동적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고취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공동체의 높은 흡연율 같은 보건문제 혹은 교통사고 발생율과 같은 공동체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적용된다. 또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지역의 범죄율을 감소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Atkinson & Willis, 2006).

이러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지역공동체의 우선권과 요구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기술이자, 기관, 태도, 리더쉽 및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그들이 가진 기술과 역량의 강화를 통해 그들의 공통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즉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생적인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주체들이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여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중국에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의 실현을 위해 첫째, 지역 내에서는 소외된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 외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위해 셋째, 그 권한이 지역수준으로 위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

1. 지역공동체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지역공동체 발전의 추세와 전망을 살펴보면 대공황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 정부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확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게 된다. 6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정부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한 지역공동체도 있었으나, 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침체되고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의 이동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적으로 실업률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양극화 및 배제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직면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대해 시장과 정부는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0년대 이후, 민간기업 및 비영리조직들이 지역공동체의 개발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장기적인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의 지역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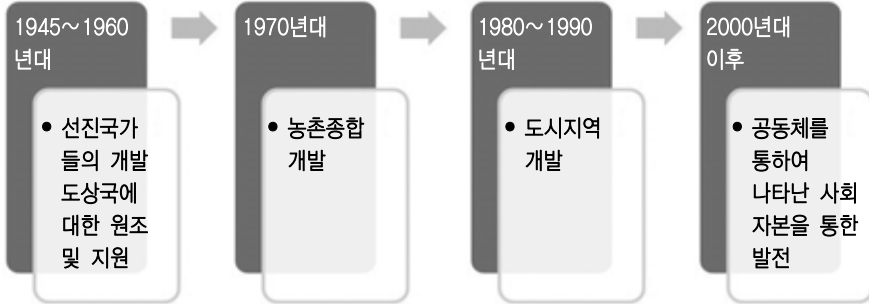
〈표 2-1〉 지역공동체 발전 추세의 변화

발전의 초점	발전의 수단
1980년대 초반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을 위한 투자유치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 하드웨어적 기반구조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투자를 위한 보조금, 대출 등 자금지원 - 하드웨어 투자를 위한 보조금 - 값싼 노동력의 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 (공적 집권적 수단)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발전 -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포섭 - 기존 지역 산업의 유지 및 성장 -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 노력의 지속, 그러나 특 정분야에 집중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에 대한 훈련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비용의 절감 - 개별 사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훈련 - 창업지원 (지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 부문 공급체계)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 소프트웨어적 기반구조 - 인적자원개발 - 공공재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 - 삶의 질의 개선 - 문화적 수준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사회영역을 연계하는 전체적 전략 - 파트너십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삶의 질 제고 - 공동체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수직적·수평적 조정을 통한 지방 거버넌스)

자료원: 한상일(2010)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본격적으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이 확산되고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새로운 참여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적 기반구조의 형성 및 인적자원관리, 공공재 공급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삶의 질과 문화적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는 다양한 주체가 정책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는 클러스터(cluster) 방식 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2-2〉 해외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개념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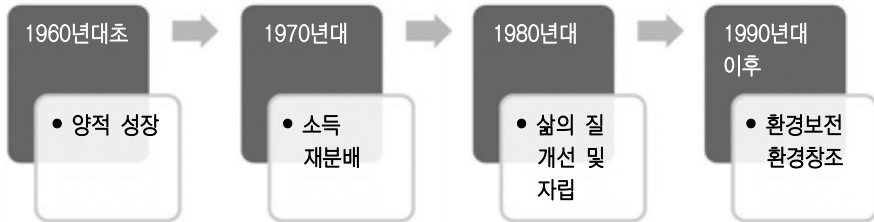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한국의 지역공동체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국가주도적 산업화 및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단기간에 지역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생적 지역공동체는 붕괴된 반면, 도시공동체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역공동체는 역사적 전통과 단절되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부적응 및 파괴됨으로 인하여 자생적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한 반면, 일제강점기 및 권위주의 시대에 지역공동체는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조직화되어 정치적인 주민동원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민공동체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으나 자치적 현안처리를 위한 주민조직이 형성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이것이 행정조직으로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한성부의 경우 ‘오부방계(五部坊契)’의 하위조직 구성 중 ‘방’과 ‘계’는 자치적 주민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생적 주민조직은 식민지 시대 및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정동(町洞)’제도와 ‘정동회(町洞會)’라는 조직이 관변적 지역공동체의 모태를 형성하였고¹⁾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1) 정동회(町洞會)는 일본의 정내회(町内會)를 본 따, 일제강점국이 설치한 것으로 ‘자치기관’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부행정기관으로 기능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교육 및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음

들어서면서 정동회는 반상회 및 새마을운동조직 등 새로운 주민조직으로 변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반상회는 한때 전국적으로 50만여 개에 이르렀으며, 그 중 80%는 도시주민조직에 해당하였다(김현식·박세훈, 2005: 2-3).

〈그림 2-3〉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개념 변천과정



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의식 성숙에 따라 관주도적 지역공동체는 급속히 쇠퇴하게 되는데, 91년 지방의회 및 95년 지방선거의 부활로 조례에 의해 반상회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등장한 것이 그것이며, 99년 정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 기존의 하위행정기관이었던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관주도적 지역공동체가 해체된 반면, 80년대 이후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다원화된 지역의 삶의 방식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시장은 소비자로서 주민의 힘을 반영하고 있지만 생활자로서 주민의 욕구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기존의 정부와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시민운동의 형태로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김현식·박세훈, 200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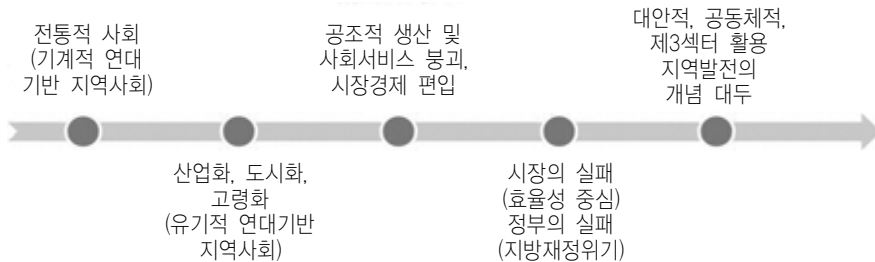
3.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필요성 대두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그에 관련된 발전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가속화 되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날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창출 기반이 취약한 농·어·산촌 지역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주공간을 창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각의 정주공간마련이 요구되었다.

지역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목적과 가치는 주어진 지역공간속에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생태보존, 교육, 복지, 보건, 치안 및 기타 공공재를 생산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역량은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참여, 이웃과의 유대형성 및 집합적 역량강화 등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축적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2-4〉 지역 사회자본 변화와 대안적 지역발전의 대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두레, 계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규범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가 심각한 공동체 붕괴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이 일깨워지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의 규범을 강조하며 구성원의 집합적 역량을

제고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나아가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공간적 소속감을 상실하고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도시민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은 점차로 과거 전통적 혈연사회와 같은 기계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구성으로부터 점차로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재구성되고 있다(최종렬, 2004). 이러한 사회자본과 사회적 구성여건의 변화 속에서 과거 지역공동체의 상호협조와 자발적 참여기제에 의한 사회서비스와 경제적 협력에 의한 공동생산 체제는 와해되고 점차로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 시장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김혜인·전대욱, 2009).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보건, 교육, 환경, 치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대응방식이 와해되고, 효율성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소외지역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관찰된다.

한편 이러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최근 전세계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등의 요인으로 원활히 수행되지 않자 정부의 실패가 대두되었고,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면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는 사이버 공동체, 정책공동체, 신앙공동체, 직능공동체 등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발전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기초한 공간적 단위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최적의 단위이자 전제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1절에서 고찰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CDD)의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 혹은 ‘제3의 섹터’와 무관하지 않다. CDD와 관련된 국제적인 개념적 전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등장하였는데, 이후 1970년대에는 참여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로서 남미 등지에서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지역공동체조직(CBOs: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와 시민사회조직(CSOs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사회발

전 전략으로 CDD가 등장하였다. 한편 1970년대 J. 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과 1990년대 A. Sen의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등의 저술과 함께, 이들을 통해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다차원의 빈곤의 본성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가능하였으며 이것은 다자간 개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다차원의 빈곤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 그리고 낮은 계층의 현실에 대한 사회정치적 복잡성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방식인 위에서 아래로의 그리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발전(big development)” 전략에 의존은 빈곤과의 전투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참여주의 개발의 부활과 NGO와 개발 부문에서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겨우 지난 20년 동안의 일에 불과하였다. 이후 1992년에 지속가능한 개발(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의 빈민 인구를 절반을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모습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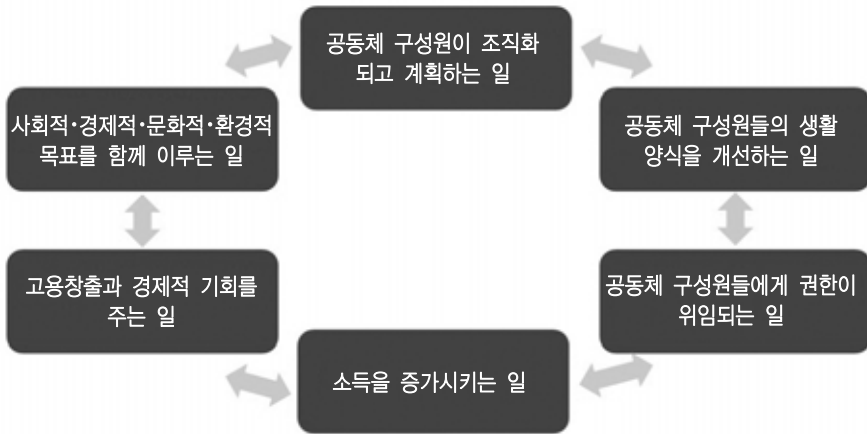
이러한 과거의 개발관행으로부터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역사문화와 전통의 기반위에 시작되어 개인중심의 개발보다 지역공동체 단위의 개발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하향식(top-down)보다는 상향식(bottom-up)이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형 개발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사회변화는 지역공동체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조직(CBOs)은 범도시간 연대연계(city-wide network)를 통해 중앙권력의 정책변화까지 가능케 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인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자본이 국가를 넘어서듯 지역개발의 협력 또한 국가경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Merchant, 2010).

4.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기제와 요인

그리고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Atkinson & Willis, 2006)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개발에 있어 중요시 되는 과제로는 무엇보다

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간 격차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지역공동체간에 발생하는 격차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발전에 주력한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구성요소



자료원: Atkinson & Willis (2006: 2)에서 재구성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개발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면서 각 공동체의 조직적·인적 그리고 경제적 역량의 차이에 따라 각 개발사업의 규모와 질의 격차가 커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일 것이다(한상일, 2003). 이 같은 격차는 상향식 지방정치로 전환되는 오늘날 보다 심화되어 지방행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제도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즉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의 이익은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과대표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이익은 과소대표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같은 이익의 비대칭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간 격차를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역공동체 개발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이 규정된다. Kretzman &

McKnight(1993)의 공동체개발 입문서『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에 따르면 공동체의 궁극적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공동체가 지닌 자산에 근거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개발 및 소비중심의 공동체 발전과 차별화된 것으로 욕구중심적 지역공동체와 대조된 공동체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산중심적 접근에서 자산을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조직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고 있다. 자산중심적 접근은 욕구중심적 접근(need-based approach)²⁾과 반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신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개발하면서 공동체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2-2〉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욕구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	자산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
개발의 중핵	욕구	자산
목표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	공동체 형성 (Community Building)
변화의 주체	권력의 소유자	다양한 구성원간의 연결망
개인에 대한 관점	고객	생산자, 소유자

자료원: Kretzman & McKnight (1993), 한상일(2010).

그러한 개발 및 참여과정을 통해 공동체 비영리 조직이 지역의 자산을 탐색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참여의 기능을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기능과 가치 창조적(constitutive) 기능으로 나눌 때 그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실현되는 장이 바로 공동체 조직인 것이다(Cooper & Musso, 1999).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의 지역공동체 발전 모형은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김형용, 2008). 미국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서민주택 공급, 인적자본 개발 등 지역사회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지역개발법인(CDCs)”이 대두되었다.

2) 욕구중심적 접근은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결여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가 갖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의미함

지역개발법인의 주요사업은 서민주택 개발 및 보수·관리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공동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개발 전체적인 범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법인은 2005년에는 4,600여개 이상이 존재할 정도로 미국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중심체로 자리 잡았으며, 외부 매개기구의 운영지원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지역개발법인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개발의 변화된 모형으로 “주민주도적 개발지역(혹은 권한이전지역) 및 기업마을” (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se Community), “포괄적 지역사회 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지역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이종수, 2008). 한국은 1960년대 초반 부산의 신용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브리엘 수녀가 시작하고 가톨릭에서 지원하여 서민의 신용금융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시 지역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기초한 지역운동, 각 지역에서 벌어진 생협협동 운동, 환경과 생태공동체 운동이 행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주도적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식 지역사회형성론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향식 지역사회형성론이다.

하향식 지역사회형성론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 사회체계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 자체만의 힘으로 자립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오늘날 지역단위에서 만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는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궁극적으로 공익성 및 개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역량을 지닌 공공부문이나 외부조직이 개입하는 방식이 지역사회형성의 현실적인 방안이며, 주민참여 그 자체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하향식 모델에 해당한다.

상향식 지역사회형성론은 참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지역발전의 원리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유기적 사회통합을 앞세워 권력 집중과 관료제적 폐해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향식 지역사회형성 모델을 경계한다. 궁극적으로 상향식 모델에 의하면 생활주변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민들의 참여 및 자치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사회자본)를 형성하고 축적하는 기반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상향식 모델이 옳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위로부터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있어 지역주민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질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곽현근 외, 2003). 대표적 사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공동체는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나뉘어진다. 정부주도 지역공동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을을 단순히 일터 중심이 아닌 삶터, 일터, 쉼터를 아우르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민간주도 지역공동체는 민간이 주도하여 일정수준의 결실을 거두고 전국적 지명도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지역공동체의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주도 사례가 주민참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 할 것이다. 정부주도의 경우 현지 실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하향식 추진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지역공동체 운동이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의 지원 및 도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간주도형(주민주도형)이라 할지라도 정부 및 전문가 도움 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시작한 이후 행정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토고미마을(강원도 화천 소재)의 경우, 전문가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및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철암(강원도 태백 소재)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표 2-3〉 정부주도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례

▷ 부산 기장군,	▷ 경기 안성시,	▷ 경기 양주시,	▷ 강원 영월군.
▷ 강원 철원군,	▷ 강원 화천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단양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금산군,	▷ 전북 남원시,	▷ 전북 완주군.
▷ 전북 부안군,	▷ 전남 곡성군,	▷ 전남 장흥군,	▷ 전남 강진군.
▷ 전남 무안군,	▷ 전남 함평군,	▷ 전남 완도군,	▷ 전남 진도군.
▷ 경북 포항시,	▷ 경북 안동시,	▷ 경북 군위군,	▷ 경북 의성군.
▷ 경북 영덕군,	▷ 경북 고령군,	▷ 경남 밀양시,	▷ 경남 남해군.
▷ 경남 함양군,	▷ 제주 제주시		

〈표 2-4〉 민간주도의 지역공동체 운동사례

▷ 강원도 화천 토고미 마을,	▷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	▷ 대구 삼덕동 마을.
▷ 경북 군위 한밤마을,	▷ 광주 북구 마을 만들기(조례제정).	
▷ 홍성군 흥동면 문당리 마을,	▷ 지리산 두레마을,	▷ 경남 산청 안솔기 마을.
▷ 장성 한마을 공동체,	▷ 가톨릭 신앙공동체 산위의 마을,	
▷ 정토회,	▷ 한농 복구회,	▷ 변산공동체.
▷ 도시연대 한 평 공원만들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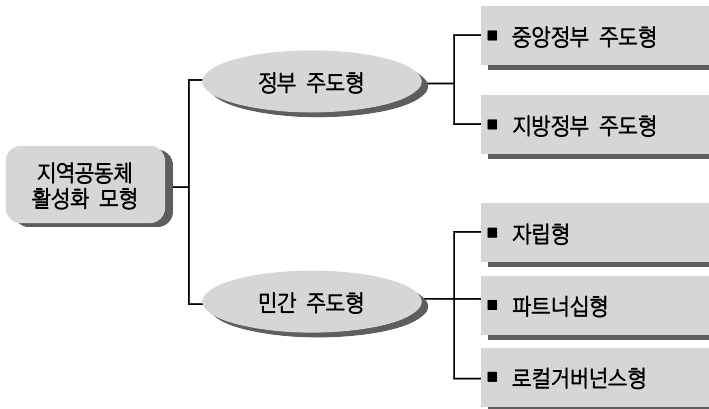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정부주도와 ② 민간주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주도의 경우 ㉠ 자립형, ㉡ 파트너십형(주민-전문가 융합형), ㉢ 거버넌스형(주민-정부-전문가 협력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주도에서 첫 번째 모형으로 자립형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및 집단효능감³⁾,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

3) 효능감(efficacy)의 개념은 개인 및 집단의 성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믿음을 의미함(Bandura, 1986; 이세규, 2010). 효능감은 신념 소유의 주체에 따라 ①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② 집단효능감(collective-efficacy)으로 구분됨. 특히 집단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집단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으로 규정할 수 있음(유경화·신원형, 2003; 이세규, 2010; 김태윤·김진영, 2011)

련의 과정에 있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며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모형인 파트너십형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가 되나 활성화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전문가는 공동체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범주에서 지역주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법인 등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림 2-6〉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유형



세 번째 모형은 거버넌스형으로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나 정부지원 등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조언을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각 주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유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내 여러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향식의 지역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

으로 지역공동체로 묶어 내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등 공동체 경제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3절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 정책 및 제도적 논의 ———

1. 한국의 관련정책 및 제도적 변화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정책은 지난 60년대 이후 낙후지역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관 주도 하에 추진되어 농촌 등 낙후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왔다(지경배 외, 2008; 송영필 외, 2005).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는데, 특히 낙후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을 주로 추진해온 부처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대별된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소도읍 육성, 아름마을 가꾸기, 정보화마을, 등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오지 및 도서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로 시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농림부, 문광부 등과 함께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농림부(및 농촌진흥청)는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촉진 등의 목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밖에 문광부 및 환경부 등도 「아름다운 우리마을 조성사업,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 「자연생태계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부처의 특색에 맞는 마을활성화 지원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표 2-5〉 MB정부 이전 최근 10년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명	주관 부처	추진 년도	추진 기간	지원내용	사업목적	선정 방식
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부	2004	3-5년	소권역(3-5마을)당 70억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농촌 다면적 기능의 활용	공모제
②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2002	1년	마을당 2억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공모제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농진청	2002	2년	마을당 2억	농촌전통문화의 발굴, 자연경관 보전	공모제
④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행자부	2003	10년	읍당 10억원	도농연결거점지역육성, 도농교류증진	공모제
⑤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행자부	2001	2년	마을당 10억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조성, 주민자율성 함양	공모제
⑥ 자연생태계 우수마을 지원사업	환경부	2002	-	환경관련사업 우선지원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환경농업 확대	공모제
⑦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1999	2년	마을당 5억	농어민 의식함양, 소득증대, 마을환경 개선	공모제
⑧ 친환경마을 육성사업	경북도	1999	1년	마을당 5천만원	환경보전의식 함양, 친환경마을 조성	공모제
⑨ 친환경마을 육성사업	전남도	2000	3년	마을당 6천만원	환경보전의식 함양, 친환경마을 조성	공모제

자료원: 지경배 외(2008), p152.

〈표 2-6〉 중앙부처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현황

관련부처 (추진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보건 복지부 (2000)	자활공동체 사업	-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로 창업지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
고용 노동부 (2007)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사회적기업 인증, 각종 경영, 재정, 홍보사업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행정 안전부 (2010)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CB형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병행추진 -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여 사업 추진 - 201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화 추진 등
지식 경제부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 1차 시범사업 추진 후 종료 -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
문화 관광부 (20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와 MOU체결을 통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농식품부 (2011)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조직 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여성 가족부 (2011)	농촌여성 일자리지원사업	- 농촌여성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활동 지원 -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 지원을 우선 - 2011-2012년 9개 시범사업 실시 확대여부 판단
환경부 (2012)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	- 2012년부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 - 기존 폐기물 수집중심에서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2011년 말 동법 제정 및 2012년말 발효에 따라 기존의 영리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음 - 추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부처별로 시행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음

MB정부 이후의 국가 전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기조가 변화되었고,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회적 투자의 효율성과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를 염두에 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활성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노동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으로 대표된다.

우선,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적 특징을 갖는 한정된 지리적 공간에서 벌이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포괄하며,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밀집되는 특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유사하나 농어촌 지역에 특화되며, 좁은 지리적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업종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광역적 연계를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소규모 집단과 자본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해지며, 이에 기초하여 주민주도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어업 경영체,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포괄적 정의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 및 단체에 대한 명문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영리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회사 법인 및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지원제도 등이 제시되었다(오은주·김선기, 2012: 3-5).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사회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2008년 328개소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린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오은주·김선기, 2012: 3-5)함으로써 추후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주민주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 해외의 관련정책 및 제도적 논의

(1) 미국의 ‘지역개발법인’ 제도

미국의 경우는 국가 복지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사회복지의 시장의존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은 주로 제3섹터가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s)은 낙후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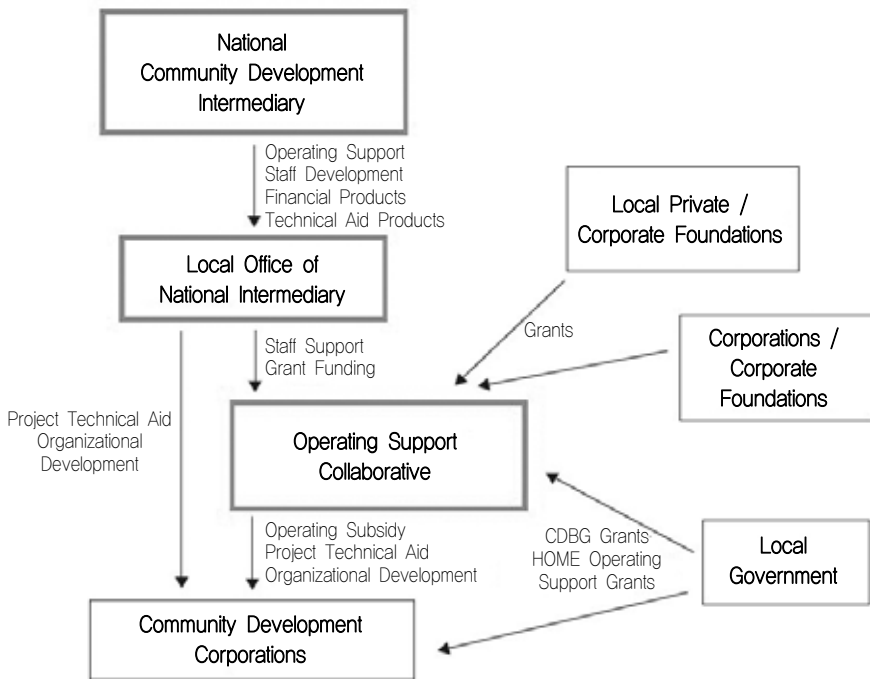
지역개발법인은 빈곤지역의 사회·경제적 재개발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이사회(communitiy board)가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법인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서민주택 공급, 인적자본 개발 등 지역사회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미국 내 지역개발법인은 약 4,600여개 존재, 지역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평균 8만6천의 서민주택과 9백만 스퀘어 피트의 상업지역을 개발하였다. 주요사업분야는 서민주택 개발 및 보수·관리이며, 사회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시설과 같은 사업들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배경으로는 지역개발영역에 있어 자금지원체계가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지역개발법인 스스로 외부 매개기구의 운영지원을 받음으로써 재정구조가 건실해지고 사업운영면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매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계획지원법인(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ISC)과 엔터프라이즈 재단(Enterprise Foundation) 등을 비롯, 11개 이상의 매개기관이 존재한다. 자금제공자들은 매개기구들의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개발법인들의 성과관리를 모니터하고 또한 자신들의 투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개발법인들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지역개발법인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개발의 변화된 모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se Community (EZ/EC)”는 클린턴 행정부 때 등장하여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며 지역 스스로 프로그램 설계에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사업 지역 내의 경제적 개발과 주민들의 자활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Is)”는 1990년대 초반에 시행한 모형으로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및 인적자본의 개발에 강조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 하부체계들의 기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2-7〉 지역개발법인(CDCs)의 운영지원 체계



자료원: Walker, C. (2002). CDCs and Their Changing Support Systems

(2)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영국의 경우 장기간의 우과정권에 이어 1997년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 탄생 후, 규제완화 폭이 증가되고 있는 노동시장과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복지서비스도 경쟁에 노출시켰다. 그로 인해 민간분야, 공공분야, 제3분야 시민사회 조직 등의 다원적 파트너십이 발전하였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지역에 중앙정

부의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역공동체 개발과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온 자원 봉사 조직에 대규모 정부자금이 투입되어 지속적·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적 프로젝트와 기업로직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여, 2004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커뮤니티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생기게 된다. 2005년 7월 단독법으로 「공동체 이익회사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한도의 수익배분 원칙, 이윤의 재투자, 공공기관에 의한 감독, 각종 보고의무, 수혜자에 의한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제3섹터 조직이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위임할 책임을 지는 지역의 전략 파트너십, 실직자를 위한 뉴딜일자리 프로그램 등의 중추로 부상하였다. 많은 제3섹터 시민사회 조직은 정부나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조직적 자립, 정치적 교섭력, 네트워크화 등을 강화시키면서 왕성한 기업이 정신과 사회적 목적을 겸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의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Audit Commission, 2005)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 단체들이 최대 5,000여개 까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상산업부내 「사회적 기업 추진단」을 두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전담하며 사회적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의 제거와 각종 정책수립 및 모범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또한 오랜 자선의 전통에 의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 및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피닉스 펀드, CA (Cooperative Action), 자선은행(Charity Bank) 등이 사회적 기업, 영세기업, 지역개발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UK (Social Firm UK), 공동체 행동네트워크 (Community Action Network), SEI (Social Enterprise London), 개발신용조합 (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 등이 인프라 제공 및 협력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다양하여, 그 예로 사회적 기업은 정부조달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을 육성하여 경영자문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 기업의 우선 수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탈리아는 1970년대 복지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영리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회사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났고 유럽국가 중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이다. 1990년대 초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1991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형태에 따라 A형(사회보전 및 교육 서비스의 운영·관리)과 B형(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분류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작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무급의 자원봉사자(전체 구성원의 50%를 넘지 못함), 자본제공자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B형은 취약계층을 종업원의 30% 이상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윤의 제한적인 배분을 허용하나 대차대조표 이외에도 조직활동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회적 결산수지(social balance)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감면, 각 자치단체별 사회적 협동조합 관리 및 직업훈련·재정지원 등을 위한 조례공포 및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후 2005년 말 제정된 사회적 기업법은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및 역할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이윤의 배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경영자의 보수가 당해 업종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윤배분을 금지하고 있다.

(4) 캐나다의 '공동체 경제발전 운동'

협동조합은 때로는 협동조합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캐나다의 사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

정한 새로운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는 공동체경제발전운동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 이하 CED)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으로 구체화된다(정태인, 2012).

‘공동체경제발전운동(CED)’의 다양한 조직들로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직들이 캐나다의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가 되고 있다. 이러한 CED는 개념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전략을 내포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위기 등의 변화로부터 사회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ville et al., 2005).

〈그림 2-8〉 공동체경제발전운동 사회적 경제의 결합에 따른 발전과정

발전 과정			
외생적	←	→	내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시스템 개혁에 초점 (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경제적 능력 개발에 초점 (Ⅱ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의 경제적 능력개발에 초점 (Ⅲ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D는 경제성장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D는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D는 개인과 집단이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원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는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정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는 인구학적 차원을 포함하는 경향 - 누가 경제적으로 주변화 했는가에 초점을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는 스스로 정의됨 -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사유화 금융시스템 개혁 외부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장된 서비스 (extension service)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가정신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 기초한 자원관리 마을은행, 신용조합, 저축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등

자료 : Mathie, A& G. Cunningham (2002), 정태인(2012)에서 재인용.

CED에 관한 과거 20여년의 발전을 <그림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I 유형”은 개발 지향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II 유형”은 현재 사회적기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며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과거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 태동하면서 지향했던 ‘노동시장 탈락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의 관점에서 개인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다. “III 유형”은 동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캐나다 퀘벡이 지향하거나 혹은 이미 달성한 사회적 경제의 이상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을 주요 수단이자 목적으로 취한다. 이러한 유형은 지역공동체의 발전기제를 지역 내부의 자산으로부터 발굴하고 이를 내부의 역량강화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이며, 주민참여적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일맥상통하며, 주민참여의 형태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영역안에서 조직화되어 발현되는 과정을 내포한다.

캐나다의 퀘벡은 1999년 “사회적경제위원회(Chantier de leconomie sociale)”라는 민-관 거버넌스 개념의 사회적 경제 추진체를 출범하였고, 이는 기존 사회적 경제가 민간의 자발적 부문이 주도가 된 부문이라는 상식을 깨고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태인, 2012). 즉, CED가 지향하는 관점은 보다 완벽한 형태의 민-관-사회경제의 3섹터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각 지역공동체가 형성하고 관리하는 공동체 기금의 원천이 되는 기초기금 및 매칭펀드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동 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식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과는 다르게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비교적 손쉽게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대표적인 예로 퀘벡주 노동조합 연대기금, ‘신중한 자본 기금(patient capital fund)’, 공동체 대출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가가치가 축적됨으로써 지역내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로부터의 이윤은 지역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환원되고, 이윤을 배분받게 되는 구성원들은 내부의 투자자로 행동한다. 이러한 내부의 경제적 순환은 부가가치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내부적 거래의 수요로부터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금융이나 로컬머니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이러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는 고착화된다.

퀘벡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마지막 관점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이다.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푸드 마일리지의 절감과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지역공동체의 순환경제 체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퀘벡지역에서의 식품 및 에너지 협동조합은 미국 대도시의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쇠락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들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각종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은 종종 위기 때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중소농업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력과 공동체적 운동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뿐만 아니라 각종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붕괴를 방지하고 위기에 적응하게 하는 회복가능한 발전(resilient development)의 개념에 부합한다(Pickett et al., 2004).

(5) 세계은행의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프로젝트’

세계은행의 국제개발원조(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에 속하는 개도국 지원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진행되었다.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이하 CDD로 약칭)은 지역공동체 집단에게 자원과, 개발에 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으로 세계은행이 지난 수십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원조(이하 IDA로 약칭)의 실천을 위한 주된 실행 전략이다. IDA가 CDD를 위하여 지

출하는 금액은 매년 평균 13억 달러에 육박하며 지난 2000년 이래로 많은 CD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DD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효율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활기를 향상하는 등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세계은행의 CDD는 지역 자율권, 참여적 조직관리(participatory governance),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며, 행정상의 자치권, 보다 큰 하향의 책임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운영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CDD 사업을 통하여 정보와 적절한 능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접근은 지자체와 다른 지원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우선사항을 규명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계은행 CDD의 접근방식과 활동이 효과적인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은행은 지역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CDD 프로그램의 지원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세계은행은 수도공급, 하수처리시설, 학교와 보건소 건설사업, 어머니와 영유아의 영양 프로그램, 도로건설과 영세기업의 지원 등의 다양한 긴급한 요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계 넓은 지역에 걸쳐 CD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⁴⁾

제4절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경험적 논의

1. 경험적 선행연구

지역공동체 발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종열 외(2005)는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사례를 통해 지역개발정책을 입안할 때 민주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환

4) World Bank 공식 홈페이지 <http://go.worldbank.org/J2IX6SHSG0> 참조.

경적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확보를 염두해 둔 개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개발, 지역 마케팅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호(2009)는 충남 홍성군 풀무마을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행정사무국 또는 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고령 농민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본영(1999)은 지역공동체 개발을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계획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유형을 생태적 공동체·아파트 공동체·생협공동체로 제시하며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고 그 중 생협공동체를 성공적인 계획공동체로 평가하고 있다.

김종숙(1998)은 충남 홍성군 풀무지역 공동체 사례를 통해 다종의 자생적 조직의 발달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킴으로 공동체가 결속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자생적 조직들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일열·박문규(2001)는 대전 근교 정뱅이 마을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개발에 지역이미지를 녹색관광과 연계하고, 여가 관광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최경은(2006)은 경기도 이천의 부래미 마을 사례를 통해 농촌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참여학습 주체들의 학습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마을 내·외부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모(2009)는 임실군 박사골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는 자연적·역사적 특성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주도적 참여를 통해 마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에서 나아가 마을리더 양성 및 지방정

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7〉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국내)

이종열 외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사례 - 민주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사 반영, 전문성·효율성 추구 -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확보를 염두해 둔 개발, 친환경 개발과 지역마케팅을 활용한 개발방법 모색
최승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군 풀무마을 사례 - 다양한 소득원 개발 및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 중요 -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 고령 농민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의 수반 중요
구본영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공동체 주장 - 계획공동체 유형을 생태적·아파트·생협 공동체로 제시, 그 중 생협공동체를 성공적인 계획공동체로 평가
김종숙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군 풀무지역 공동체 사례 - 다종의 자생적 조직의 발달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킴으로 공동체가 결속하게 해준다고 주장 - 자치단체 지원 및 자생조직 연계를 통한 지원 강조
이일열·박문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근교 정뱅이 마을 사례 - 지역 이미지를 녹색관광과 연계하고 여가 관광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
최경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이천 부래미 마을 사례 - 지속적 참여, 특히 참여학습 주체들의 학습네트워크 중요 - 마을 내·외부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
김진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임실 박사골 사례 - 자연적·역사적 특성에 기초한 사업 발굴, 주민주도 참여를 통해 마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마을리더 양성 및 지방정부의 협조 중요
이훈택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미산 사례 - 지역사회에 요구 잘 반영, 사회자본의 구축,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확보,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형성하여 사업에 반영

이홍택(2012)은 서울 성미산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요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둘째, 사회자본의 구축과 함께, 셋째, 출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창업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넷째,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공동목표를 형성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공동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환경적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 지방정부, 지역대학 및 산업계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지원 및 협조 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성공요인

상기와 같은 국내외 지역공동체 발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공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1)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의 문화나 특산물 또는 특정 자원환경과 관련한 자원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친근함이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지역자원은 지역이 가지고 있던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하여 자연적·인위적이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features)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 풍경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 지역사회는 지역이 품고 있는 장소와 전통, 즉 지역자원으로부터 효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① 지

역자원의 독특한 자연성 및 고유한 인위적 모습에 있으며, ② 지역자원은 지역성이 내포된 즐거움과 쾌적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연관된 가치 및 효용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가치와 효용은 생산적 가치보다는 소비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관계로 유지될 수 있고, ③ 지역자원의 가치 및 효용은 자원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되며 더 나아가 지역 외부에서 매체의 도움을 통해 혹은 도움 없이 소비가 확장될 수 있다(OECD, 1999).

〈그림 2-9〉 지역공동체 발전의 경험적 성공요인



(2) 지역정체성의 확립

모든 계획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가능한 광범위하게 공유·인식되어야 한다. 특정한 집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삶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조직의 발달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공동체가 결속하게 해준다.

지역정체성 확립은 지역공동체 복원에 있어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

정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학습해 나가게 되며,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단위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틀이 되는 지역정체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사회공간적 집단 개념과 관련되며 장소 및 영역성을 중심으로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표 2-8〉 지역공동체 발전의 경험적 성공요인과 세부 성공요인

지역자원 활용	마을 고유의 테마와 체험프로그램
	브랜드화 추진
	지역주력 상품 혹은 특산품
지역정체성 확립	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
	공동의 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인력양성과 교육	지역대학의 유무 및 연계
	권역출신 연구진의 도움
주민주도적 리더십의 형성	혁신적 지역리더
	리더에 대한 지원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지원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및 협조
	민간의 지원 및 자문

즉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의 장소에 대해 부여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생적·자발적으로 형성되며 장소와 관련된 일련의 입지에 의해 묶여 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반복적인 접촉과 복합적인 연상작용들을 통한 기억 및 애착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장소·타인 등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사회공간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장소, 즉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공동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일상생활의 물적 및 상징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공통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공통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통된 미래를 상기시키거나 확인시켜주는 물적·상징적 환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3) 인력양성과 교육

마을 출신 연구진들의 참여는 외부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을 개발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고, 이들이 권역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권역공동체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전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타 공동체들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공동체활성화의 동인(動因)이 될 수 있는 인재육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재육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 및 정체성, 문화가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체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재육성은 소수 특정인에 대한 선택적 지원 및 교육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재육성은 곧 지역공동체의 교육과 맥을 같이한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해체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지역사회의 거점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복원 및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의 경우, 학교에서 문화·교양·환경 등 관련 분야의 교육을 통해 도시민들의 자발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를 통해 정보화교육·영농교육·건강교육·공동체 운영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결국 지역공동체의 끊임 없는 발전 및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인력양성을 위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기반 구축에 있다.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궁극적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주도적 리더십의 형성

지역리더란 지역문제의 해결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하며,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주민·공무원·농협임직원·지방의회의원·교사·시민단체임직원·지자체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박진도·유정규, 2005).

마을리더에 의해 주민들이 결합하고 움직이므로 신뢰성, 성실성, 공정성, 설득력과 긴 안목을 보유한 사람이 적절하다. 일꾼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리더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마을공동체 관련 세미나,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리더의 자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당사자의 사정이나 활동분야, 지향하는 목표 등에 적합한 방식의 학습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인력양성 및 교육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지역리더는 획일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학교교육 및 관주도의 형식적인 연수를 통해서도 육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리더육성의 목적은 타인을 이끌 특정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것이며, 학습에는 독학과 집단학습 그리고 실천의 조화가 중요하다.

(5)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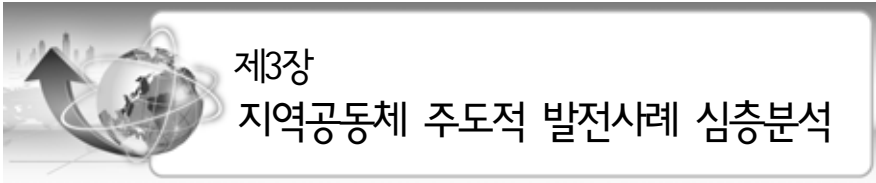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처 간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자원을 공급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때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업이나 NGO들은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사업계획 보완, 참여방법 제시,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에 있어 지역주민과 정부 그리고 NGO 및 외부전문가 등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간 상호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즉 중간지원조직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으로는 ① 지역사회 경제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 필요,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있어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 제공을 위해 유연성을 지닌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경영지원·컨설팅·지역밀착형 마케팅 등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요구되고, 둘째 지역공동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셋째 내적운동의 외적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중수, 2011).

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로는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임(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 2011). 그 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정수화 외(2011) 참조.



제1절 지역공동체 사례분석 개요

본 장 및 그 이후의 장에서는 2장의 개념정의 및 이론고찰로부터 도출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의 핵심성공요인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고, 이로부터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도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중 검증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우수사례의 선정기준으로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분석을 위해 3년 이전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로서 수상경력이 존재하고, 최근 5년간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각 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혹은 학술논문 및 관련문헌 등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19개의 사례를 추출하였다. 특히 주민의 공동생산 등 협력에 의한 수익창출이나 기타 성과가 창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제 성공요인과 내발적 발전과정에 대한 기술을 주요 사례분석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 방법론 및 기초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사례분석의 체계는 1) 사례의 선정이유, 2) 마을구성(인원 및 가구수) 및 특성, 3) 마을공동체 설립배경 및 원인, 4) 마을공동체의 목적 및 정의, 5) 추진사업 및 경과, 6) 추후 추진방향, 7) 성과 혹은 수익의 배분 등으로서, 해당 현장조사 및 문헌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사례별로 해당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3-1〉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한 자료특성

구분	칠성쌀	박사골	안덕	중금	성미산	산너울	미루
선정이유	○	○	○		○	○	○
구성	○	○	○	○	○	○	○
설립원인	○	○	○	○	○	○	○
목적	○	○		○	○	○	○
추진사업	○	○	○	○	○	○	○
추진방향	○	○		○		○	○
수익배분							
구분	치즈	복동아리	성곡	변산	정뱅이	풀무	갈전
선정이유	○	○	○		○	○	○
구성	○	○		○		○	○
설립원인	○	○	○	○	○	○	○
목적	○	○	○	○	○	○	○
추진사업	○	○	○	○	○	○	○
추진방향			○		○	○	○
수익배분							
구분	등용	한드미	토고미	백세밀	두모		
선정이유	○	○	○	○	○		
구성	○	○	○	○	○		
설립원인	○	○	○	○	○		
목적	○	○	○	○	○		
추진사업	○	○	○	○	○		
추진방향	○	○	○	○	○		
수익배분		○					

제2절 심층적 지역공동체 사례분석

가. 경북 의성 칠성 쌀 경영체

1) 선정이유

경북 의성군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는 2008년 농수산장관상으로 전국 경영우수단지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벼 공동육모를 위한 벼 육모장 시설을 완비하여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이기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이 사례 지역에 속한 180농가 중 70농가가 들녘을 공동재배하고 있다.

3) 설립원인

이 지역공동체는 2007년 단북면 일대가 들녘별 공동체 사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구성은 단북면 아연1리·4리 등 총 8개 마을로 단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진은 회장, 총무, 감사 및 8개 작목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목적, 정의

이 공동체를 설립한 목적은 소규모, 다품종 생산체제인 기존의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모여 조직화·집단화된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노동시간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5) 추진사업

이 공동체에서는 공동육모장을 운영하고 광역살포기로 공동방제사업을 하면서 23%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노동시간도 90% 절감하였고, 농기계 보유대수를

줄이면서 7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육모사업, 공동방제, 기계대여, 판매대행을 시행하고 있고 육모사업 추진을 위해 30평짜리 육모공장을 6군데 나누어 지었다.

2009년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되면서 3억원의 예산을 보조받아(90%) 총 3억 4000만원어치의 농기계를 구매하였다. 이렇게 재배한 벼는 집에서 건조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확한 그 상태로 농협으로 보내지고 농협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일반재배 벼보다 조곡 40kg당 2000원을 더 받고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질소비료 등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소하고,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생산된 볏짚은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하는 등 자연순환 농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추후 계속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논골 점과 방식으로 시험재배하여 그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적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

1) 선정이유

전북 임실 박사골 마을은 권역출신의 박사들과 주민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그 구성은 임실군 일대 삼계면 세심, 후천, 봉헌, 학정 등 8개 마을을 중심으로 총 367가구, 739명이 살고 있다.

3) 설립원인

이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사 배출지(130)명으로서 전국각지의 향우들로부터 지역발전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고, 2006년 농림수산물부 주관으로 시행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꿈이 이루어지는 임실박사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4) 목적, 정의

이 공동체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체험관광·자매결연·마을소득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추진사업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에서는 산머루, 전통쌀엿 체험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박사골 만의 브랜드화로 생산물의 명품화 추구, 전통쌀엿, 배, 오지복숭아, 와인, 오이, 밤, 두릅 등 다양한 특산물을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이 공동체에서는 첫째, 인적허브구축을 통한 박사육성을 목표로 하여 ① 권역출신 박사들의 애향심 고취와 권역의 후배인력 양성의 전초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박사관 건립, ② 권역출신 박사들과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③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④ 청정한 자연 환경 유지 및 정비로 박사골 이미지 가꾸기 추진, ⑤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권역 내 어린이는 유치원부터 박사까지 장학기금 지원으로 권역의 자긍심 고취 및 외지인 유치 및 ⑥ 전문 분야별 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⑦ 관련 지자체 및 대학, 전문가 등과 협조체제 유지를 실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농업박사가 생산하는 명품 먹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① 친환경 확대 시행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명품농산물 만들기, ② 박사골 전통쌀엿 등 박

사골만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 ③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안전한 농특
 산품 가공과 유통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④ 전
 자상거래와 체험관광을 연계로 명품 지역농산물 알리기와 함께 ⑤ 지속적 교육
 을 통한 명품 분야별 생산 및 가공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⑥ 다양한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다.

다. 전북 완주 안덕마을

1) 선정이유

전북 완주 안덕마을은 2010년 매출이 4억 8000만원으로 늘었고 순이익은 20%
 에 달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이 마을은 미치, 장과, 신기, 원안덕 4개 마을을 모아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의 출자금은 1억 3천만원이다.

3) 설립원인

안덕마을은 유명배 촌장의 아이디어로 2009년 주민 53명이 주주로 참여해 안
 덕파워영농조합을 설립하였고, 출자금 1억 8500만원으로 1000평 땅을 사고 서당
 으로 쓰이던 오래된 한옥을 세미나나 체험교육장으로 만들었다.

4) 목적, 정의

마을을 설립한데 대한 특별한 목적은 없다.

5) 추진사업

민속한의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되는 건강힐링체험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체험과 건강힐링교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6) 추후 추진방향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계획은 없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다.

라. 전북 임실 중금마을

1) 선정이유

전북 임실 중금마을은 2003년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위에 선정되었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구성(인원, 가구수)

마을에는 총36가구 89명이 살고 있다.

3) 설립원인

중금마을은 2008년 마을회의를 통해 쓰레기 없는 마을,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마을로 만들기로 결정하여 재활용품을 12가지로 분류해서 수거하면서 시작되었다.

4) 목적, 정의

2008년 마을회의를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정하여, 마을의 공공시설, 식품 가공공장 등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

서 경비절감과 마을 내 자원순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계적으로 공해 없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실현으로 쾌적한 마을 가꾸기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금마을에서는 유채재배단지 조성, 바이오디젤유 생산과 함께 마을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또한 쓰레기 분류수거를 통한 쓰레기 제로배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난방 및 주방에너지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나아가 중금마을에서는 자연생태마을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① 우렁이를 이용한 무농약 농법을 확대하고 있으며, ② 현재 생태하천 정비 중이며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마을 곳곳에 쉼터를 조성 중이다. 나아가 ③ 고속도로법면 및 교각주변 경관조성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며, ④ 세대마다 꽃과 나무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자립마을을 목표로 현재 ① 태양광 11가구, 풍력1가구가 신청하여 마을 주거용전력의 6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전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②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이를 이용한 농기계 운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 유채 1ha를 시범 파종할 계획이다. 그리고 ③ 축산퇴비 및 액비는 발효하여 화석연료 없는 친환경농업실현과 탄소라벨링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자원 분류 재활용마을이 되기 위하여, 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보편화되기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이용문제에 대한 교육적 측면 제고 및 활성화 운동과, ② 재활용품 판매금액으로 마을회관 이용 및 모범농가 표창을 추진하고 있으며, ③ 현재 환경보호과의 미화계의 지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④ 4조 16구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간이집하장까지 설치하여, 쓰레기제로배출을 목표로 전문 시민단체(전북의제21)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다.

마. 서울 마포 성미산마을

1) 선정이유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은 1천명의 주민들이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활이라는 독특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측면에서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이 마을은 회장이나 조직도 없이 작은 커뮤니티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립원인

이 마을은 1994년 육아에 관심있는 젊은 부부 20쌍이 서울 마포구청 뒤 해발 65미터의 성미산 주변에 자리잡고 대안교육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구성원간의 연대감을 중요시하며 협동조합 방식으로 1994년에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이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날으는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

4) 목적, 정의

성미산 마을은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추진사업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경험한 조합원들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을 반대운동 끝에 공사를 중단시키게 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자는 취지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였다. 이 후 다양한 공동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안학교, 마을극장이 세워졌고 현재 카쉐어링을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정비고, 반찬가게, 소출력공동체라디오, 바느질 작업장, 마을카페, 청년회,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등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특이사항은 없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1) 선정이유

충남 서천 산너울 마을은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어 3년간 해마다 3,000만원씩 보전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서천군과 ㈜이장의 사후관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군청에는 산너울마을 담당직원이 있고 ㈜이장도 지속적인 마을 컨설팅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2006년 산자부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신청해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정부자금으로 제공하였고 하수처리 시설을 비롯 각종 기반사업을 군청이 진행하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산너울 마을은 현재 30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립원인

산너울 마을은 2005년 초 어메니티 서천을 표방하는 서천군과 생태건축 및 컨

설팅 회사인 (주)이장이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설립되었다. 이는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마을이 아닌 지자체, 시공회사, 입주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동체에 해당한다.

4) 목적, 정의

산너울 마을의 목적은 생태·친환경·어메니티·지역공동체 등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가꾸지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동체 마을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공동체를 지향한다, ② 연접형 건축방식을 지킨다, ③ 복지,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④ 주민 모두가 만든다, ⑤ 대지는 공동지분으로 한다, ⑥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마을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6대원칙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추진사업

산너울 마을은 퍼머컬처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지역민의 화합-동화를 유도하고, 체험을 통한 재생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타전원 마을 및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공동이용시설공간 활성화를 위한 배치 및 입주민들의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나아가 친환경 주거단지 형성을 통해 에너지자립 및 공동체를 형성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및 그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적 경관조성 및 생태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관광객 증가로 일자리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다.

사. 충북 괴산 미루마을

1) 선정이유

충북 괴산 미루마을은 도시인의 농촌유입을 위한 농림부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림부와 괴산군에서 무상자금(15억 범위 내) 지원과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원마을을 구축하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미루마을은 1만 5천평 마을에 57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민은 45세 이하 18%, 46-50세 이하 28%, 51-55세 31%, 56세 이상 23%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립원인

미루마을은 2006년 인하대 동문과 괴산출신 출향인이 만들고, 촌장은 전 원영무 인하대 총장이고, 총무는 한때 운동권으로 이름을 날렸던 전희수이다. 이들 인력을 중심으로 마을광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들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30여 명을 위해 특별히 배치하여, 은퇴자들의 마을이기 보다는 자녀 교육을 함께 하는 마을로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

4) 목적, 정의

미루마을은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친환경 가치, 소득이 있는 마을,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나눔이 있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추진사업

미루마을의 사업은 주민을 활용하여, 평생교육과 소득창출의 자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마을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으로 자격증은 물론 마을에 기여할 의사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정해 두었다. 주민들이 가진 목공, 유기농법, 요리사, 전

기기술, 영어강의, 공예 등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명성을 가진 요리사가 입주했고, 매주 마을 회관에서 자연 요리를 판매한다. 마을의 학생들을 위해 부모들이 서로 가르친다. 나이든 어른들이 광장과 회관에서 어린 학생들을 함께 돌본다. 그 사이 부모들은 동네에서 무공해 농사를 짓거나 괴산의 각종 농산물 판매에 나선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코빌리지를 만들기 위해 고효율에너지 주택을 건립하고, 각종 농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고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미루마일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전원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친환경 건축물과 생태에너지가 구현되는 국내 최초의 생태주거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고,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전원마을 구현과, 도시인들이 오고싶어 하는 마을, 그리고 부자되는 농촌마을 구현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다.

아. 전북 임실 치즈마을

1) 선정이유

전북 임실 치즈마을은 2003년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위에 선정되었고, 2006년 마을 이름이 치즈마을로 바뀌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치즈마을은 화성, 중금, 금당 세 부락, 86가구,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립원인

치즈마을은 1967년 임실성당에 부임한 지정환 신부(디 디에세스 테벤스)에 의해 가난한 주민을 돕기 위해 서양에서 산양 2마리를 들여오면서 탄생하였다.

이 후 치즈공장을 설립하고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4) 목적, 정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마을’이라는 테마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바른 먹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는 마을의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치즈마을에서는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3곳 있고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하고 있고, 치즈 아카데미 운영하며 치즈만들기, 산양체험, 피자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가원이라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치즈 뿐 아니라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스테비아 농업을 통해 농업농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기존의 사업 외 특이사항은 없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다.

자. 강원 삼척 북동아리 마을

1) 선정이유

강원 삼척 북동아리 마을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도내1위이자, 전국 우수마을에 선정되었으며, 북동아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며 연 8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북동아리 마을에는 50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다.

3) 설립원인

이 마을은 2007년에 36살의 젊은 이장이 선출되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직접 수를 식혀 만든 조청과 엿, 강정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4) 목적, 정의

북동아리 마을은 전국 우수마을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잡곡재배단지를 두 배 이상 늘리고 마케팅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로 생산 및 유통, 가공판매, 관광을 함께 하는 마을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수수조청을 시작으로 잡곡강정, 잡곡참가 두부 및 잡곡빵잎쿠키, 빵잎된장 등을 생산하고 있고, 국비보조로 자연치유 산촌문화관을 건립하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도·농간 교류 확대 및 농촌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추후 새로이 도입될 추진방향은 없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다.

차.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1) 선정이유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은 ‘창녕 우포늪 자연생명농업단지’로 선정되어 분석사례에 포함되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정확한 구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 설립원인

성곡친환경마을은 교통이 불편한 산골마을이라는 단점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설립하였다.

4) 목적, 정의

이 마을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추진사업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성곡 친환경쌀, 잡곡, 사과, 배, 단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통놀이체험, 두부만들기, 과일까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추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누룽지사업장, 운동장 정비, 주차장 등의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체험시설 확충으로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측면에서 특이점은 없다.

카.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1) 선정이유

2) 구성(인원, 가구수)

변산공동체는 논 3천평, 밭 1만2천평으로 시작하여 현재 20여명이 살고 있다.

3) 설립원인

1995년 대학교수 출신의 윤구병에 의해 주도되어, 그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1995년에 시작하여 1999년에 영농법인이 되었다.

4) 목적, 정의

변산공동체는 완전한 유기농업을 지향하며 공동체의 모든 식구가 함께 농사를 지어 함께 나누어 먹고 이익이 생기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공동체 살림을 위해 전부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이 마을에서는 자연농법을 이용한 완전 무농약 유기농업을 실시하여 식량 자

급률이 20%가 넘고 퇴비는 만들어 쓰며 비닐을 이용한 농사는 짓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추후 특이한 추진사항은 없다.

7) 수익배분

변산공동체는 개인 몫으로 나누어주는 수익배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타.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

1) 선정이유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은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마을이다.

2) 구성(인원, 가구수)

그 구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설립원인

정뱅이 마을은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2007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되고, 2008년에는 도농교류센터마을, 건교부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3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설립되었다.

4) 목적, 정의

이 마을은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동양화가, 설치미술가, 도예가 등 다양한 작가들과 마을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집의 담을 작품화하거나 버려진 옹기와 그릇들을 벽화로 꾸미는 등 마을 전체를 예술작품으로 변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마을안길포장이나 농기계 창고 신축과 같은 단순개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마을, 백년후에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체험관, 도농교류센터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상대로 예술제, 환경생태체험, 농촌체험 등의 행사를 열어갈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로 웰빙 식단을 제공하는 농촌레스토랑 그리고 민박 등의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관을 지어 마을의 역사와 농촌문화를 알리고 매년 공연과 전시를 겸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서 특이점은 없다.

파. 충남 홍성 풀무지역공동체

1) 선정이유

충남 홍성의 풀무지역공동체는 유기농업의 메카로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2004년에 문당리 지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면서, 2006년까지 정부에서 7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오리농법 쌀 단지를 조성하였고, 현재 문당리 인근 지역 전체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75년 한국최초로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지역에 보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풀무학교의 이념에 따라 오리농업 생산자들 가운데 몇몇은 풀무학교 졸업생이며, 현재까지 4,364명에 이르고 있다.

3) 설립원인

풀무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에 의해 발전되어 졸업생들이 지역공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신앙, 생태보존,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체로서 1980년대 초반 풀무생협을 결성하고 유기농 농산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4) 목적, 정의

풀무지역공동체는 1958년에 ‘그리스도인, 농촌의 수호자, 세계의 시민양성’을 목표로 ‘더불어 사는 평민’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이 마을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초, 중, 고, 마을 대학인 전공부가 갖추어져 있으며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마을대학은 풀무학교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공립학교인 초등, 중학교도 학교 간 생태교육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지역농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관행 쌀보다 비싼 유기농 급식을 하도록 차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오리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쌀 작목장, 협동조합, 출판사, 신문사, 가게, 바이오가스 발전소 등의 주민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공동시설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문당리 백년발전계획을 세우고 너덕한 마을만들기, 오순도순한 마을 만들기, 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태양열로 온수를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돈분, 인분 등을 재료로 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적 측면에서 특이점은 없다.

하. 경남 산청 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1) 선정이유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은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지원 등을 배제한 소규모 마을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독립자본으로 진행한 에너지자립마을에 해당한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총 5가구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3) 설립원인

갈전마을의 에너지 자립운동을 시작한 민들레 공동체는 1991년 공동체 대표인 민들레 학교 교장과 지역 대학생 등이 경남 산청 둔철산 끝자락의 갈전마을

에 집을 짓고 살면서 시작되었고,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무소유의 대안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4) 목적, 정의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줄여 에너지자립을 하겠다는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거두는 원리와 자급자족의 철학은 대안에너지와 대안기술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5) 추진사업

갈전마을은 대안기술센터의 설치와 대안기술의 보급을 추진하여 인력개발에서 나아가 공동체 부설 대안기술센터를 세워 대체에너지와 대안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이 대안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층짜리 공동체 가족의 주택 2채와 민들레학교 건물 3동, 대안기술센터 사무실을 스트로베일하우스로 건축하였고, 태양열 집열판, 페달을 밟으면 축전지에 전기를 채우는 고정식 자전거, 바람개비 풍력발전장치, 배설물을 발효하여 메탄가스 활용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의 활용을 꾀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갈전마을은 태양과 바람, 바이오메스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직접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서 특이사항은 없다.

거. 부안 등용 에너지자립 마을

1) 선정이유

부안 등용 에너지 자립 마을은 기후변화포럼에서 2009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에너지자립 농촌공동체 재건을 실험중에 있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총 30가구 50명이 거주하고 있다.

3) 설립원인

이 마을은 2003년 방폐장 반대운동 이후 부안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협력으로 2005년 2월 부안 시민발전소의 창립으로 이어지면서, 같은 해 3월 부안 시민발전소와 생명평화마중물이 등용리로 이주되면서, 에너지자립마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마을에너지 전환 실천이 시작된 시민 출자형의 태양광발전소이다.

4) 목적, 정의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의 자립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2005-2006년까지 부안지역 생태학교 및 종교시설에 3kW급 햇빛발전소 1,2,3,4호기를 설치하였고, 2006년 12월 지열시스템 설치, 풍력발전기와 자전거발전기, 태양열 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2008년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등용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로 선포하였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2015년까지 마을의 총 에너지를 30% 감소하고 에너지자립도를 50%로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매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다.

너. 충북 단양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1) 선정이유

단양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은 1998년 산림청에서 시작한 생태 산촌 종합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2003년 농림부의 녹색 농촌체험마을, 2004년 행자부 정보화마을, 농림부의 농촌 마을종합개발 등 총 4개의 정부시행마을 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2007년에는 농림부가 지정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농어촌유학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마을 구성은 39가구 72명이 거주하고 있다.

3) 설립원인

한드미는 큰 들이라는 뜻으로, 정문찬 이장은 1998년 귀향해서 무농약 농사로 땅을 살리고 녹색체험, 전통문화 마을로 도시민을 끌어들이고, 농촌유학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폐교를 살려내었다. 또한 26가구가 2억 6천만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목적, 정의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한드미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어, 각 마을이 각자 농사를 짓고 체험행사를 공동으로 하여 소득을 고르게 나누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식당을 건립하여 청정 농산물로 마을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밖에 레프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마을을 상거래팀, 농촌체험팀, 조리팀(부녀회), 농촌유학팀, 생활환경정비팀, 노인회(마을 허드렛일)의 6개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이며 각 팀 별 매출액의 10%, 숙박비의 70%는 사무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팀별 독립채산식으로 운영 중이다.

주요 작물로 쌀, 옥수수, 고추 등이 있고 특산물로는 영지버섯, 상황버섯, 표고버섯 등이 있다. 이 작물은 저농약재배로 출하하고 있으며 오리, 우렁이 농법 시행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현재는 마을 매출이 한계에 이르러 향후 마을식당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에 이용되는 식재료는 한드미 마을과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약재를 사용하여 건강식으로 할 계획이다.

7) 수익배분

마을의 사업을 통한 수익은 매출액이 2004년 125백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452백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법인 운영결과를 연말에 평가하여 운영경비, 재투자계획, 법인 활동 등 마을주민에 대한 배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마을주민은 법인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170-700만원 정도(월 14-58만원) 수준으로 배분받았다.

더. 강원 화천 토고미 마을

1) 선정이유

화천 토고미 마을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

마을 선정,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대상, 녹색경영대상, 전국쌀 품평회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총 82호가 거주 중이다.

3) 설립원인

이장 한상열과 화천군 공무원 최수명,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박사 등이 마을 발전 자문단으로 이들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4) 목적, 정의

토고미 마을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토고미 마을에서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오리쌀, 감자, 옥수수, 콩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토고미 오리쌀이 대표적 상품이다.

이와 함께 도시소비자들과의 신뢰구축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농촌관광을 통한 도농교류를 통해 다양한 농촌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기 토고미 마을은 토고미환경작업반을 구성하고 무농약오리농법 쌀 재배를 시작하였는데 도시의 가족회원과 연계해 자연학교를 연 것이 체험마을의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매달 발행되는 영농일기라는 마을의 소식지를 받아보는 마을회원 수가 1200가구에 달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현재 토고미 2031계획이라는 마을 가꾸기 30년 계획을 완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돕고 사는 마을, ② 푸른 자연과 풍요로

운 삶이 함께 하는 마을, ③ 전통과 문화가 꽃피는 마을, 그리고 ④ 주변지역, 도시의 이웃과 함께 농사지으며 공생하는 마을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관한 특이점은 없다.

러. 대전 유성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1) 선정이유

대전 유성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사업개발비 2,000만원 등을 지원 받았고, 그 수익이 4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농사를 짓지 않는 노인들이 참여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공동체의 구성은 65가구 중 3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3) 설립원인

귀농인 김종우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주축 되어 2008년에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4) 목적, 정의

공동체의 목적은 친환경 무농약 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수익사업과 연관시켜 발전시키는데 있다.

5) 추진사업

현재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밀가루, 국수 등을 판매하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체험과 우리밀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해 15가구가 농사를 지어 우리밀 4.5톤을 수확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4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각 가구마다 100만원씩 각출하여 기계를 구입하였고, 포장지 디자인 등을 하고, 2010년에는 5만2m의 밭을 경작하여 생산량이 20톤으로 늘었으며 매출도 1억 1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참여 농가가 30가구로 늘고 농지도 12만2m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밀농사를 짓지 않는 40여명의 노인은 시간당 5000원을 받으며 밀가공업에 참여하여 조합매출액의 25-30%가 품값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계룡산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등산로를 개발하여 체험장 및 산책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2012년에는 경영, 회계, 법률,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과·단체 등으로 만들어진 ‘재능나눔Pool’로부터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로부터 백세밀 영농조합에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 약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2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다.

머. 경남 남해 두모마을

1) 선정이유

남해군 두모마을은 2005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7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이장, 지도자 등의 주도적 노력하에 마을 모두가 참여하여 수익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구성(인원, 가구수)

총 인원 143명, 74가구로 구성된 반농·반어마을이다.

3) 설립원인

젊은이장(43세) 정장백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을 조성하고 휴경 농지를 이용해 유채·메밀 등을 심기 시작하면서 설립되었고, 이와 함께 남해카약클럽 대표인 42세 고병국이 해양스포츠에 대한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자연조건과 기후, 환경 등 해양스포츠 육성조건을 분석하고 제시하면서 발전하였다.

4) 목적, 정의

이 마을을 통해 천혜자연경관과 조상들이 해오던 어로방식을 체험화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5) 추진사업

두모 마을에서는 전문강사가 카약강습과 체험을 안내하며, 스노쿨링, 맨손고기잡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며, 유채꽃, 메밀꽃 축제 등 녹색레포츠 체험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6) 추후 추진방향

향후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 마을을 찾아오는 체험객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자 캠핑장 추가 증설 및 바닷가 체험 진입로 확장 등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수익배분

수익배분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다.

제3절 지역공동체 사례의 특성요인 분석 및 시사점

제2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사례에 대한 특성을 정리한 것은 <표 3-2>를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사례의 특성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공동체의 자생조직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집단 및 행정조직은 실상은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하지 않은 제3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계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국 지역공동체 자생조직이 외부전문가 및 행정과 어우러져 힘을 발휘해야 하며, 주된 동력은 공동체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성장한 마을리더가 이끄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조직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이를 아우르고 통합시킬 공동체 내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자발적 의지는 결국 소멸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리더가 존재함과 동시에 차기 리더를 육성하는 등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인재(리더)양성에도 지역공동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소수 리더의 노력에 의해 주도되지만 결국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바탕으로 집단리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을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운영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한다면 지역특성상 감정적 대립으로 대립 및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원상태로의 회복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원이 소요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 주민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내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

되고 관광 유발효과가 있다하여도 공동체 구성원이 그 공간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동원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표 3-2〉 마을공동체 분석사례에 대한 사례별 특성요인

구분		칠성쌀	박사골	안덕	중금	성미산	산너울	미루
지역 자원	체험		○	○			○	○
	브랜드		○					
	특산품	○	○					
정체 성	단체					○		
	목표	○	○		○	○	○	○
	배려					○		
인력	대학		○					
	연구진		○					○
리더	리더			○				○
	지원							○
지원	중·지	○	○		○		○	○
	민간	○	○		○		○	○
구분		치즈	복동아리	성곡	변산	정뱅이	풀무	갈전
지역 자원	체험	○	○	○		○		
	브랜드	○						
	특산품	○	○	○		○	○	
정체 성	단체						○	
	목표	○	○	○	○	○	○	○
	배려	○					○	
인력	대학						○	○
	연구진					○	○	
리더	리더		○		○	○		
	지원				○	○		
지원	중·지	○	○	○		○	○	
	민간		○			○	○	
구분		등용	한드미	토고미	백세밀	두모		
지역 자원	체험		○	○	○	○		
	브랜드		○					
	특산품		○	○	○	○		
정체 성	단체		○					
	목표	○	○	○	○	○		
	배려		○		○			
인력	대학							
	연구진							
리더	리더		○	○	○	○		
	지원		○	○				
지원	중·지	○	○	○	○	○		
	민간	○		○	○			

그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구성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소비관계에서 그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질은 향상되며 결국 공동체 회복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논의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논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내에 다양한 자생조직이 있으며 각 조직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집단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과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단일의 사업방향에 맞추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집단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와 같은 공동 논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주민’, ‘조직-주민’, 혹은 ‘조직-조직’ 간 갈등이 발생된다. 전문가주도형·정부(중앙 및 지방)주도형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는 갈등발생을 지역공동체의 최대 난관으로 알고 사업을 수정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이들이 외부에 있기에 지역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획대상 및 구획정리해야 할 토지정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대립하는 제 세력은 상호 침투하고 서로의 변화를 추동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부동력과 리더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능해 지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특성상 내부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결국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사업이나 성과 만들기가 아닌, ‘사람 만들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사람, 조직과 조직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

그동안 차치단체에서 시행해온 지역개발 및 공동체복원 방식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고 개발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부자본의 지배 구조가 창출되고 개발이익 또한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환경자원 등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해진 개발계획에 지역을 끼워 맞추는 획일적 탁상행정이 많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이루기 위해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인력동원 확보에는 등한시함으로써 몇 년 후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정책 수립이 사업추진 기관이나 외부 관광객을 위한 시각적 효과와 이벤트에 치중하였지 소득사업 개발 등 지역주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과, 관성적인 공식사회 특성상 시설물 설치와 서류처리 등 정해진 업무 외에 독특한 정책개발이나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 능동적 사업추진 의지가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지역공동체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개발논리, 개발사업자의 수익논리, 관광객 유치 및 보여주기식 우선원칙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지를 개발하고 가꾼다는 풀뿌리 개발 개념과는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곧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수혜자가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론 사업에 대한 공개원칙이 초기과정에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하지만, 결국 내부 자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 및 해법을 찾아가게 된다. 공동체 합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은 초기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내재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우호적인 집단과 개인까지 분열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갈등발생요인은 공동체 운영을 소수 리더그룹과 전문가, 행정이 편의적으로 독점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자치단체나 전문가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흘러감으로써 외부인의 욕구충족에만 충실하고, 주민의 이해를 우선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

이게 되어 내부반발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보장되고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까지도 책임지는 공동의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시사점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정책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거나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획한 정책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받아서 지역의 몇몇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행정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및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다보면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국 일률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소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커뮤니티, 즉 지역의 공동체가 필요하며 지역자원·정체성·인력 및 조직·리더·지원 등의 요소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지게 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장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추진현황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공동체의 구성 요인을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리더, 지원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인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성 요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만족도 정도의 제시에 추가적으로 전체 만족도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 추출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더하여 구성 요인의 만족도 상승에 따른 기여도 제시는 순서화로지트(Ordered logit)을 활용하여 의미를 제시하였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유무(전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정도를 제시하였다.

(2) 조사설계

본 설문은 18개 지역공동체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며, 조사방법으로 표준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채택하여 지역공동체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수거된 전체 설문에서 무응답 설문(null data) 및 무효설문(influence가 미약한

설문)을 제외한 최종적인 유효 설문지를 133부 추출하였고, 로짓분석 설문조사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 유효 설문수는 30부로, 추가 설문 확보로 인하여 정규성 및 추세(trend)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내용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내용으로는 우선, 지역공동체의 운영으로 만족도가 결정되는 요인을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의 5개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지역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5개인 요인은 각각의 특성별로 세부 지표로 재구성되어, 총 세부지표는 12개이며, 5점 척도(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지역공동체 운영을 위한 세부지표의 만족도 상태를 제시하였다.

〈표 4-1〉 지역공동체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비고
지역자원	체험	마을 고유의 테마와 체험프로그램	5점 척도
	브랜드	브랜드화 추진	
	특산품	지역주력 상품 혹은 특산품	
정체성	단체	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	
	목표	공동의 목적	
	배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인력 및 교육	대학	지역대학의 유무 및 연계	
	연구진	권역출신 연구진의 도움	
리더	리더	혁신적 지역리더	
	지원	리더에 대한 지원	
지원	중·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및 협조	
	민간	민간의 지원 및 자문	

(4) 분석방법

기초만족도 조사는 수거된 설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작성함으로써, histogram에 의한 만족도를 제시하여,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지원 전·후의 변화를 차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만족도에 대한 변화 차이를 제시한다.

요인별 기여도 조사는 Ordered logit에 의한 기여도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운영자 및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추출 및 만족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출하기 위하여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 Liao (1994)의 순서화로지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고, 이 Ordered logit model은 확률 개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순서화된 다항의 선택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모형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은 종속변수의 다항선택 성과 이산성을 회귀식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항로지모형(Binary logit model)을 적용하고 있다. 순서화로지모형에서의 이항로지 개념의 적용은 순서화 로짓 분석을 위하여 이항로짓을 확장시키는 것으로써, 이항의 선택이 아닌 다항 선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 모든 확률모형의 근원은 이항표본추출(binary sampling)에 근원하는 것으로써, 분포의 형성 및 확률 선택에서의 차이점에 의하여 구별된다.

식(1)의 이항로지모형을 순서화된 종속변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Y 와 관찰가능한 \hat{Y} 와의 관계가 요구된다.⁶⁾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quad (1)$$

$$\begin{aligned} Y=1 & \text{ if } \hat{Y} \leq \mu_1 \\ Y=2 & \text{ if } \mu_1 < \hat{Y} \leq \mu_2 \\ & \vdots \\ Y=n & \text{ if } \mu_{n-1} < \hat{Y} \end{aligned} \quad (2)$$

6) 이때 μ 는 \hat{Y} 의 경계값으로써 n 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에 대한 선택 n 개를 의미한다.

이때 이산한 종속변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개념이 필요하며,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성격을 활용하여 누적분포함수값의 차이로부터 확률값의 도출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 (F(\mu_n - \sum_{k=1}^K \beta_k X_k) - F(\mu_{n-1} - \sum_{k=1}^K \beta_k X_k)) \\
 \text{Prob}(Y=n) &= \text{Prob}(\mu_{n-1} < \hat{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q \mu_n) \quad (3) \\
 &= \text{Prob}(\mu_{n-1}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q \mu_n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따라서, $Y \leq n$ 일때의 확률값은 누적확률분포함수 $F(\mu_n - \sum_{k=1}^K \beta_k X_k)$ 와 같이 도출되며(식(4)), 누적로짓분포함수로 변환하여 역함수를 취하면 순서화로짓모형 식(6)이 도출된다.

$$\text{Prob}(Y \leq n) = F(\mu_n - \sum_{k=1}^K \beta_k X_k) \quad (4)$$

$$\text{Prob}(Y \leq n|X) = F(\mu_n - \sum_{k=1}^K \beta_k X_k) = \frac{e^{\mu_n - \sum_{k=1}^K \beta_k X_k}}{1 + e^{\mu_n - \sum_{k=1}^K \beta_k X_k}} \quad (5)$$

$$\log \left[\frac{\text{Prob}(Y \leq n|X)}{1 - \text{Prob}(Y \leq n|X)} \right] = \mu_n - \sum_{k=1}^K \beta_k X_k \quad (6)$$

또한, 누적확률분포함수에서 확률을 도출할 경우에는 두 항간의 차이로부터 확률값의 도출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text{Prob}(Y=1) &= L(\mu_1 - \sum_{k=1}^K \beta_k X_k) \quad (7) \\
 \text{Prob}(Y=2) &= L(\mu_2 - \sum_{k=1}^K \beta_k X_k) - L(\mu_1 - \sum_{k=1}^K \beta_k X_k) \\
 &\quad \vdots \\
 \text{Prob}(Y=n) &= 1 - L(\mu_{n-1}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기초 추진현황 및 만족도 조사⁷⁾

지원 전/후 만족도 기초분석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지역공동체 운영자, 주민, 교육, 연계기관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표 4-2〉 만족도 조사 기초분석 결과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체험	1.11	0.997	0.995	2.49	1.791	3.206
브랜드	0.31	0.653	0.427	0.81	1.577	2.487
특산품	0.98	0.985	0.969	2.09	1.844	3.401
단체	0.51	1.049	1.100	1.04	1.864	3.476
목표	2.14	1.072	1.148	3.79	0.993	0.986
배려	0.65	1.156	1.336	1.14	1.757	3.088
대학	0.54	1.132	1.280	0.81	1.624	2.639
연구진	0.89	1.434	2.055	1.27	1.935	3.744
리더	1.53	1.617	2.614	2.17	2.054	4.220
지원	0.53	0.958	0.917	1.02	1.654	2.734
중·지	1.56	1.090	1.187	2.98	1.681	2.825
민간	1.14	1.286	1.654	1.91	1.861	3.461
만족도	2.03	0.816	0.666	4.05	0.843	0.710

또한, 지원의 전·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형성 전과 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리커드(Likert)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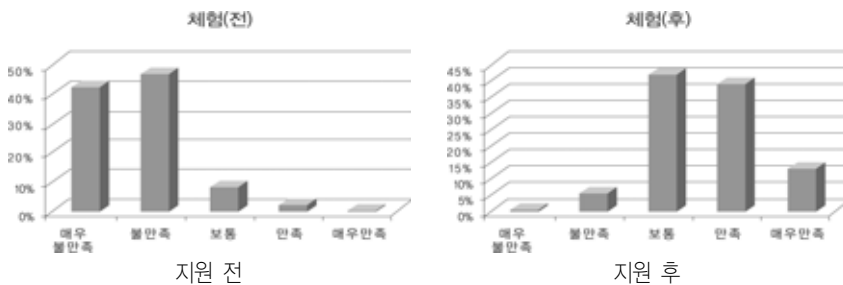
7)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5개 분류, 12개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소수 자릿수 0을 기준으로 작성함

결과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사용한 기초분석 결과 제시는 의미가 없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일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자원

지역자원 활용도 측면에서 우선, 체험항목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의 체험에 의한 만족도는 지원 전에는 대체로 불만(90%), 보통(8%), 대체로 만족(2%)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한 설문지의 빈도분석은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으로 구성되며, 이중 빈도 분석에서의 대체로 불만은 ‘매우 불만’과 ‘대체로 불만’, 대체로 만족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총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림 4-1〉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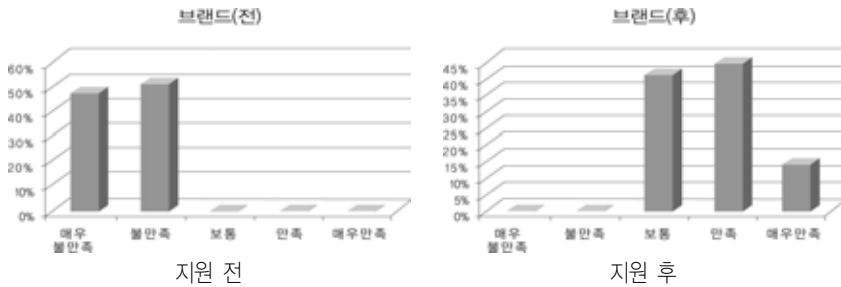


반면, 지원 이후의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5%), 보통(42%), 대체로 만족(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으로 인한 프로그램 체험 만족도는 불만 정도가 84.22%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34.35%p, 49.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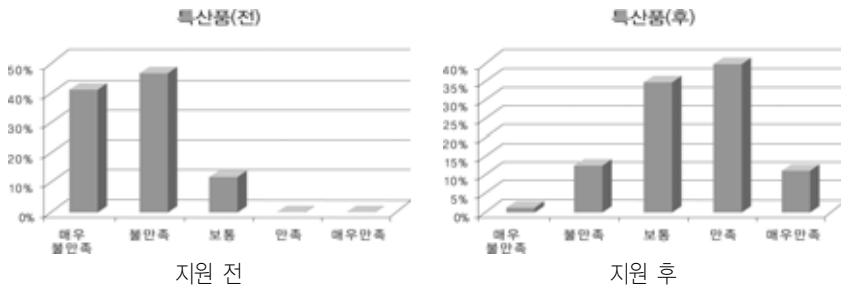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역공동체로 인한 브랜드화의 추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 대체로 불만(0%), 보통(41%), 그리고 대체로 만족(59%)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지

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브랜드화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이 100%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 41.38%p, 대체로 만족이 58.62%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브랜드)



〈그림 4-3〉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자원(특산품)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 지역주력 상품 혹은 특산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88%), 보통(12%), 대체로 만족(0%)로 나타나 특산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후의 특산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14%), 보통(35%), 대체로 만족(51%)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후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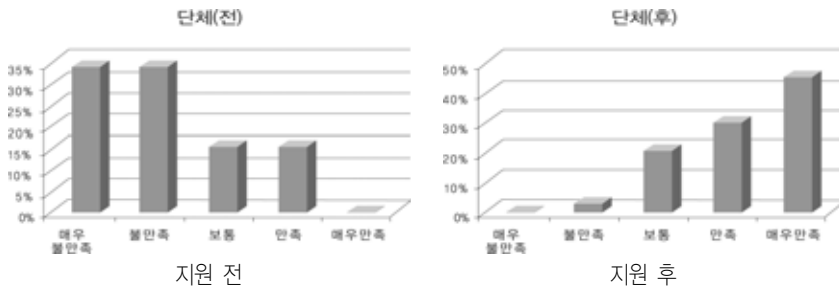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이 74.56%p 감

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23.31%p, 51.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주력 상품 및 특산품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정체성

지역 정체성 확립분야에서 단체와 관련된 지역공동체로 인해 발현된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69%), 보통(16%), 대체로 만족(1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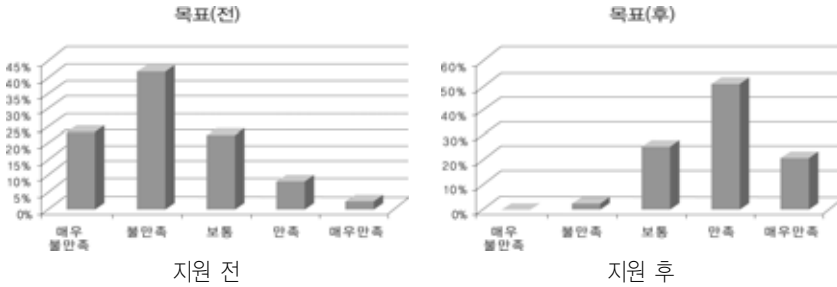
반면, 지원 이후의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3%), 보통(21%), 대체로 만족(76%)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만족도의 변화는 대체로 불만 정도가 65.72%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5.59%p, 60.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목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66%), 보통(23%), 대체로 만족(11%)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목표 설정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2%), 보통(26%), 대체로 만족(72%)로 전반적으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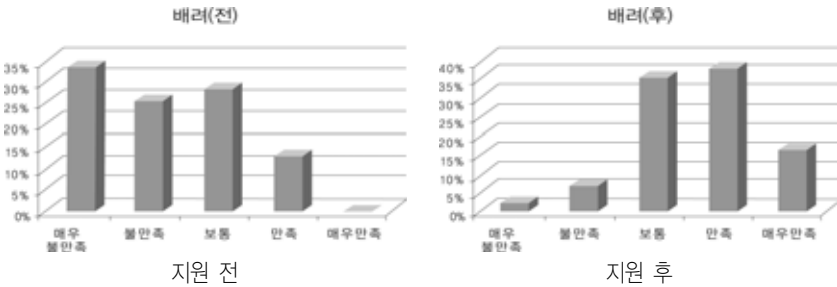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목표 설정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대체로 불만이 63.82%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2.75%p, 61.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목표 설정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목표)



〈그림 4-6〉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정체성(배려)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나타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만족도는 지원 전에는 대체로 불만(59%), 보통(28%), 대체로 만족(13%)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후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측면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10%), 보통(36%), 대체로 만족(55%)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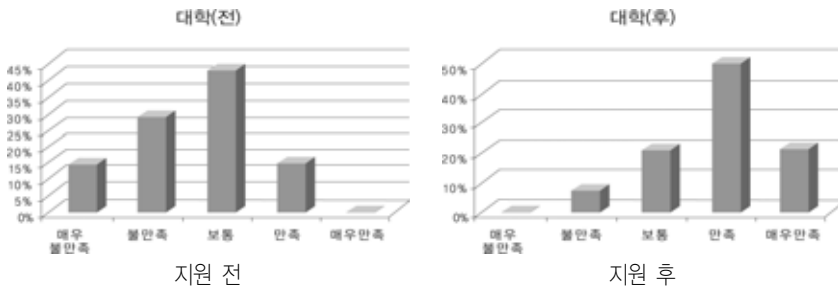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대체로 불만은 49.45%p가 감소하

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7.51%p, 41.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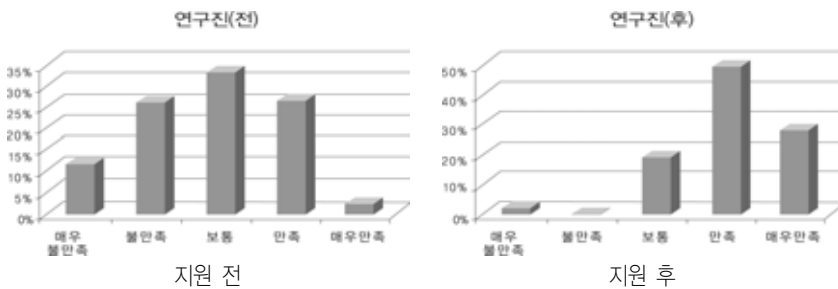
(3) 인력양성 및 교육

지역공동체의 인력양성과 교육분야에 대하여 지역공동체로 인하여 지역 대학과의 연계 유무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43%), 보통(43%), 대체로 만족(14%)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과 보통이 각각 7%, 21%, 대체로 만족이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 대학과의 연계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만족도 설문결과: 인력양성 및 교육(대학)



〈그림 4-8〉 만족도 설문결과: 인력양성 및 교육(연구진)



다음으로 지역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 출신 연구진의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38%), 보통(33%), 대체로 만족(29%)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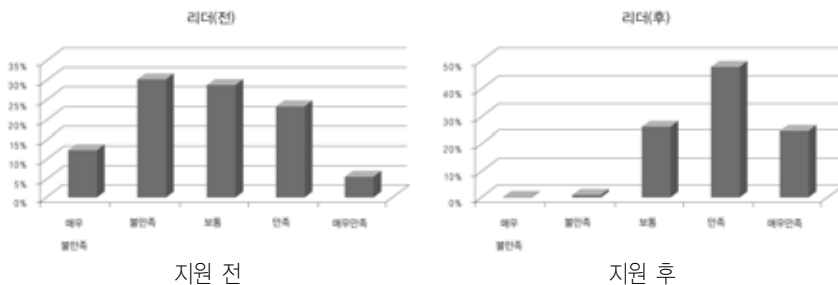
반면, 지원 이후의 지역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2%), 보통(19%), 대체로 만족(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로 인한 지원으로 연구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 35.71%p가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14.29%p, 50.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리더쉽 형성

지역리더쉽 형성항목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역리더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이전에는 대체로 불만(42%), 보통(29%), 대체로 만족(29%)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으로 인한 지역리더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1%), 보통(26%), 대체로 만족(73%)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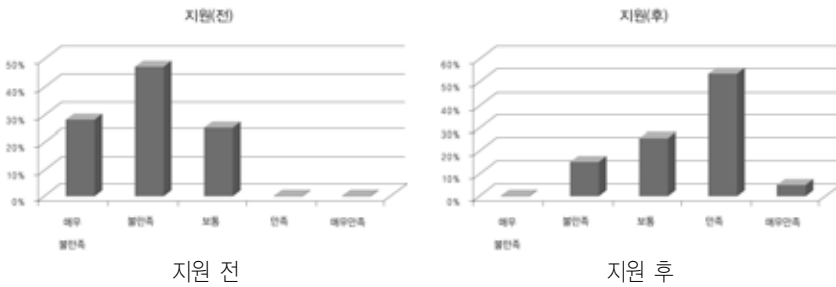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리더의 유무 및 이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대체로 불만과 보통이 각각 41.10%p, 2.74%p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만족이 43.8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리더쉽 형성(리더)



지역공동체의 운영자 및 지역리더에 대한 지원 정도의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75%), 보통(25%), 대체로 만족(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후 지원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15%), 보통(26%), 대체로 만족(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후, 지원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이 59.62%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은 각각 0.64%p, 58.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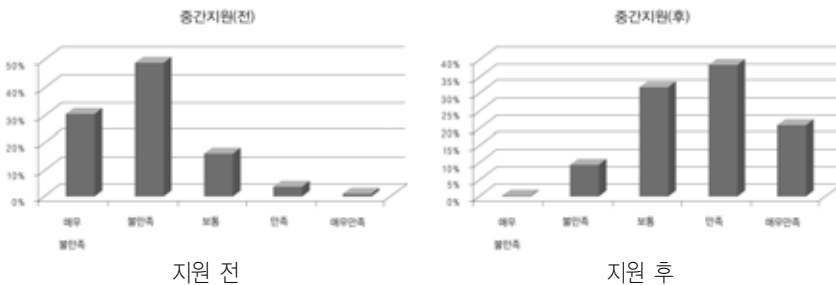
〈그림 4-10〉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리더십 형성(지원)



(5)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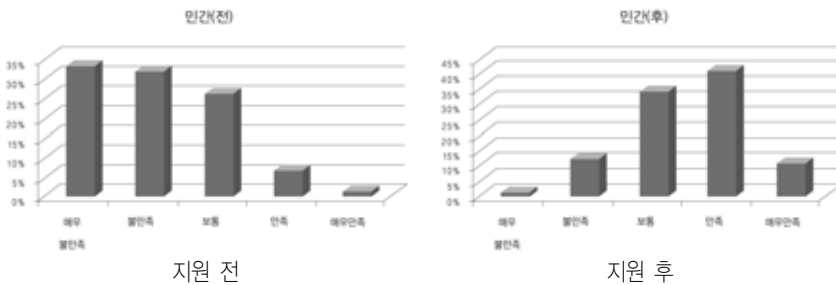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지원항목에서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79%), 보통(16%), 대체로 만족(5%)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원(중간지원)



반면, 지원 후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지원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9%), 보통(32%), 대체로 만족(59%)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족도 상승 변화는 대체로 불만이 69.9%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15.74%p, 54.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만족도 설문결과: 지역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원(민간)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민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 전 대체로 불만(65%), 보통(26%), 대체로 만족(8%)로 나타남으로써, 민간 지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지원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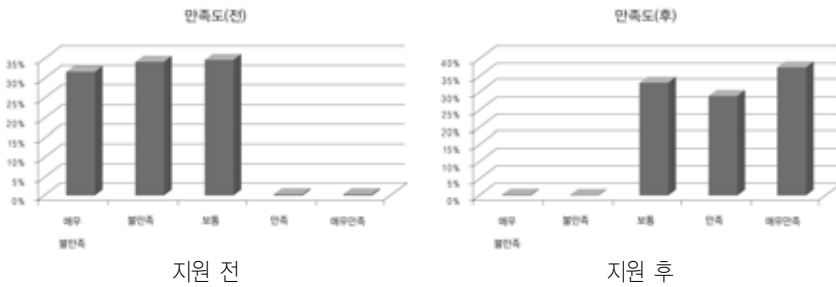
반면, 지원 후 민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14%), 보통(34%), 대체로 만족(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으로 인한 민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대체로 불만이 51.58%p 감소하였으며, 보통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7.86%p, 43.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반적 만족도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지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 이전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65%), 보통(35%), 대체로 만족(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후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0%), 보통(33%), 대체로 만족(67%)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만족도의 변화는 대체로 불만과 보통이 각각 65.41%p, 1.5%p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만족이 66.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만족도 설문결과: 전반적 만족도



〈표 4-3〉 지역공동체 지원 이후의 만족도 변화

(단위 : %, %p)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지원 전·후 차이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체험	90%	8%	2%	5%	42%	52%	-84.22	34.35	49.88
브랜드	100%	0%	0%	0%	41%	59%	-100.0	41.38	58.62
특산품	88%	12%	0%	14%	35%	51%	-74.56	23.31	51.25
단체	69%	16%	16%	3%	21%	76%	-65.72	5.59	60.13
목표	66%	23%	11%	2%	26%	72%	-63.82	2.75	61.07
배려	59%	28%	13%	10%	36%	55%	-49.45	7.51	41.94
대학	43%	43%	14%	7%	21%	71%	-35.71	-21.43	57.14
연구진	38%	33%	29%	2%	19%	79%	-35.71	-14.29	50.00
리더	42%	29%	29%	1%	26%	73%	-41.10	-2.74	43.84
지원	75%	25%	0%	15%	26%	59%	-59.62	0.64	58.97
중·지	79%	16%	5%	9%	32%	59%	-69.90	15.74	54.16
민간	65%	26%	8%	14%	34%	52%	-51.58	7.86	43.72
만족도	65%	35%	0%	0%	33%	67%	-65.41	-1.50	66.92

2.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

지역공동체 구성 분류 및 요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에 대한 정도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설문 응답의 변화, 타 요인의 중요성 증대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타 요인의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만족도 변화는 순서화 로짓(Ordered logit)을 활용한 구성 요인의 만족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 변화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지원 이전의 경우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비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은,

$$(\text{Prob}(Y=1)/(1-\text{Prob}(Y=1))) = \prod_{k=1}^K e^{\beta_k X_k}, \text{Odds}$$

로서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체험, 배려, 대학, 리더, 지원의 영향이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12개 요인에 의한 오드(Odds)가 만족할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화 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할 경우에는 추정된 계수로부터 오드(Odds)를 직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오드(Odds)의 산출은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령/성별 등으로 개개의 요인들을 분할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연령/성별 등에 대한 영향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지역공동체의 영향 요인의 변화에 의한 한계효과의 제시를 추가적으로 산출함으로써, 변화 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제시한다. 주로, 로짓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편의를 위하여 양(+)의 부호만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단계(stepwise)를 활용한 방법은 전체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방식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변수를 총괄적으로 고려한다.

〈표 4-4〉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이전)

구분	Estimate	Odds	Mean	Pr > ChiSq
상수	0	1		
체험	0.3549	1.42604	0.97368	0.1034
브랜드	-0.0731	0.92951	0.15790	0.8162
특산품	-0.1913	0.82588	0.86842	0.3471
단체	-0.3139	0.73059	0.28947	0.2410
목표	-0.0367	0.96397	1.81579	0.8441
배려	0.4594	1.58312	0.34211	0.0475
대학	0.4345	1.54419	0.47368	0.0709
연구진	-0.0385	0.96223	0.60526	0.8136
리더	0.1230	1.13088	1.13158	0.3524
자원	0.1319	1.14099	0.50000	0.5471
중간지원	-0.1130	0.89315	1.42105	0.5857
민간	-0.2304	0.79422	1.89474	0.1382
Pseudo R square			0.69	
AIC			296.034	
SC			301.815	
-2 Log L			292.034	
Somers' D			0.327	
Gamma			0.328	
Tau-a			0.219	
c			0.663	

분석결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이 도출된다.⁸⁾ 주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는 체험, 배려, 대학, 리더,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독립변수의 1계 편미분 값인 $\frac{\partial \text{Prob}(Y=n)}{\partial X_k}$ 로써

$$\frac{\partial}{\partial X_k} \left[F\left(\mu_n - \sum_{k=1}^K \beta_k X_k\right) - F\left(\mu_{n-1} - \sum_{k=1}^K \beta_k X_k\right) \right] = \left[f\left(\mu_n - \sum_{k=1}^K \beta_k X_k\right) - f\left(\mu_{n-1} - \sum_{k=1}^K \beta_k X_k\right) \right] \beta_k$$

에 의해서 산출가능하다.

반면, 브랜드, 특산품, 단체, 목표, 연구진, 중간지원, 민간지원의 경우는 지원 전의 지역공동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브랜드, 특산품, 단체, 목표, 연구진, 중간지원, 민간지원의 지원이 미약한 것을 의미한다.

〈표 4-5〉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이전)

구분	Prob(Y=1) 매우 불만	Prob(Y=2) 대체로 불만	Prob(Y=3) 보통	Prob(Y=4) 대체로 만족	Prob(Y=5) 매우 만족
체험	-9%	2%	-1%	0%	9%
브랜드	2%	0%	0%	0%	-2%
특산품	5%	-1%	0%	1%	-5%
단체	8%	-1%	-1%	1%	-8%
목표	1%	0%	0%	0%	-1%
배려	-11%	2%	-2%	0%	11%
대학	-10%	2%	-2%	0%	10%
연구진	1%	0%	0%	0%	-1%
리더	-3%	0%	0%	0%	3%
지원	-3%	0%	0%	0%	3%
중간지원	3%	0%	0%	0%	-3%
민간	6%	-1%	0%	1%	-6%

지역공동체 지원 이후의 경우에는 지원 이전에 중시되던 체험, 배려, 대학, 리더, 지원 요인이 체험, 목표, 대학, 지원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목표가 보다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되어 지역공동체의 목표 형성이 향후 활성화를 좌우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이후)

구분	Estimate	Odds	Mean	Pr > ChiSq
상수	0	1		
체험	0.1365	1.14625	0.97368	0.3632
브랜드	-0.0712	0.93128	0.15790	0.6305
특산품	-0.1035	0.90168	0.86842	0.3569
단체	-0.0638	0.93819	0.28947	0.6702
목표	0.4479	1.56502	1.81579	0.0290
배려	-0.1460	0.86416	0.34211	0.3509
대학	0.0265	1.02685	0.47368	0.8690
연구진	-0.0345	0.96609	0.60526	0.7873
리더	-0.0202	0.98000	1.13158	0.8646
자원	0.1653	1.17975	0.50000	0.2692
중간지원	-0.0833	0.92008	1.42105	0.5891
민간	-0.0127	0.98738	1.89474	0.9078
Pseudo R square			0.686	
AIC			294.864	
SC			300.645	
-2 Log L			290.864	
Somers' D			0.299	
Gamma			0.301	
Tau-a			0.2	
c			0.65	

반면, 타 요인들에 대한 부(-)의 영향은 전체 변수간의 종속성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호의 영향 정도는 경로 및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logit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편의를 위하여 양(+)의 부호만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stepwise를 활용한 방법은 전체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방식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체 변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지원 이후에는 목표, 대학, 지원에 의한 단위변화가 유발될 경우에 전반적인 지역공동체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할수록, 지원 이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체험으로 인한 중요도 역시 지원 이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체험활동에 의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변화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이후)

구분	Prob(Y=1) 매우 불만	Prob(Y=2) 대체로 불만	Prob(Y=3) 보통	Prob(Y=4) 대체로 만족	Prob(Y=5) 매우 만족
체험	-3%	0%	1%	0%	3%
브랜드	2%	0%	-1%	0%	-2%
특산품	2%	0%	-1%	1%	-2%
단체	1%	0%	0%	0%	-1%
목표	-9%	-2%	2%	0%	9%
배려	3%	0%	-1%	1%	-3%
대학	-1%	0%	0%	0%	1%
연구진	1%	0%	0%	0%	-1%
리더	0%	0%	0%	0%	0%
지원	-4%	-1%	1%	-1%	4%
중간지원	2%	0%	-1%	0%	-2%
민간	0%	0%	0%	0%	0%

제3절 지역공동체 형성 요인적 경로분석

1. 모형 설정

(1) 개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부 형성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요인론적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측정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형성, 배려, 목표 달성, 지원세력의 정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output)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보완하여 다양한 영향력 주체(actor)들의 관계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독일의 재정학자인 A. Wagner는 결정요인에 대한 고려에서 경제적 풍요, 산업화, 인구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활동이 증대되는 원인과 정부성장의 원인으로 소득의 증가, 산업화의 진행, 인구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 Wagner의 이론 구조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실증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요인론적 연구에 의한 단편적인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독립변수의 설정은 지역공동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후로 구분되어 적용하였다. 전체 독립변수는 체험, 브랜드, 특산품, 단체, 목표, 배려, 대학, 연구진, 리더, 지원, 중간지원, 민간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과의 분석 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경로 및 구조 분석상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형 구조로 변형하였다. 특히, 경로분석에서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1차적인 관계만 고려하였다. 이

러한 변수간의 선별에 관한 과정은 경로분석상의 변수간 카이스퀘어(χ^2)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별이 가능하며, 이는 프로그램 에디터(program editor)를 활용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종속변수는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고려하였으며, 정성적인 측면 외의 정량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 향상 정도를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반면, 추가적인 소득 향상의 정도에 대한 불규칙적인 설문 응답으로 인하여 각각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적합도가 높은 만족도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였다.

(2)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인력 및 교육, 정체성, 지원, 리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형성 요인을 요인분석을 이용한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고려하였다. 순서화 로짓모델 및 회귀분석에서는 예측변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어져 예측변수들이 함수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회귀방정식안의 결과변수 값을 예측하지만, 경로분석에서는 변수들간의 연결관계(network of relationship)가 지정되고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경로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등간척도(interval scale)의 수준으로 파악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경로모형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은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고려하였다. 반면 총 12개의 항목에 의한 결정요인의 추출은 항목간 간결하지 못한 변수군의 설정으로 인하여 자칫 변수간 배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5개의 대요인으로 구분된 지역공동체의 영향요인을 각각의 대요인의 항목 간 관계에서 대표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4-14〉 요인분석을 고려할 경우의 영향요인 추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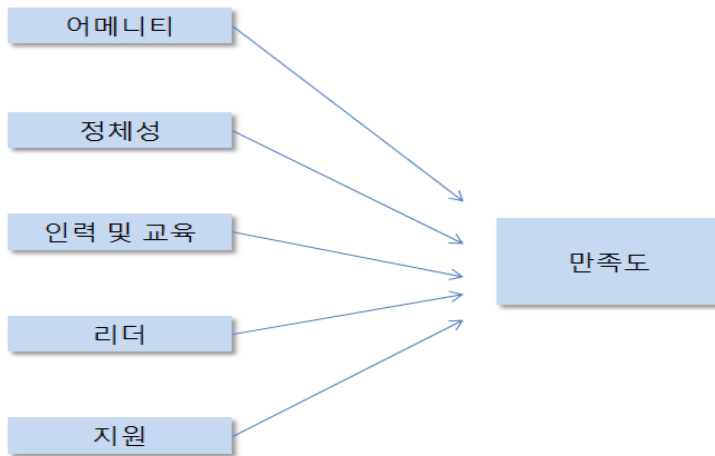


부문간 구성요인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인과관계를 고려한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의 대표 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수군을 이용하여 수렴된 각 부문의 변수들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종속변수의 1차적인 인과관계를 모형화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은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의 고유 테마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유무, 지역공동체의 브랜드화 추진 정도, 지역 주력 상품 또는 특산품의 유무 및 활성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체성은 자생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유무 및 영향 정도, 지역공동체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 지역공동체로 인한 취약계층의 배려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인력 및 교육은 지역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 연계 및 협력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지역대학을 인한 지원과 지역 출신 연구진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리더는 지역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리더의 유무, 또한, 기존 리더의 활동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정부지원과 민간에 의한 민간지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림 4-15〉 분석모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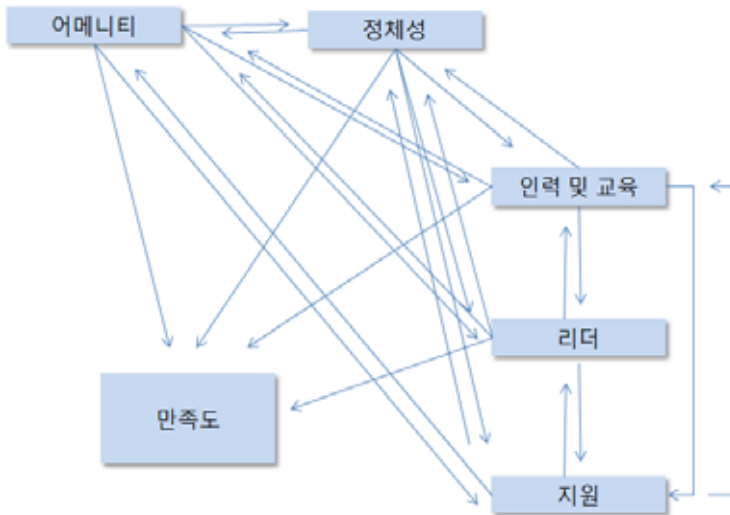


반면 1차적인 분석모형 설정을 통해 수렴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 부문별 구성 요인 간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구성 요인 간 직·간접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수정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정된 분석모형은 설문조사로 조사된 자료의 특성상 일관성이 낮아 전체적인 설문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모형구축을 모색하였다. 통상적으로 경로분석의 적용에서는 수정모형에서는 인관관계가 기본 모형보다는 보다 간결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현상은 일

반적인 것이 아니라, 변수간의 인과성이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 가에 대한 경로 분석상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수정 모형은 인과관계가 간결하다는 주장은 모든 모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4-16〉 영향구조를 고려한 수정된 분석 모형



수정된 경로분석모형으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 간 영향구조를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구성요소들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가정은 전체 요인에 대한 5가지 분류인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은 만족도에 양(+)의 효과가 파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로분석상에서의 formal 한 가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H_0 : 어메니티는 지역공동체 운영의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H_0 : 정체성은 지역공동체 운영의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H_0 : 인력 및 교육은 지역공동체 운영의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H_0 : 리더는 지역공동체 운영의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H_0 : 지원은 지역공동체 운영의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표 4-8〉 수정된 분석모형의 추정 영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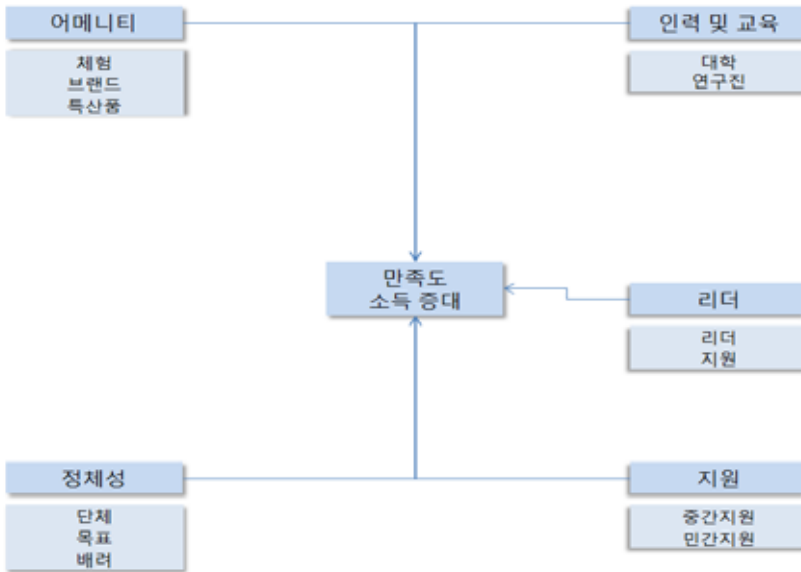
구분	만족도 향상	
	직접효과	간접효과
지역자원	+	+
정체성	+	+
인력 및 교육	+	+
리더	+	+
지원	+	+

2. 변수 생성 및 추출

본 연구에서 고려한 경로분석의 연구모형은 전국 지자체 246개의 특성 중 1차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1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18개 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사전적인 이론 및 문헌을 근거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2차적 요인으로 고려 가능한 영향요인을 요인분석으로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대요인으로 구분을 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별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성 요인을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 5개의 대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4-17〉 영향요인에 대한 설정



3. 분석 절차 및 방법

(1) 분석 절차

전체 지역공동체 중 18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수거된 133부의 설문을 사용한 지역별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경로분석모형과 수정된 경로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설문항목의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과 분할표 분석(cross table analysis)을 수행한다. 이는 각 변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와 함께 χ^2 -test와 t -test로 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의 각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각 요인마다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요인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에 의한 요인회전을 적용하였다.

셋째,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이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모형(path analysis)을 구축하였다. 경로모형은 분석틀에서 제시한 기본 경로모형과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간 관계를 고려한 수정된 경로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133부의 수거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기 구축된 2012년까지의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분석의 적절성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일단의 변수들간의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분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적 관계 설정 후, 설정된 인과적 가설을 토대로 여러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를 특정화하여 설명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경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과적 기본가정(casual assumption)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변수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공변량이 존재하여 한 변수에 체계적인 변화나 차이가 발생하면, 다른 한 변수에도 체계적인 변화나 차이가 동반되어야 한다.

경로모형 설정을 위해서는 또한, 인과적 흐름의 순서(time order)가 전제되어 독립변수로 설정된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로 설정된 변수의 변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들은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 인과적 흐름의 순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적 흐름이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적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효과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른 경로모형의 적합도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9〉 주요 적합도기준별 수용가능 수준

적합도기준	수용가능성 수준	수용가능 설명
χ^2	χ^2 통계표의 임계치	계산된 χ^2 값과 임계치의 비교
GF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AGF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PMR	조사자가 수준을 결정	Σ 와 S 의 근사성을 나타냄
RMSEA	< 0.05	0.05미만이면 적합도 양호
TL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NF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CF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PCFI	0(무적합)-1(완벽한 적합도)	대체모델들의 값을 비교
AIC	0(완벽한적합)-양의값(적합도 불량)	대체모델들의 값을 비교(작을수록 양호)

4. 영향구조 분석

(1) 요인분석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지역공동체 중 18개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설문을 133부 수거하였다. 설문조사 후 유효성이 감소되는 설문을 제외한 최종설문은 133부이며, 설문항목 12개를 활용한 운영자의 의견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정량적으로 필요한 통계지표 30개를 활용하여 설문분석 DB를 구축하였다. 특히, 설문 외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분석시 운영자의 biased 된 의견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자료의 축약목적은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을 통합하였다.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 중 지역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중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기

초 자료로 42개 항목의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상호 연관된 다수개의 다변량 변수들간의 공분산관계로부터 보통 2-3개의 잠재적(latent)이고 가상적(hypothetical)이며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 인자(factor)를 추출해 내는 다변량 분석법이며, 일반적으로 자료의 축약, 기존개념의 확인, 새로운 개념의 탐색, 추후분석에 입력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⁹⁾

분석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어떤 요인들이 어떤 변수들과 가장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수로서 이 값을 제공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면 이는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비율이 된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이상이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가정하였다.

(2) 요인도출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의 경우처럼 전체 고려대상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은 총 42개의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있으나, 요인분석의 특성상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 외의 구성 요인으로 독립변수들을 축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자료의 추출에 사용되는 요인추출 고유값(eigenvalue)을 기본적으로 0.5로 설정하였다. 반면 고유값의 설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분석에서 나타난 스크리도표(scree table)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고유값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성분 번호를 주요 요인(factor)으로 고려하였다.¹⁰⁾

9)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데이터의 양을 줄여 정보를 요약하는 경우, 변수들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요인들을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에서 설명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노형진, 정한열, 2007)

10) 즉,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요인의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인의 개수를 설

또한, 요인분석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정은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s 검정을 사용하였다. 고려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은, 지역자원 요인에 대한 KMO와 Bartlett's 검정은 각각 0.867, 자유도 10개에서 χ^2 이 1,207.319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1% 이내에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요인도출1: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지역자원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구분		검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6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07,319
	자유도	10
	유의확률	.000

정체성요인에 대한 KMO와 Bartlett's 검정은 각각 0.8317, 자유도 10개에서 χ^2 이 955.913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1% 이내에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정체성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구분		검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55.913
	자유도	10
	유의확률	.000

정할 때, 고유값(eigenvalue),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스크리 테스트(scree test), 그리고 적합도 검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흔히 고유값은 1이상, 요인적재량은 0.4이상, 스크리 테스트는 곡선의 모양이 직선으로 퍼지는 곳에서 요인의 개수가 결정된다(강양석, 1996).

인력 및 교육 요인에 대한 KMO와 Bartlett's 검정은 각각 0.828, 자유도 8개에서 χ^2 이 708.887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1% 이내에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구분		검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08.887
	자유도	8
	유의확률	.000

리더 및 지원 요인에 대한 KMO와 Bartlett's 검정은 각각 0.823, 자유도 14개에서 χ^2 이 970.093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1% 이내에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3〉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분석 가능성 검정

구분		검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70.093
	자유도	14
	유의확률	.000

(4) 요인도출2: 요인분석 상관행렬 도출

고려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상관행렬 도출은 지역자원 요인의 특정변수간 상호관계를 통해 잠재적인 구조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요인부하량행렬이나 요인구조행렬의 추정치 등으로부터 요인의 해석을 하는데 직교해(orthogonal solution)의 경우에 요인부하량 행렬은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대하여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나타낼 경우에는 변수들이 어느 요인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요인축을 회전함으로써 최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보통 요인의 회전방식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각회전에는 직각회전 방식인 Varimax, Quartimax, Equimax 등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Varimax를 사용하였다. Varimax 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은 요인들의 각 특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사각회전방식은 요인들간에 독립적인 경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지역자원 요인의 구성 소요인의 성격상 고려에서 제외되었다. 지역자원 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방식을 상관관계로 설정하고, 요인의 추출을 주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을 이용하여 고유값 기준을 1로 설정하였으며, Varimax를 이용한 요인분석과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여 요인 추출을 고유값과 상호 비교하였다.

지역자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상관행렬로 도출되었다.

〈표 4-14〉 요인분석 후 지역자원 요인의 상관행렬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1.000	<u>.648</u>	.474	.431	.283	.384	.564	.474	.569	.494
X2	<u>.648</u>	1.000	.454	.609	.278	.393	.576	.549	.582	.431
X3	.474	.454	1.000	.439	.534	.377	.326	.357	.379	.419
X4	.431	.609	.439	1.000	.334	.313	.599	.552	.591	.595
X5	.283	.278	.534	.334	1.000	.532	.271	.208	.279	.341
X6	.384	.393	.377	.313	.532	1.000	.409	.343	.360	.349
X7	.564	.576	.326	.599	.271	.409	1.000	<u>.788</u>	<u>.783</u>	<u>.664</u>
X8	.474	.549	.357	.552	.208	.343	<u>.788</u>	1.000	<u>.762</u>	<u>.625</u>
X9	.569	.582	.379	.591	.279	.360	<u>.783</u>	<u>.762</u>	1.000	<u>.770</u>
X10	.494	.431	.419	.595	.341	.349	<u>.664</u>	<u>.625</u>	<u>.770</u>	1.000

또한 지역자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자원 요인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각 변수의 초기값과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4-15〉 지역자원 요인의 공통성

구분	초기	추출
1	1.000	.537
2	1.000	.583
3	1.000	.622
4	1.000	.580
5	1.000	.764
6	1.000	.572
7	1.000	.799
8	1.000	.756
9	1.000	.823
10	1.000	.659

정체성 요인의 요인분석은 지역자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기술통계 방식을 상관관계로 설정하고, 요인의 추출을 주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을 이용하여 고유값 기준을 1로 설정하였다.

또한 요인회전을 Varimax를 이용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여 요인 추출을 고유값과 상호 비교하였다.

〈표 4-16〉 요인분석 후 정체성요인의 상관행렬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1.000	.401	.410	<u>.652</u>	.396	.373	.438	.361	.459	.431	.451
X2	.401	1.000	.332	.332	.565	.283	.450	.393	.186	.320	.280
X3	.410	.332	1.000	<u>.559</u>	.312	.235	.264	.197	.519	.267	.497
X4	<u>.652</u>	.332	<u>.559</u>	1.000	.326	.446	.449	.355	<u>.689</u>	.340	.465
X5	.396	.565	.312	.326	1.000	.387	.343	.281	.158	.196	.314
X6	.373	.283	.235	.446	.387	1.000	.424	.332	.425	.314	.387
X7	.438	.450	.264	.449	.343	.424	1.000	<u>.752</u>	.302	.407	.314
X8	.361	.393	.197	.355	.281	.332	<u>.752</u>	1.000	.224	.379	.232
X9	.459	.186	.519	<u>.689</u>	.158	.425	.302	.224	1.000	.281	.448
X10	.431	.320	.267	.340	.196	.314	.407	.379	.281	1.000	<u>.560</u>
X11	.451	.280	.497	.465	.314	.387	.314	.232	.448	<u>.560</u>	1.000

또한 정체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체성요인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각 변수의 초기값과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4-17〉 정체성 요인의 공통성

구분	초기	추출
X1	1.000	.576
X2	1.000	.731
X3	1.000	.623
X4	1.000	.727
X5	1.000	.814
X6	1.000	.399
X7	1.000	.806
X8	1.000	.803
X9	1.000	.717
X10	1.000	.484
X11	1.000	.551

인력 및 교육 요인의 특정변수간 상호관련을 통해 지역자원, 정체성, 리더 및 지원 요인과 동일하게 기술통계 방식을 상관관계로 설정하고, 요인의 추출을 주 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을 이용하여 고유값 기준을 1로 설정하였다.

또한 요인회전을 Varimax를 이용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여 요인 추출을 고유값과 상호 비교하였으며, 인력 및 교육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상관행렬이 도출되었다.

〈표 4-18〉 요인분석 후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상관행렬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1	1.000	<u>.620</u>	<u>.615</u>	.409	.328	.351	.403	.428
X2	<u>.620</u>	1.000	<u>.734</u>	.348	.469	.386	.375	.449
X3	<u>.615</u>	<u>.734</u>	1.000	.483	.389	.418	.487	.405
X4	.409	.348	.483	1.000	.266	.300	.390	.445
X5	.328	.469	.389	.266	1.000	.358	.321	.379
X6	.351	.386	.418	.300	.358	1.000	<u>.723</u>	.517
X7	.403	.375	.487	.390	.321	<u>.723</u>	1.000	<u>.548</u>
X8	.428	.449	.405	.445	.379	.517	<u>.548</u>	1.000

인력 및 교육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력 및 교육 요인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이 도출되었다.

이는 각 변수의 초기값과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4-19〉 인력 및 교육 요인의 공통성

구분	초기	추출
X1	1.000	.666
X2	1.000	.778
X3	1.000	.761
X4	1.000	.392
X5	1.000	.362
X6	1.000	.791
X7	1.000	.803
X8	1.000	.604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분석은 지역자원, 정체성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기술통계 방식을 상관관계로 설정하고, 요인의 추출을 주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을 이용하여 고유값 기준을 1로 설정하였다. 또한 요인회전을 Varimax를 이용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여 요인 추출을 고유값과 상호 비교하였다.

리더 및 지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상관행렬은 다음과 같다.

〈표 4-20〉 요인분석 후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상관행렬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1.000	<u>.510</u>	.444	.387	.394	.261	.317	.190	.236	.280	.225
X2	<u>.510</u>	1.000	.472	.277	.200	.194	.334	.259	.323	.235	.280
X3	.444	.472	1.000	.471	.419	.326	.411	.352	.324	.374	.245
X4	.387	.277	.471	1.000	<u>.822</u>	.325	.288	.275	.147	.344	.307
X5	.394	.200	.419	<u>.822</u>	1.000	.457	.314	.297	.229	.396	.418
X6	.261	.194	.326	.325	.457	1.000	.327	.357	.340	.435	.423
X7	.317	.334	.411	.288	.314	.327	1.000	<u>.674</u>	<u>.588</u>	.445	.386
X8	.190	.259	.352	.275	.297	.357	<u>.674</u>	1.000	<u>.644</u>	.497	.417
X9	.236	.323	.324	.147	.229	.340	<u>.588</u>	<u>.644</u>	1.000	.448	.461
X10	.280	.235	.374	.344	.396	.435	.445	.497	.448	1.000	<u>.566</u>
X11	.225	.280	.245	.307	.418	.423	.386	.417	.461	<u>.566</u>	1.000

또한 리더 및 지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리더 및 지원 요인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각 변수의 초기값과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4-21〉 리더 및 지원 요인의 공통성

구분	초기	추출
X1	1.000	.661
X2	1.000	.725
X3	1.000	.603
X4	1.000	.808
X5	1.000	.862
X6	1.000	.485
X7	1.000	.662
X8	1.000	.715
X9	1.000	.726
X10	1.000	.592
X11	1.000	.556

(5) 요인도출3: 설명된 총분산 도출

지역자원 고려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이 도출되었으며, 지역자원 요인에 대한 공통요인은 2개로 압축이 가능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유치는 각각 5.396과 1.299로 고유값 1을 상회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에서 성분 번호가 2이후에 급감하는 것과 일치하여 고유값 1이상의 값에 대하여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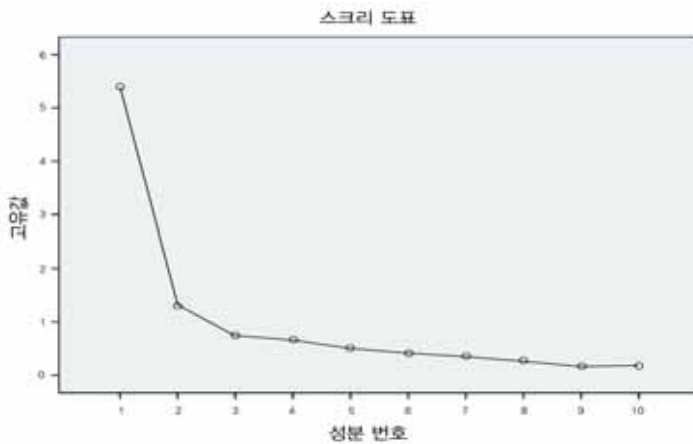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은 성분 2개로 요약이 되며 성분 1과 2는 각각 53.959%, 12.990%로써 전체 누적이 66.950%에 해당한다. 이는 성분 1과 2로 전

체 지역자원 요인의 약 67%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체를 설명하는 누적이 74.489%로 증가하지만 요인의 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나타난다.

〈표 4-22〉 요인분석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5.396	53.959	53.959	5.396	53.959	53.959	4.389	43.888	43.888
2	1.299	12.990	66.950	1.299	12.990	66.950	2.306	23.062	66.950
3	.754	7.540	74.489						
4	.664	6.644	81.133						
5	.526	5.263	86.396						
6	.405	4.046	90.442						
7	.348	3.485	93.927						
8	.261	2.606	96.533						
9	.181	1.814	98.346						
10	.165	1.654	100.000						

〈그림 4-18〉 스크리 도표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 추출



요인분석에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자원 요인의 구성 요인이 요인1과 요인2를 설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사용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 추출은 요인1과 요인2로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브랜드, 특산물로 특성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2는 지역자원 요인 중 주로 체험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수들의 성격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요인분석에 의한 지역자원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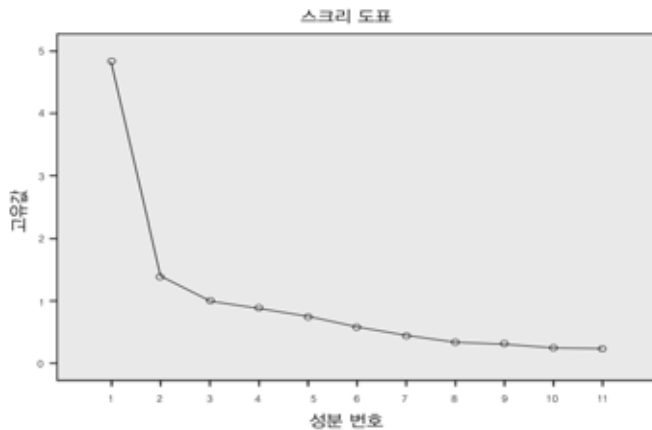
구분	요인1	요인2
1	브랜드	체험
2	특산물	

정체성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이 도출되었으며, 정체성요인에 대한 공통요인은 3개로 압축이 가능하다. 고유치는 각각 4.837, 1.385, 1.010으로 고유값 1을 상회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에서 성분 번호가 3이후에 급감하는 것과 일치하여 고유값 1이상의 값에 대하여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 요인의 요인은 성분 3개로 요약이 되며, 성분 1, 2, 3은 각각 43.972%, 12.588%, 9.179%로써 전체 누적이 65.738%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성분 1, 2, 3으로 전체 정체성 요인의 약 66%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4〉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4.837	43.972	43.972	4.837	43.972	43.972	3.167	28.789	28.789
2	1.385	12.588	56.559	1.385	12.588	56.559	2.300	20.908	49.696
3	1.010	9.179	65.738	1.010	9.179	65.738	1.765	16.042	65.738
4	.875	7.958	73.696						
5	.748	6.799	80.495						
6	.576	5.236	85.731						
7	.438	3.978	89.709						
8	.338	3.068	92.777						
9	.317	2.886	95.663						
10	.247	2.241	97.904						
11	.231	2.096	100.000						

〈그림 4-19〉 스크리 도표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요인 추출



요인분석에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체성 요인의 구성 요인이 요인1, 요인2, 요인3을 설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표 4-25〉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성분행렬

구분	회전 전의 성분행렬			회전 후의 성분행렬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1	.752	-.096	.039	.606	.335	.310
2	.611	.401	.444	.152	.307	.783
3	.633	-.409	.235	.735	-.030	.287
4	.789	-.321	-.032	.791	.266	.176
5	.572	.297	.631	.193	.114	.874
6	.629	.029	-.046	.433	.391	.243
7	.707	.463	-.303	.192	.841	.250
8	.614	.536	-.372	.076	.873	.186
9	.656	-.517	-.138	.834	.141	-.048
10	.613	.052	-.324	.411	.561	.022
11	.682	-.290	-.036	.693	.228	.139

따라서, 요인분석을 사용한 정체성 요인의 요인 추출은 요인1, 요인2, 요인3으로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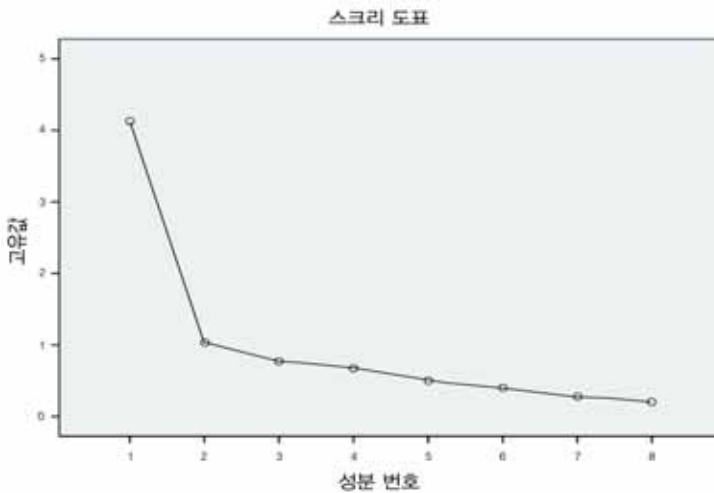
〈표 4-26〉 요인분석에 의한 정체성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1	단체	목표	배려

〈표 4-27〉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4.117	51.458	51.458	4.117	51.458	51.458	2.827	35.338	35.338
2	1.041	13.015	64.472	1.041	13.015	64.472	2.331	29.134	64.472
3	.779	9.734	74.206						
4	.677	8.464	82.670						
5	.503	6.286	88.956						
6	.397	4.966	93.923						
7	.278	3.477	97.399						
8	.208	2.601	100.000						

〈그림 4-20〉 스크리 도표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 추출



인력 및 교육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이 도출되었으며, 인력 및 교육 요인에 대한 공통요인은 2개로 압축이 가능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유치는 각각 4.117과 1.041로 고유값 1을 상회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에서 성분 번호가 2이후에 급감하는 것과 일치하여 고유값 1이상의 값에 대하여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은 성분 2개로 요약이 되며 성분 1과 2는 각각 51.458%, 13.015%로써 전체 누적이 64.472%에 해당한다. 이는 성분 1과 2로 전체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약 64%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에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인력 및 교육 요인의 구성 요인이 요인1과 요인2를 설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표 4-28〉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성분행렬

구분	회전 전의 성분행렬		회전 후의 성분행렬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734	-.358	.791	.202
2	.776	-.419	.863	.184
3	.804	-.338	.832	.264
4	.623	-.058	.513	.359
5	.595	-.094	.514	.313
6	.709	.537	.192	.868
7	.745	.498	.246	.862
8	.727	.275	.376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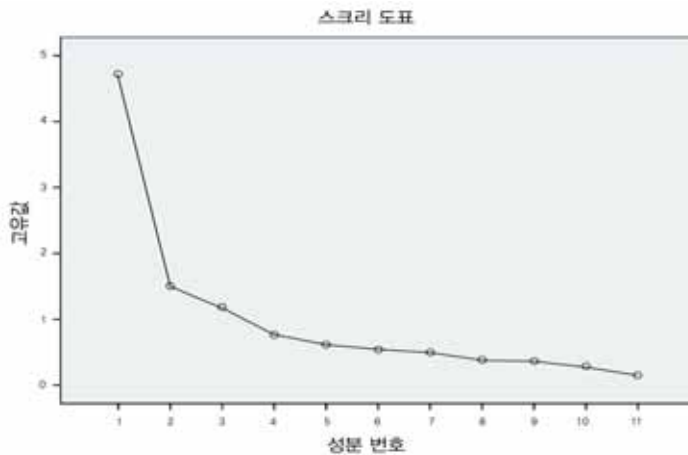
〈표 4-29〉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1	대학	연구진

〈표 4-30〉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4.729	42.993	42.993	4.729	42.993	42.993	3.045	27.681	27.681
2	1.499	13.630	56.623	1.499	13.630	56.623	2.322	21.109	48.790
3	1.169	10.626	67.249	1.169	10.626	67.249	2.030	18.459	67.249
4	.771	7.007	74.256						
5	.616	5.600	79.855						
6	.542	4.926	84.781						
7	.498	4.529	89.311						
8	.386	3.508	92.818						
9	.358	3.256	96.074						
10	.285	2.591	98.665						
11	.147	1.335	100.000						

〈그림 4-21〉 스크리 도표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 추출



리더 및 지원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분산이 도출되었으며, 공통요인은 3개로 압축이 가능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유치는 각각 4.729, 1.499, 1.169으로 고유값 1을 상회하며, 이는 스크리 도표에서 성분 번호가 3이후에 급감하는 것과 일치하여 고유값 1이상의 값에 대하여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은 성분 3개로 요약이 되며, 성분 1, 2, 3은 각각 42.993%, 13.630%, 10.626%로써 전체 누적이 67.249%에 해당한다. 이는 성분 1, 2, 3으로 전체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약 67%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에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리더 및 지원 요인의 구성 요인이 요인1, 요인2, 요인3으로 설정된다.

〈표 4-31〉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성분행렬

구분	회전 전의 성분행렬			회전 후의 성분행렬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1	.569	.385	.435	.080	.276	.761
2	.545	.149	.638	.215	.002	.824
3	.667	.257	.304	.251	.331	.656
4	.643	.579	-.245	.051	.837	.325
5	.689	.493	-.381	.157	.892	.207
6	.616	.009	-.325	.448	.532	.039
7	.718	-.352	.150	.736	.089	.334
8	.705	-.468	-.012	.824	.109	.157
9	.667	-.518	.113	.823	-.016	.220
10	.709	-.187	-.233	.645	.410	.085
11	.662	-.193	-.283	.622	.411	.021

〈표 4-32〉 요인분석에 의한 리더 및 지원 요인의 요인추출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1	중간지원	민간지원	리더

5. 영향구조 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설정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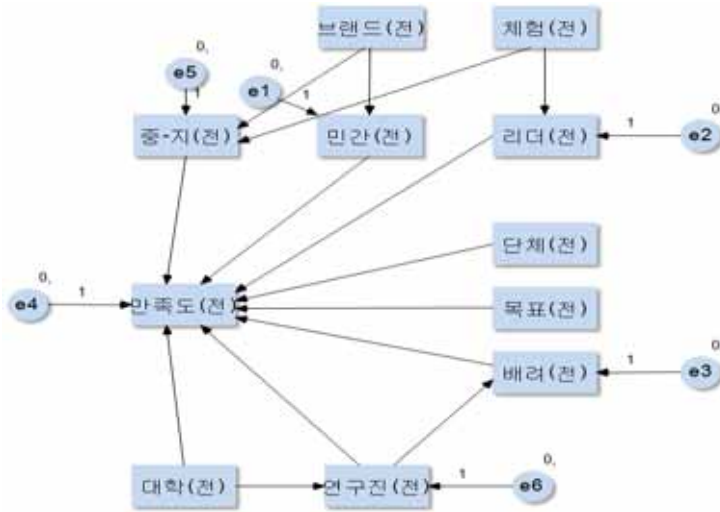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요인은 경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은 총 42개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후 작성된 경로모형을 활용한다. 요인분석에 의해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및 지원 요인에서 추출한 총 10개의 요인을 고려한 경로모형은 다음에서 제시된 그림들과 같다.

지역공동체에 관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및 지원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전체 구성요인인 42개의 요인에 대해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유의한 결과를 얻는데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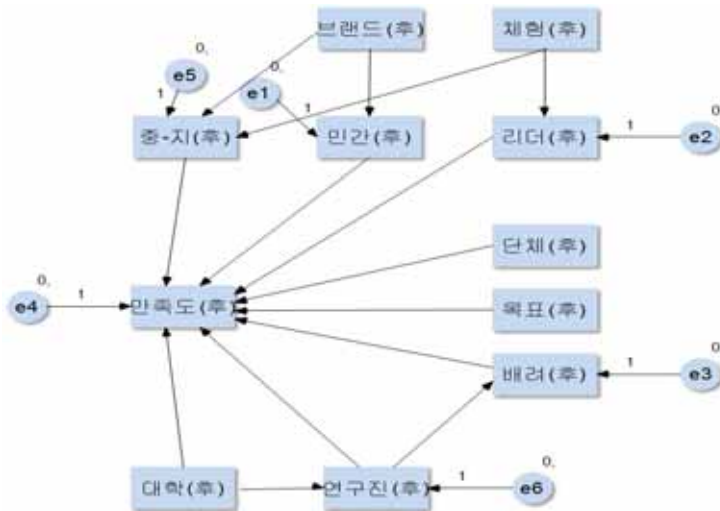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인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해 경로모형을 시행하였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본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지원 전에는 브랜드, 중앙 및 지방지원, 민간지원, 단체, 목표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2〉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기본 경로모형(자원 전)



〈그림 4-23〉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기본 경로모형(자원 후)



〈표 4-33〉 요인분석에 대한 기본 경로방정식 결과(지원 전)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대학(전) → 연구진(전)	0.36	0.103	4.435	***
브랜드(전) → 민간(전)	-0.116	0.17	-1.341	0.18
체험(전) → 리더(전)	0.211	0.138	2.484	0.013
연구진(전) → 배려(전)	0.209	0.069	2.454	0.014
브랜드(전) → 중지(전)	0.095	0.129	1.222	0.222
체험(전) → 중지(전)	0.435	0.085	5.589	***
중지(전) → 만족도(전)	-0.065	0.062	-0.834	0.404
민간(전) → 만족도(전)	-0.131	0.052	-1.682	0.092
리더(전) → 만족도(전)	0.124	0.042	1.581	0.114
단체(전) → 만족도(전)	-0.208	0.064	-2.672	0.008
목표(전) → 만족도(전)	-0.016	0.063	-0.2	0.841
배려(전) → 만족도(전)	0.299	0.059	3.751	***
대학(전) → 만족도(전)	0.12	0.064	1.434	0.151
연구진(전) → 만족도(전)	0.044	0.051	0.516	0.606

반면, 지원 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본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브랜드, 중앙 및 지방지원, 민간지원, 단체, 배려, 목표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원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요인분석에 대한 기본 경로방정식 결과(지원 후)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대학(후) → 연구진(후)	0.383	0.096	4.759	***
브랜드(후) → 민간(후)	-0.187	0.101	-2.182	0.029
체험(후) → 리더(후)	0.251	0.097	2.976	0.003
연구진(후) → 배려(후)	0.047	0.079	0.541	0.588
브랜드(후) → 중재(후)	0.044	0.077	0.61	0.542
체험(후) → 중재(후)	0.552	0.068	7.613	***
중재(후) → 만족도(후)	-0.088	0.043	-1.054	0.292
민간(후) → 만족도(후)	-0.025	0.038	-0.305	0.76
리더(후) → 만족도(후)	0.054	0.035	0.647	0.517
단체(후) → 만족도(후)	-0.099	0.038	-1.191	0.234
목표(후) → 만족도(후)	0.233	0.071	2.815	0.005
배려(후) → 만족도(후)	-0.13	0.04	-1.569	0.117
대학(후) → 만족도(후)	-0.07	0.047	-0.778	0.437
연구진(후) → 만족도(후)	0.047	0.039	0.529	0.597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 및 후에 대한 각각의 결과에 대한 검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전보다는 지원 후의 적합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비교기준		수용기준	지원 전	지원 후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χ^2	최대값	150.4	174.3
		p값	$p < 0.05$	0.000	0.000
	증분적합지수	NFI	≥ 0.9	0.937	0.938
		CFI	최대값	0.943	0.943
	간명적합지수	AIC	최소값	208.3	232.2
		PCFI	≥ 0.9	0.938	0.938
		PNFI	≥ 0.9	0.934	0.934
		RMSEA	< 0.05	0.095	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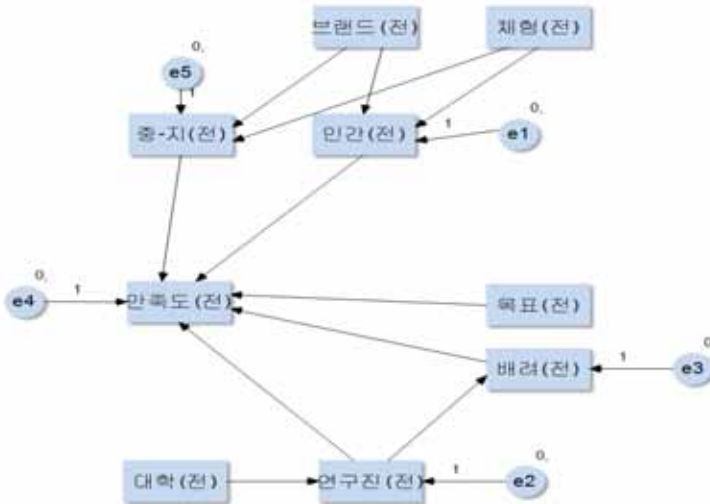
(2) 수정 모형 설정 및 결과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및 지원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대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인하여 전체 42개의 구성요인을 10개로 압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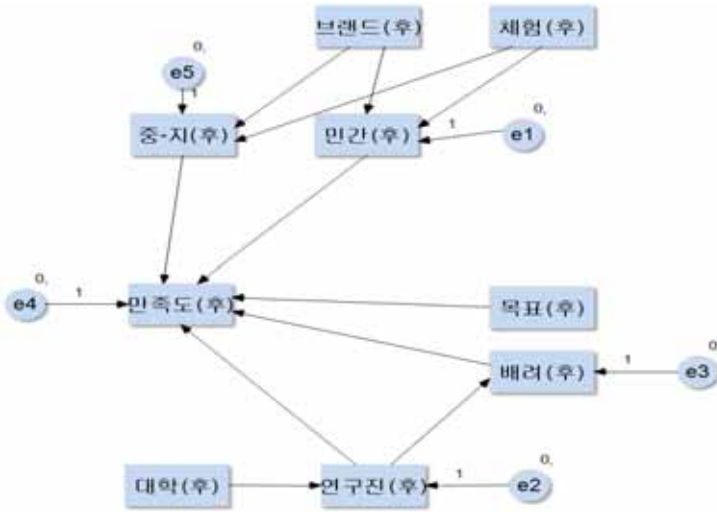
또한 압축된 요인을 사용하여 기본 경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기본 경로모형 구축 및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기존 42개의 요인을 고려한 경로모형 보다는 전체 모형의 간결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으나, 개별 관측변수 측면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본 경로모형에서 유의성이 낮은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수정된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4-24〉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구조(지원 전)



〈그림 4-25〉 지역공동체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구조(지원 후)



수정된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배려 및 목표로 나타났다. 지원 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은 배려(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역공동체 공동의 목적을 주는 요인이 보다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출신 연구진에 의한 인력 및 교육 측면의 연구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요인들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의 지원 전의 만족도 향상에는 연구진에 의한 인력 및 교육으로 배양된 취약계층의 배려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6〉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전)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대학(전) → 연구진(전)	0.36	0.103	4.435	***
브랜드(전) → 민간(전)	-0.141	0.164	-1.704	0.088
연구진(전) → 배려(전)	0.209	0.069	2.454	0.014
체험(전) → 민간(전)	0.266	0.107	3.205	0.001
브랜드(전) → 중지(전)	0.095	0.129	1.222	0.222
체험(전) → 중지(전)	0.435	0.085	5.589	***
중지(전) → 만족도(전)	-0.08	0.063	-0.963	0.335
민간(전) → 만족도(전)	-0.161	0.053	-1.928	0.054
목표(전) → 만족도(전)	0.003	0.064	0.041	0.967
배려(전) → 만족도(전)	0.212	0.06	2.49	0.013
연구진(전) → 만족도(전)	0.06	0.049	0.71	0.478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수정된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원 이후의 지역공동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목표의 설정은 타 요인에 의한 영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모형상에서 목표에 대한 인과를 설정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적합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목표는 관측변수 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체적인 영향력 외에 증가되는 자유도에 의한 것으로써, 추가적인 변수의 고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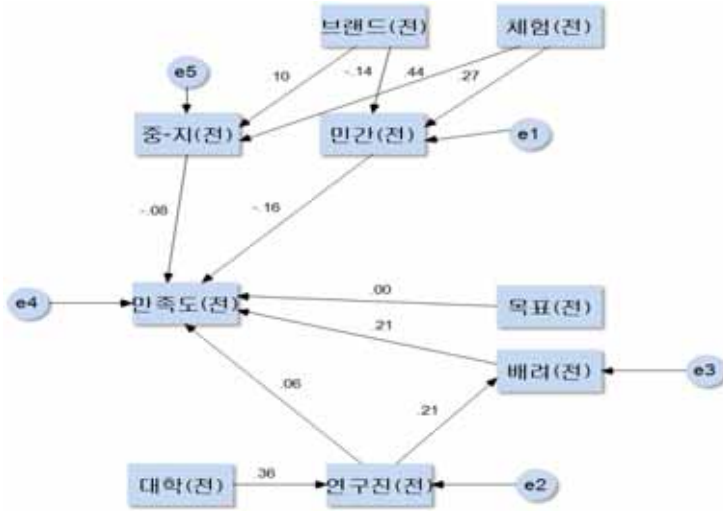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대학(후)	→ 연구진(후)	0.383	0.096	4.759	***
브랜드(후)	→ 민간(후)	-0.233	0.099	-2.796	0.005
연구진(후)	→ 배려(후)	0.047	0.079	0.541	0.588
체험(후)	→ 민간(후)	0.181	0.087	2.173	0.03
브랜드(후)	→ 중지(후)	0.044	0.077	0.61	0.542
체험(후)	→ 중지(후)	0.552	0.068	7.613	***
중지(후)	→ 만족도(후)	-0.036	0.043	-0.43	0.667
민간(후)	→ 만족도(후)	-0.044	0.038	-0.523	0.601
목표(후)	→ 만족도(후)	0.216	0.072	2.604	0.009
배려(후)	→ 만족도(후)	-0.21	0.04	-2.526	0.012
연구진(후)	→ 만족도(후)	0.006	0.037	0.075	0.94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유발시키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구분을 실시한 결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전의 경우에는 연구진과 대학에 의한 인력 및 교육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험으로 인한 만족도의 감소는 체험으로 인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치가 높음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체험활동은 독자적인 영향요인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간지원은 체험요인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민간에 의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에 의하여 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자원 전)



〈표 4-38〉 수정된 경로모형의 효과분석(지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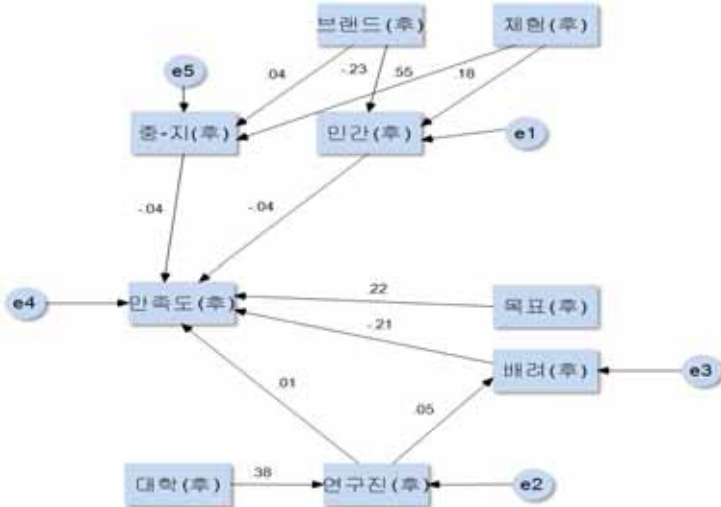
구분		연구진(전)	배려(전)	민간(전)	중지(전)	만족도(전)
총 효과	대학(전)	0.36	0.075	0	0	0.038
	체험(전)	0	0	0.266	0.435	-0.078
	연구진(전)	0	0.209	0	0	0.104
	브랜드(전)	0	0	-0.141	0.095	0.015
	배려(전)	0	0	0	0	0.212
	목표(전)	0	0	0	0	0.003
	민간(전)	0	0	0	0	-0.161
	중지(전)	0	0	0	0	-0.08
직접 효과	대학(전)	0.36	0	0	0	0
	체험(전)	0	0	0.266	0.435	0
	연구진(전)	0	0.209	0	0	0.06
	브랜드(전)	0	0	-0.141	0.095	0
	배려(전)	0	0	0	0	0.212
	목표(전)	0	0	0	0	0.003
	민간(전)	0	0	0	0	-0.161
	중지(전)	0	0	0	0	-0.08
간접 효과	대학(전)	0	0.075	0	0	0.038
	체험(전)	0	0	0	0	-0.078
	연구진(전)	0	0	0	0	0.044
	브랜드(전)	0	0	0	0	0.015
	배려(전)	0	0	0	0	0
	목표(전)	0	0	0	0	0
	민간(전)	0	0	0	0	0
	중지(전)	0	0	0	0	0

지원 후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목표의 설정과 브랜드의 유무 및 특성화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민간지원,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지원은 직접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파생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과 연구진을 통한 인력 및 교육, 체험을 통한 지역자원의 향상은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간접적인 지원 외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영향요인의 수정된 경로모형 결과(지원 후)



〈표 4-39〉 수정된 경로모형의 효과분석(지원 후)

구분		연구진(후)	배려(후)	민간(후)	중지(후)	만족도(후)
총 효과	대학(후)	0,383	0,018	0	0	-0,001
	체험(후)	0	0	0,181	0,552	-0,028
	연구진(후)	0	0,047	0	0	-0,004
	브랜드(후)	0	0	-0,233	0,044	0,009
	배려(후)	0	0	0	0	-0,21
	목표(후)	0	0	0	0	0,216
	민간(후)	0	0	0	0	-0,044
	중지(후)	0	0	0	0	-0,036
직접 효과	대학(후)	0,383	0	0	0	0
	체험(후)	0	0	0,181	0,552	0
	연구진(후)	0	0,047	0	0	0,006
	브랜드(후)	0	0	-0,233	0,044	0
	배려(후)	0	0	0	0	-0,21
	목표(후)	0	0	0	0	0,216
	민간(후)	0	0	0	0	-0,044
	중지(후)	0	0	0	0	-0,036
간접 효과	대학(후)	0	0,018	0	0	-0,001
	체험(후)	0	0	0	0	-0,028
	연구진(후)	0	0	0	0	-0,01
	브랜드(후)	0	0	0	0	0,009
	배려(후)	0	0	0	0	0
	목표(후)	0	0	0	0	0
	민간(후)	0	0	0	0	0
	중지(후)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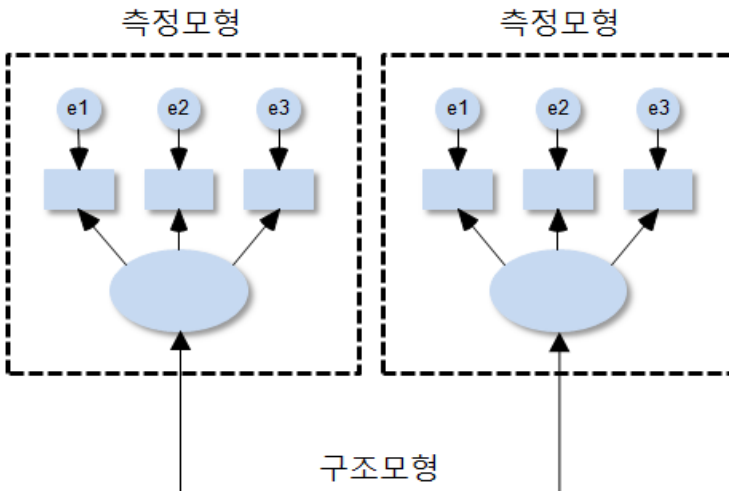
제4절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

1. 모형 개요 및 설정

(1) 모형 개요

기존 순서화 로짓모형과 경로모형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출 결과는 개별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 요인들에 대한 추출을 시행한다. 순서화 로짓모형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의 변화 정도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림 4-28〉 구조방정식 모형의 설정



요인분석을 적용한 경로모형은 변수들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출을 시행한다. 반면 요인 및 경로분석에서 도출된 변수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축된 구조방

정식은 기존 구조방정식 구축을 위해 선별되어야하는 변수의 선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구조방정식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며,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의 결합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잠재변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기존 경로분석에서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각각의 부문에 대한 특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42개의 독립변수를 요인분석으로 고려함으로써 대표 변수의 추출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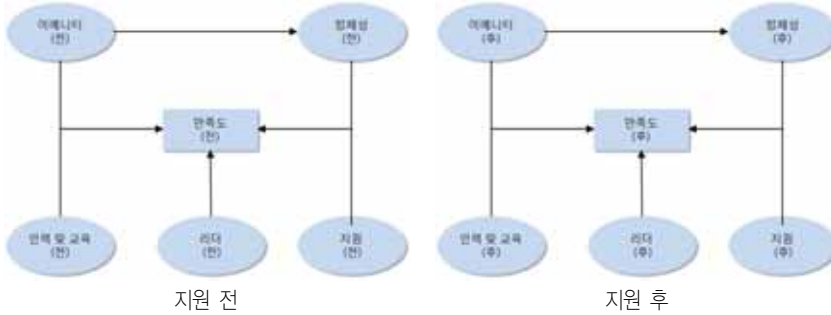
반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모형의 설정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및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에 대한 독립변수간, 다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분석에서 시행되었던 관측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개개의 고려 및 모형의 적합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요인들에 대한 추출 이후의 사후 모형의 설정으로 모형 선택(model selection)이 이루어진 반면, 구조방정식을 활용함으로써 잠재변수인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모든 관측변수의 고려로 지역공동체의 구성 요인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인력 및 교육, 정체성, 지원, 리더에 대한 운영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확인적 요인과 경로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최적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경로모형에서의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추출은 가설설정 및 적합도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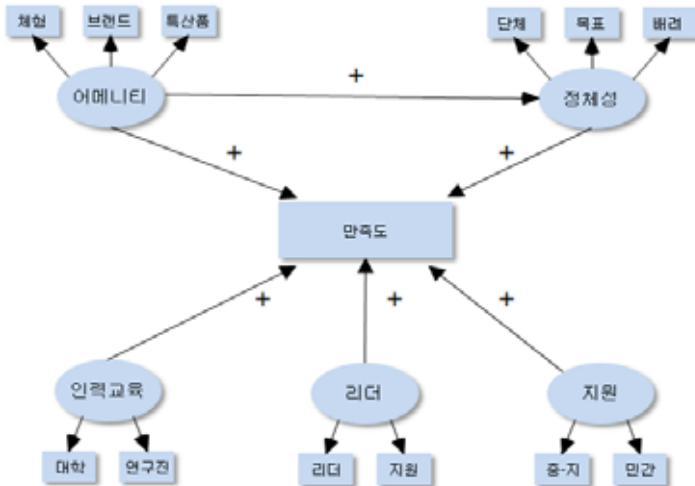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존 통계 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12개의 지역공동체 구성 항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행되지 못하여, 전체 요인들과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실시하였다. 특히, 12개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인에 대한 5개의 잠재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도출에 모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29〉 구조방정식 영향요인 설정 방안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수의 도출을 위해서는 전체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문간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상호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전제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의 잠재변수로 도출이 가능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은 지원 전보다는 지원 후의 양(+)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림 4-30〉 구조방정식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를 고려한 가설 설정



2. 영향구조 설정 및 분석

(1) 모형 설정 및 분석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출을 구조방정식을 구축함으로써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과 후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도출하였으며, 지원 전과 후의 인과관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에 대한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측변수는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운영 측면에서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잠재변수 중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단체(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 목표(공동의 목적), 배려(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혁신적 지역리더)와 지원(리더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 리더, 대학(지역대학의 유무 및 연계 정도)과 연구진(지역출신 연구진의 도움)으로 구성된 인력 및 교육이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는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구조방정식 결과(지원 전)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지역자원 → 정체성(전)	0.194	0.282	1.736	0.083
지역자원 → 체험(전)	0.307			
지역자원 → 브랜드(전)	0.368	0.287	2.736	0.006
지역자원 → 특산품(전)	0.952	1.84	1.663	0.096
정체성 → 단체(전)	0.736			
정체성 → 목표(전)	0.39	0.122	4.427	***
정체성 → 배려(전)	0.976	0.265	5.506	***
인력교육 → 연구진(전)	0.322			
인력교육 → 대학(전)	1.12	7.135	0.385	0.7
리더 → 지원(전)	0.621			
리더 → 리더(전)	0.773	1.716	1.225	0.22
지원 → 민간(전)	0.916			
지원 → 중지(전)	0.35	0.476	0.681	0.496
정체성 → 만족도(전)	0.181	0.093	2.033	0.042
인력교육 → 만족도(전)	0.094	0.137	1.212	0.226
리더 → 만족도(전)	0.156	0.15	1.416	0.157
지원 → 만족도(전)	-0.156	0.165	-0.653	0.514
지역자원 → 만족도(전)	-0.059	0.242	-0.65	0.516

반면, 체험(고유의 테마와 체험프로그램), 브랜드(브랜드화 추진 정도), 특산품(지역주력 상품 및 특산품)으로 구성된 지역 지역자원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민간에 의한 지원 및 자문은 지역공동체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 지역자원, 중앙 및 지방의 지원의 추가적인 지원 노력이 부족하고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를 증

가시키는 구성요인으로는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과 지역자원에 대한 영향은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원 전에는 더더욱 중앙 및 지방의 지원, 민간에 의한 지원,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후의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출을 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지역리더와 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 브랜드, 특산품에 대한 지역 지역 자원과 중앙 및 지방의 지원, 민간의 지원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에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던 지역공동체의 단체, 목표, 배려에 관한 정체성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학 및 연구진에 대한 인력 및 교육 부분이 부가적으로 필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공동체의 요구 및 수요에 충족하는 지원이 아닌 기본적인 지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 전·후의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모든 항목에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중 리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운영 만족도만 절대량은 감소하였지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리더를 제외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지원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보다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구조방정식 결과(지원 후)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지역자원 → 정체성(후)	0,373	0,227	1,928	0,054
지역자원 → 체험(후)	0,447			
지역자원 → 브랜드(후)	0,635	0,351	3,566	***
지역자원 → 특산품(후)	0,619	0,401	3,556	***
정체성 → 단체(후)	0,503			
정체성 → 목표(후)	0,231	0,07	3,479	***
정체성 → 배려(후)	1,317	0,875	2,817	0,005
인력교육 → 연구진(후)	0,288			
인력교육 → 대학(후)	1,33	36,988	0,105	0,917
리더 → 지원(후)	1,31			
리더 → 리더(후)	0,454	0,725	0,594	0,553
지원 → 민간(후)	2,628			
지원 → 중지(후)	0,155	2,529	0,021	0,983
정체성 → 만족도(후)	-0,029	0,06	-0,442	0,658
인력교육 → 만족도(후)	-0,029	0,097	-0,453	0,651
리더 → 만족도(후)	0,095	0,073	0,503	0,615
지원 → 만족도(후)	-0,011	0,095	-0,021	0,984
지역자원 → 만족도(후)	-0,162	0,131	-1,303	0,193

(2) 모형 검정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합지수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보다는 지원 후의 적합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동체 모형 형성에 대한 전체 적합도를 의미하는 χ^2 가 0.01% 이내에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형에 대한 신뢰도는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동체 지원 전·후의 구조방정식의 구축은 간명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의 일부 지수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성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MSEA는 10% 이내, CFI는 이상적인 검정 기준인 0.9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지역공동체의 지원 전·후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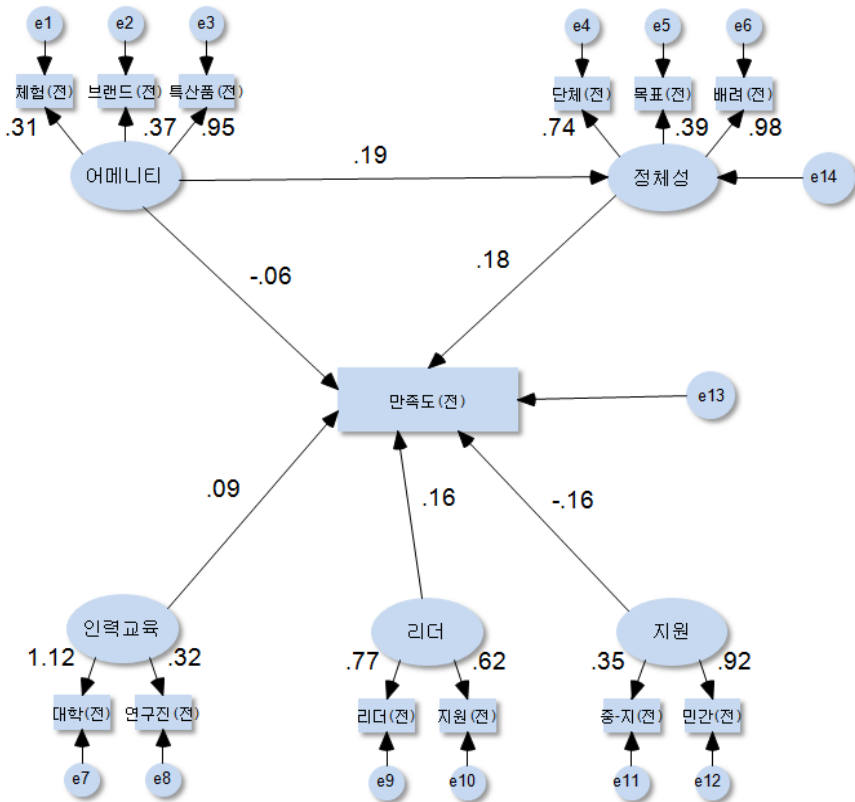
〈표 4-42〉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정

비교기준		수용기준	지원 전	지원 후
절대적합지수	χ^2	최대값	291.5	353.8
	p값	p<0.05	0.000	0.000
증분적합지수	NFI	>=0.9	0.940	0.926
	CFI	최대값	0.877	0.854
간명적합지수	AIC	최소값	379,503	441,808
	PCFI	>=0.9	0.967	0.949
	PNFI	>=0.9	0.939	0.928
	RMSEA	<=0.05	0.071	0.093

(3) 지역공동체의 효과 분석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내 관측변수들을 고려한 경우,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총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지역자원, 중앙 및 지방, 민간에 의한 지원 중 지역자원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은 지역 정체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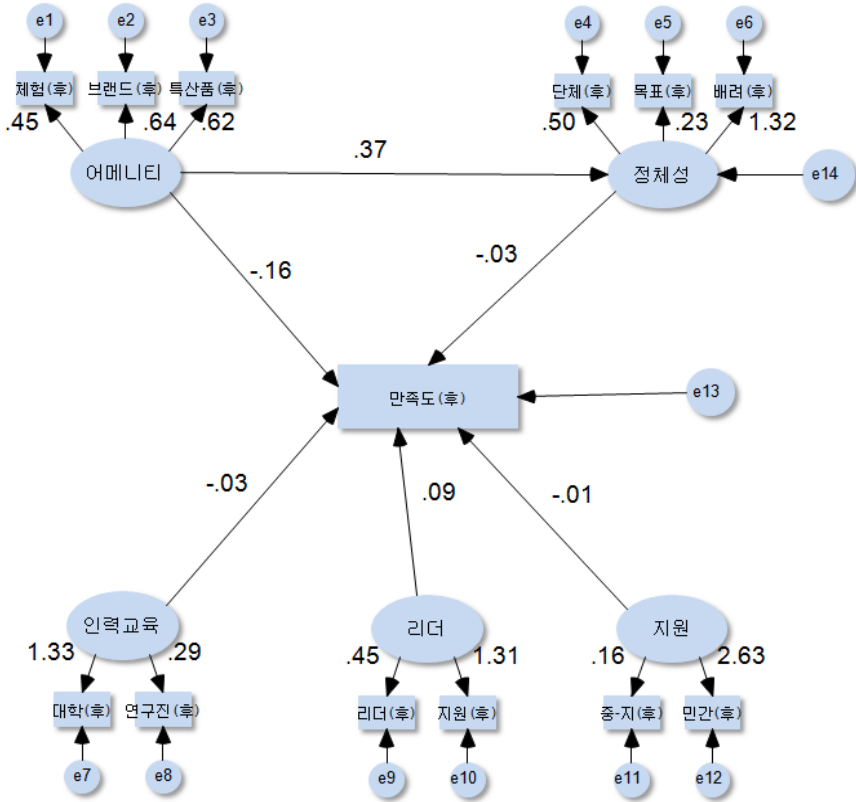
〈그림 4-31〉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영향 분석(자원 전)



반면, 지역 지역자원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에는 두 잠재요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에는 리더에 의한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를 제외한 지역자원, 지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 효과가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보다 지원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영향 분석(지원 후)



〈표 4-43〉 구조방정식의 효과분석(자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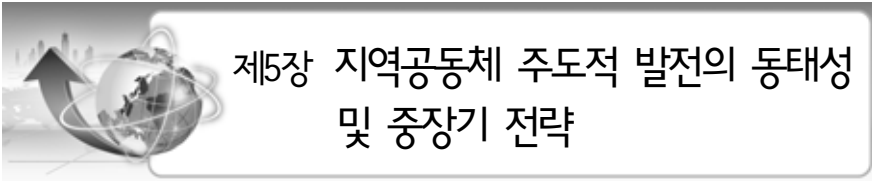
구분		정체성 (전)	만족도 (전)	중지 (전)	민간 (전)	리더 (전)	지원 (전)	대학 (전)
총효과	리더	0	0.156	0	0	0.773	0.621	0
	인력교육	0	0.094	0	0	0	0	1.12
	지역자원	0.194	-0.024	0	0	0	0	0
	지원	0	-0.156	0.35	0.916	0	0	0
	정체성	0	0.181	0	0	0	0	0
직접효과	리더	0	0.156	0	0	0.773	0.621	0
	인력교육	0	0.094	0	0	0	0	1.12
	지역자원	0.194	-0.059	0	0	0	0	0
	지원	0	-0.156	0.35	0.916	0	0	0
	정체성	0	0.181	0	0	0	0	0
간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	0	0	0	0	0	0
	지역자원	0	0.035	0	0	0	0	0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	0	0	0	0	0

구분		연구진 (전)	배려 (전)	목표 (전)	단체 (전)	특산품 (전)	브랜드 (전)	체험 (전)
총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322	0	0	0	0	0	0
	지역자원	0	0.19	0.076	0.143	0.952	0.368	0.307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976	0.39	0.736	0	0	0
직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322	0	0	0	0	0	0
	지역자원	0	0	0	0	0.952	0.368	0.307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976	0.39	0.736	0	0	0
간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	0	0	0	0	0	0
	지역자원	0	0.19	0.076	0.143	0	0	0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	0	0	0	0	0

〈표 4-44〉 구조방정식의 효과분석(지원 후)

구분		정체성 (후)	만족도 (후)	중지 (후)	민간 (후)	리더 (후)	지원 (후)	대학 (후)
총효과	리더	0	0,095	0	0	0,454	1,31	0
	인력교육	0	-0,029	0	0	0	0	1,33
	지역자원	0,373	-0,173	0	0	0	0	0
	지원	0	-0,011	0,155	2,628	0	0	0
	정체성	0	-0,029	0	0	0	0	0
직접효과	리더	0	0,095	0	0	0,454	1,31	0
	인력교육	0	-0,029	0	0	0	0	1,33
	지역자원	0,373	-0,162	0	0	0	0	0
	지원	0	-0,011	0,155	2,628	0	0	0
	정체성	0	-0,029	0	0	0	0	0
간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	0	0	0	0	0	0
	지역자원	0	-0,011	0	0	0	0	0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	0	0	0	0	0

구분		연구진 (후)	배려 (후)	목표 (후)	단체 (후)	특산품 (후)	브랜드 (후)	체험 (후)
총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288	0	0	0	0	0	0
	지역자원	0	0,492	0,086	0,188	0,619	0,635	0,447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1,317	0,231	0,503	0	0	0
직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288	0	0	0	0	0	0
	지역자원	0	0	0	0	0,619	0,635	0,447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1,317	0,231	0,503	0	0	0
간접효과	리더	0	0	0	0	0	0	0
	인력교육	0	0	0	0	0	0	0
	지역자원	0	0,492	0,086	0,188	0	0	0
	지원	0	0	0	0	0	0	0
	정체성	0	0	0	0	0	0	0



제5장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성 및 중장기 전략

제1절 개요 및 분석방법론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특성(dynamics)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3장의 사례분석 및 4장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각 사례들로부터 연성 시스템 다이내믹스(Soft System Dynamics) 접근법에 의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장기적 발전과정을 감안한 육성전략의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1960년대 미국 MIT의 Sloan School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거듭해 온 방법론으로서, 문태훈(2002)은 이를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준거틀(“framework”)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D)는 연성SD(軟性, Soft SD) 및 경성SD(硬性, Hard SD)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엄밀성과 수치예측에 초점을 둔 경성SD와 달리 질적 방법론과 질적 피드백 행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연성SD로 분류하며 이러한 접근법을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라고 칭하였다(Sternman, 2000: 4-5; 김동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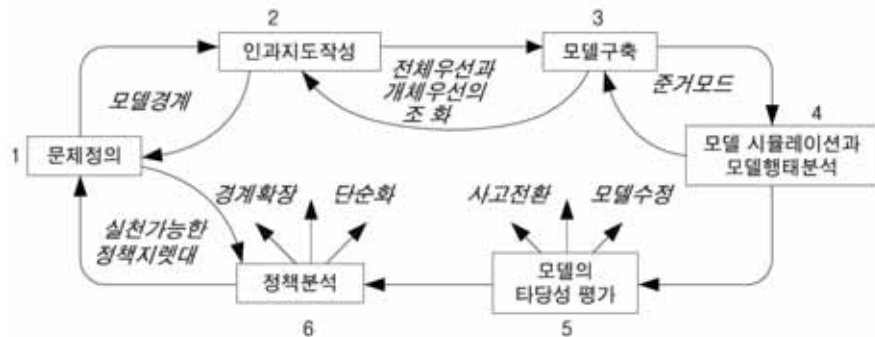
연성SD는 분석논리가 경성SD에 비해 귀납적이며, 분석의 범위가 넓고 과정중심의 연구에 적합하다. 분석의 범위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하에서 특수한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며, 풍부한 상황적인 요소와 과정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분

석대상간의 관계의 형태(pattern)를 대상으로 제한되지 않은 풍부하고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숫자화된 데이터나 숫자화되기 어려운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료의 모집과 분석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동적 행태에 대한 서술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문태훈,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분석과 같이 개별 마을공동체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대상으로, 자료의 확보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른 복잡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본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김도훈 외, 1999).

〈그림 5-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정책분석 절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과정으로서, 전 장에서 논한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검증결과를 참조하여 마을공동체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장기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된 방법으로 연성SD의 주 방법론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의 도출 및 이를 통한 시스템 행태의 동태적 추론 및 행태분석(System Thinking)을 시도하고, 특히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는 개별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 인과관계의 연결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동태적 전개과정의 원동력을 피드백 루프에 의해 표현하는 일종의 개념적 모형(Mind-map model)으로서, 연성SD의 경우

이로부터 동태적 행태에 대한 추론(System Thinking)을, 경성SD의 경우 이로부터 연립미분방정식(Simultaneously Differential Equation System)을 도출하여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특정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모형의 동태적 작용과정을 극대화 혹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주요 동역학 작용(feedback chains)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 — II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위해 3장 및 4장에서 활용되었던 사례 및 인과관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각 사례별 인과지도(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각 사례별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의 도출에 앞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에서 활용하는 인과지도의 전제와 관습(김동환, 2004)에 따라 개별 인과지도(도출해야 할 것이다.

인과지도 내의 개별 인자들간의 관계는 동태적·정태적 인과관계를 포괄하며, 인과관계의 방향에 따라 양(+의 인과관계 및 음(-)의 인과관계로 구분하며 개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에 개별 인과관계의 극성(polarity)을 표시한다. 특정 인자가 다른 인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인자가 또 다른 인자에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관계가 되돌아오는 구조를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라 칭하는데, 이 피드백 루프는 특정인자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의 복잡한 인과체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결정짓는 동태적 역학작용을 의미하며, 특정인자의 변화방향을 가속화(Reinforcing or Accelerating)시키는 루프를 양(+, Positive)의 피드백 루프, 혹은 가속(Reinforcing) 루프라 칭한다.

이와 반대로, 특정인자의 변화방향을 줄여주는(Balancing or Decelerating) 루프를 음(-, Negative)의 피드백 루프, 혹은 조절(Balancing) 루프라 칭한다. 개별인과관계의 극성(polarity)의 표현은 개별 화살표에 하는 반면, 피드백 루프의 극성은 일

반적으로 루프의 중앙에 표시하며, 양의 루프 혹은 가속루프인 경우 “P” 혹은 “R”로 표시한다. 반대로 음의 루프 혹은 조절루프인 경우 “N” 혹은 “B”로 표시한다.

1. 마을공동체 현안문제와 협력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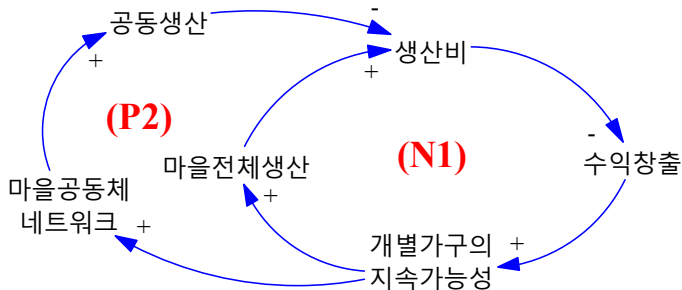
앞서 제시된 19개의 사례들 중 일부의 사례들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도적인 협력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모델그룹 A)

(1) 경북 의성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

사례 중 “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의 경우, 기존의 마을에서는 개별가구의 생산활동이 지속되면서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수익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때 공동체의 협력에 의한 공동생산 방식은 다양한 생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별가구 및 마을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동 인과지도[CLD A-1]에서 마을전체 생산량의 증가가 생산비의 증가를 통해 수익창출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N1]을 보이는 것이 기존의 마을공동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 CLD A-1: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생산 방식의 채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개인 및 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협력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공고화 과정[P2]에 의해 새로운 긍정적인 역학관계를 창출하는 것이 마을발전의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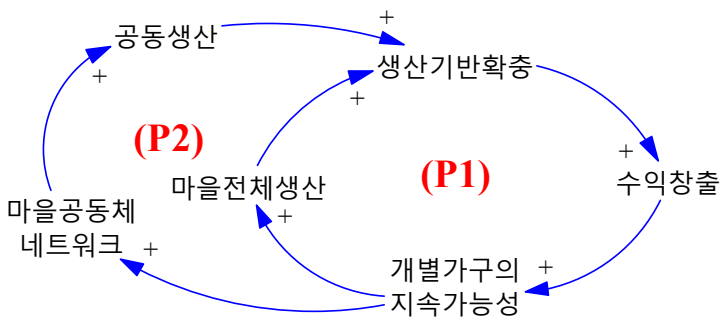
음의 피드백루프 [N1]은 “마을발전의 정체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의한 양의 피드백루프 [P2]는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1) 협력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같은 경쟁우위의 창출이 핵심 과정이며, 2)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3) 협력의 성과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사회자본 축적의 결과가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2) 전북 완주 안덕마을

다음, 사례 중 “다. 전북 완주 안덕마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3〉 CLD A-2: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특별한 위기로인에 대한 기술보다는 마을의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반을 확충하

고 이로부터 경쟁력이 창출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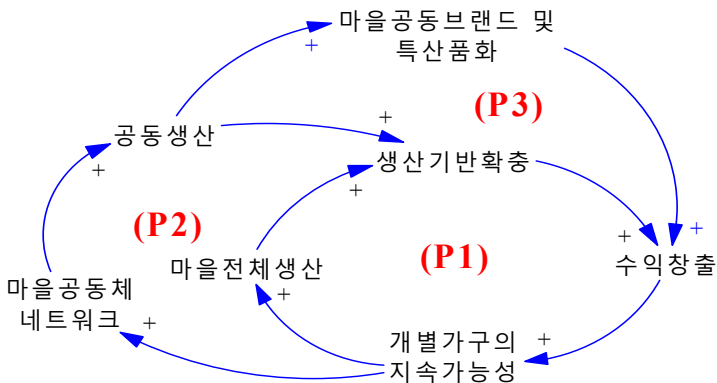
따라서 인과지도[CLD A-2]에서는 기존의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으로 해석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P1]을 전제하고, 마을공동체의 협업과정에 의해 이러한 순환과정을 촉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기존의 양의 피드백 루프[P2]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이 핵심적인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첫 번째 모델과 유사하나, 협력에 의한 경쟁우위의 창출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 외에 생산기반의 확충과 같은 마을자산의 축적이 특징적이다.

(3) 대전 유성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사례 중 “러. 대전 유성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림 5-4〉 CLD A-3: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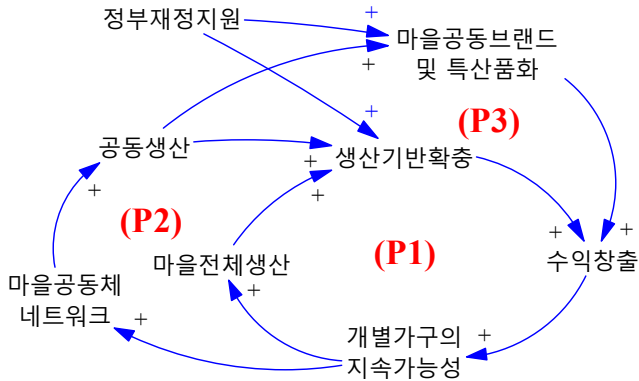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공동생산을 통해 ‘유기농 우리밀’의 브랜드가치를 공고히 한 사례로서,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로 볼 수 있는 양의 피드백루프[P2]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을공동의 생산기반과 같은 유형적 자산에서, 마을공동의 브랜드나 특산품화 등 무형적 자산으로 확장된 사례이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모델과 흡사하며, 협력에 의한 성과의 창출과정의 다양성을 주목할 수 있다.

(4) 강원 삼척 복동아리 마을

사례 중 “자. 강원 삼척 복동아리 마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림 5-5〉 CLD A-4: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효과



삼척 복동아리 마을의 경우 전술한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의 사례와 동일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생적인 촉진작용으로서 정부재정지원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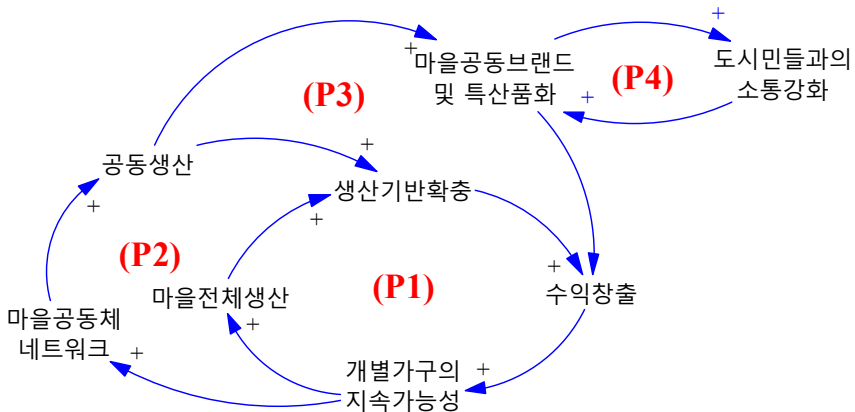
정부재정지원의 유무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가속화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역작용은 현재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주민간 분열, 즉 공동체 네트워크의 결속력 약화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명확한 자료에 의한 후속적인 모델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충북 단양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및 강원 화천 토고미 마을

사례 중 “너. 충북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및 “더. 화천 토고미 마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림 5-6〉 CLD A-5: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소통



동 사례들에서는 지역공동체의 협업에 의한 경쟁력의 창출과정에서 도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마을브랜드의 강화 및 교류확산, 지역마케팅 등 일련의 효과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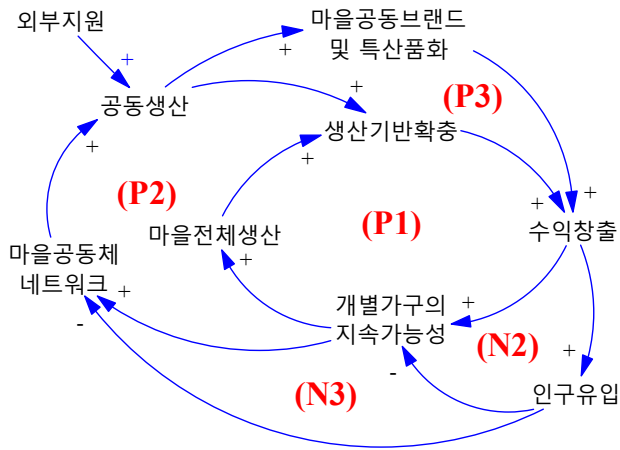
따라서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로 볼 수 있는 양의 피드백루프[P2 및 P3]와 연계되어, 이를 기초로 한 추가적인 외부와의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인 동태적 과정을 감안할 수 있으며, 이는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을 의미하는 양의 피드백루프[P4]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협력에 의한 성과의 창출과정의 다양성 및 확산과정 등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확산지원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전북 임실 치즈마을

다음으로 사례 중 “아. 전북 임실 치즈마을”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7〉 CLD A-6: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인구 유입



임실 치즈마을의 사례에서는 외인 신부의 초기 리더십 이후, 3개 마을의 젊은 세대들의 유입과 이들의 마을공동체 협력에 의한 발전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회자본 모형(김혜인 외, 2009; Patterson et al., 2004; Boumans et al. 2002)에 의하면, 인구유입은 가치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 등의 원인에 의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연결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모델링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N2]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작용[N3] 등을 모델구조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의 단기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이들이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사례인 홍성 풀무지역 공동체 및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에서 보다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모델링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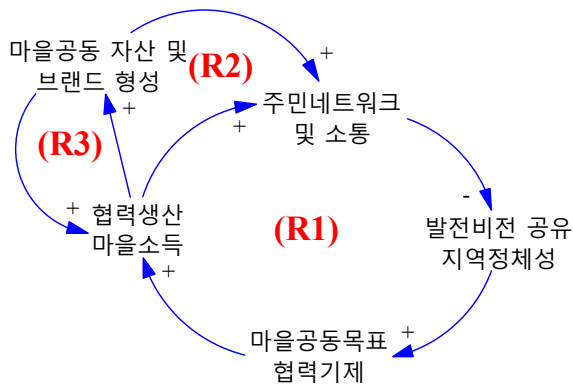
2. 마을공동체 비전과 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상기에서 다루었던 일련의 사례들은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체 주도적 협업과정과 그 긍정적, 부정적 작용들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의 공유에 기반한 공동목표와 성과창출이라는 공동체주도적 발전전략의 두 번째 본원적 과정에 대해 논함으로써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전북 임실 중금마을, 경남 산청 갈전마을 및 경남 남해 두모마을

사례 중 “라. 전북 임실 중금마을”, “하. 경남 산청 갈전마을(민들레 공동체)” 및 “머. 경남 남해 두모마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8〉 CLD B-1: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해 앞서는 협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작용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협업활동의 기제로서 공동의 지역발전 비전 및 목표의 공유와 이를 통한 성과의 창출이라는 동역학적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해당 사례들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및 발전비전에 대한 공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기제, 이를 통한 협력활동, 협력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 및 유무형 마을공동 자산의 축적,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신뢰형성 및 소통의 확대 등의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다.

인과지도[CLD B-1]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협력의 기제와 성과를 견인하고, 견인된 성과가 다시 신뢰형성 및 소통확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고리[R1 및 R2]가 제시된다. 이는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태적 사회자본 축적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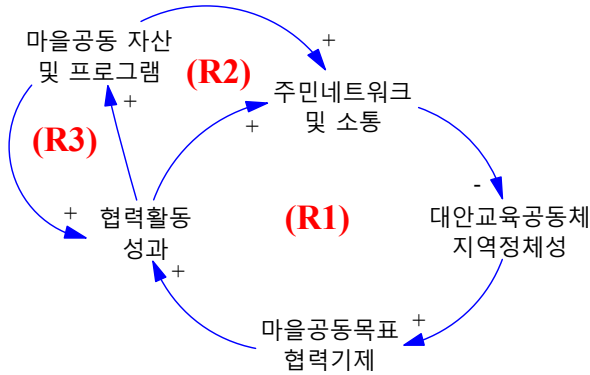
또한 협력의 성과를 통해 공동의 마을자산을 축적시키고, 축적된 자산은 다시 마을공동의 성과에 긍정적인 작용[R3]으로 피드백 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1)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도출하는 과정, 2)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관련된 행동들의 도출 및 추진, 3) 견인된 성과에 대한 유산으로서 축적되는 마을공동의 자산이 미치는 효과 등이 핵심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외생적 작용과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서울 마포 성미산마을 및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사례 중 “마. 서울 마포 성미산마을” 및 “카.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의 경우, 해당 두 개의 사례에서는 초기의 리더십에 의해 공동의 발전비전과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비전은 경제적 성과의 창출보다는 교육 및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의 강화와 연관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5-9〉 CLD B-2: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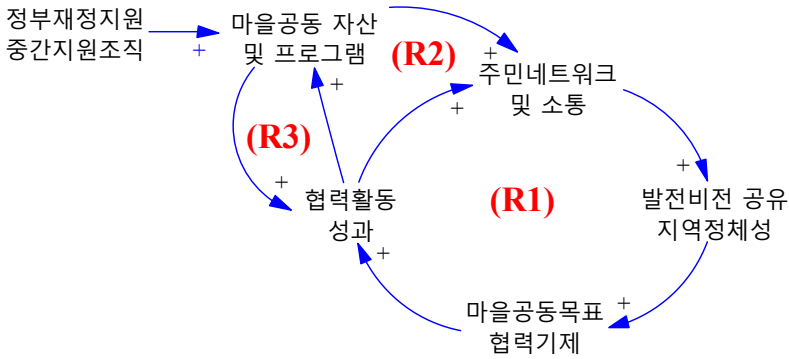
그리고 인과지도[CLD B-2]는 인과지도[CLD B-1]의 경우와 동일하다.

(3)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및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

사례 중 “바.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차.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및 “다.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의 경우, 해당 사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혹은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개입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인과지도[CLD B-3]의 기본구조는 앞서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입과정에 대한 외생적인 작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의 경우, 초기 공동의 비전과 목표형성을 통해 협력의 기제를 창출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개입되는 경우 성과와 관계된 물리적인 마을공동 자산의 축적이나 구체적인 마을공동의 프로그램에 관계된다.

〈그림 5-10〉 CLD B-3: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에 있어서 외부지원



마을공동체의 유무형 자산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협력활동의 성과로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결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재정지원의 경우 이것이 초기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견인 [R3]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R1 및 R2]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결여된 경우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역시, 협력활동이나 그에 관계된 유무형의 자산에 관한 지원보다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비전공유, 목표설정 및 협력의 기제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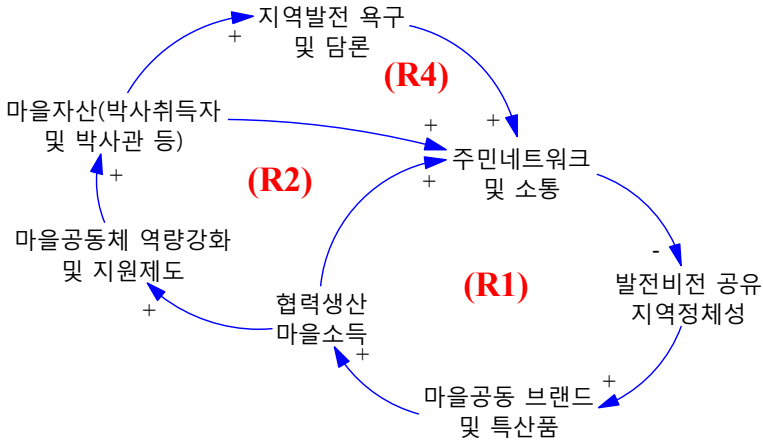
(4)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

다음으로 사례 중 “나.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의 경우, 마을공동체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에 따른 협력활동의 결과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특수한 마을 자원(박사학위 취득자 및 관련 지원센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인적자원으로서 마을자원(박사학위 취득자와 강화된 주민역량)이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과정[R4]가 새롭게 인과지도[CLD B-4]에 반영

된 것 외에는 기존의 모델과 큰 차이는 없다.

〈그림 5-11〉 CLD B-4: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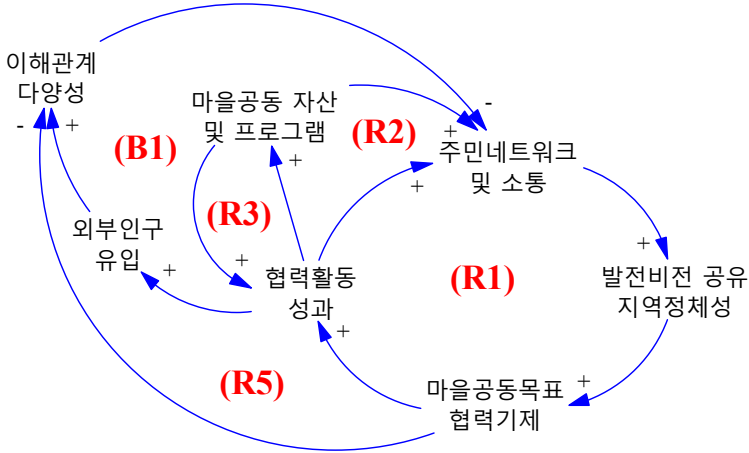


사례 중 “사. 충북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에서는 외부에서의 주민유입이 마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며 주민유입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의 비전과 목표, 소통과 협력의 기제가 원활히 작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의 인구유입은 이미 임실 치즈마을에 관한 인과지도[CLD A-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나 가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공동체 네트워크나 소통의 형성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 인과지도[CLD B-5]에서 인구유입은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다양성은 소통과 네트워크 결속력을 약화[B1]시키는 새로운 인과관계로 표현되었다.

다만 동 사례에서는 외부의 인구유입에 있어서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 목표에 동의하는 새로운 주민들만이 유입되었으므로 이러한 인구유입의 부작용에 대한 방어기제[R5], 즉 “신규주민의 지역공동체 동화 과정”이 형성, 즉 유입인구의 공동체 목표와의 일치여부는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게 된다.

〈그림 5-12〉 CLD B-5: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시 외부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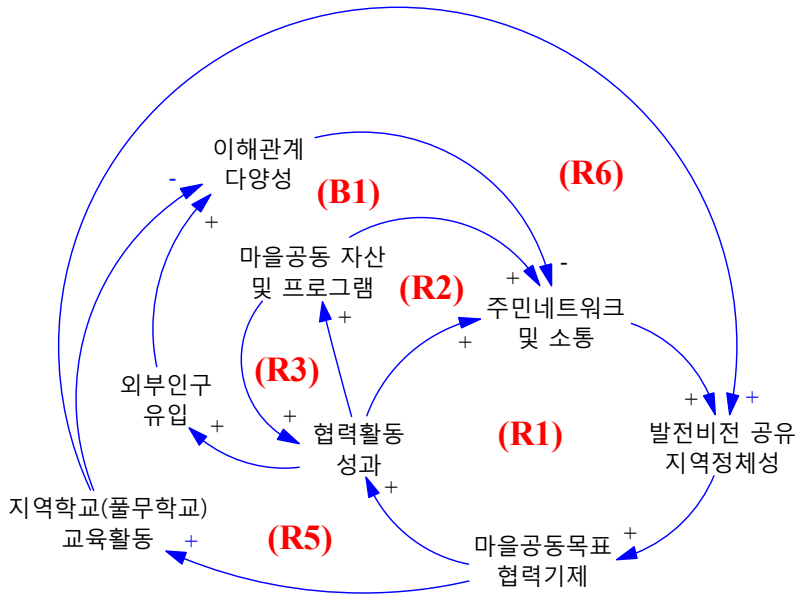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에 있어서, 1) 공동체 발전과정에서 인구유입이 필요한 혹은 불가피한 상황인지의 여부, 2)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 정체성 및 공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공유 등의 정책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5) 충남 홍성 풀무공동체

사례 중 “파. 충남 홍성 풀무지역 공동체의 사례에서는,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와의 유사점은 외부의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인구유입에 있어서 사전에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에 동의한 사람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는 유지되고 강화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마을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되는데, 그 이유는 풀무학교와 같은 지역학교의 존재와 역할, 기능에 따른 것이다.

〈그림 5-13〉 CLD B-6: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의 공유



즉, 새로운 인구의 상당수는 풀무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입되었거나 혹은 신규유입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풀무학교의 소통과 평생교육 활동의 결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소통, 공동의 가치와 목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에서 “신규주민의 공동체 동화과정”으로 명명된 조절루프[R5]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동 사례를 통해 규명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중요한 내재적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마을공동체 주도의 발전모형과 중장기 발전전략

상기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동태적 인과관계 및 작용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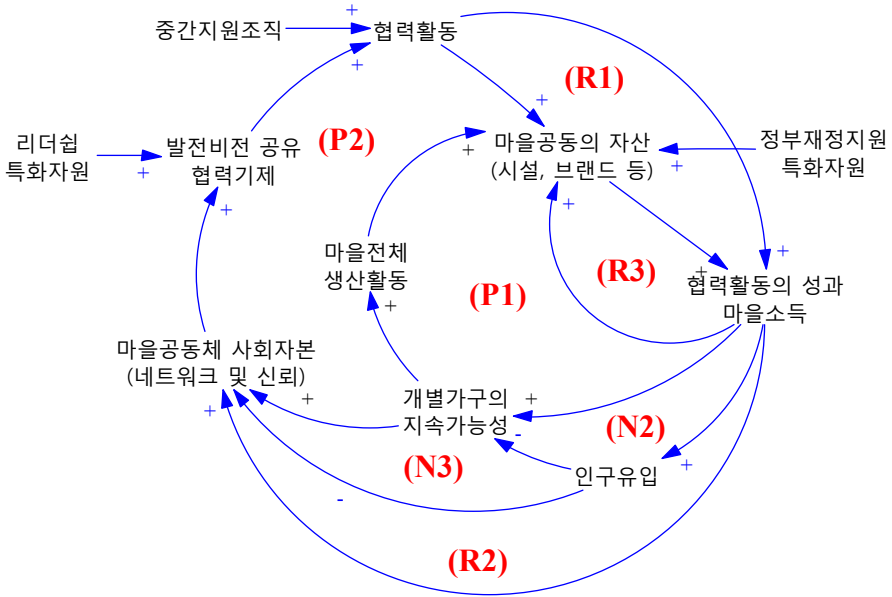
〈표 5-1〉 동태적 인과관계 모형(CLDs) 및 분석결과 요약

인과지도(CLDs)	해당사례	주요 동태적 작용	시사점
[CLD A-1]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가. 경북 의성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	마을발전 정체과정[N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 [P2]	1)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 2)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요소, 3) 협력의 성과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CLD A-2]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다. 전북 완주 안덕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 [P2]	
[CLD A-3]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러. 대전 유성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CLD A-4]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효과	자. 강원 삼척 북동아리 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 [P2]의 기본구조 및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촉진효과	정부재정지원 유무에 따라 기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가속화 및 부작용
[CLD A-5]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소통	너. 충북 단양 한드미 유통영농조합법인 더. 강원 화천 토고미 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 [P2 및 P3],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P4]	협력에 의한 성과 창출과정에서 성과의 다양성 극대화, 경쟁력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
[CLD A-6]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인구 유입	아. 전북 임실 치즈마을	상기 [P1~3]외에 인구유입의 지역경제 부정적 효과 [N2], 공동체 약화요인[N3]	인구유입의 부정적 효과, 관련 보완책은 [CLD B-5~6] 참조

인과지도(CLDs)	해당사례	주요 동태적 작용	시사점
[CLD B-1]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라. 전북 임실 중금마을 하. 경남 산청 갈전마을 머. 경남 남해 두모마을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	1) 공동목표에 합의 및 도출과정, 2)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과 관련된 행동 도출 및 추진, 3) 견인된 성과에 대한 유산으로서 축적되는 마을공동 자산의 긍정적 피드백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생적 작용과 지원 등 고려
[CLD B-2] 상동	마. 서울 마포 성미산 카.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CLD B-3]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에 있어서 외부지원	바.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차.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타. 대전 서구 정방이 마을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의 기본구조 및 정부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외생적 효과	정부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견인[R3]하는 것이 가능,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 [R1 및 R2]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중간지원 조직 역시 공동의 목표와 협력기제 도출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임
[CLD B-4]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마을의 인적자원	나.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	상기 [R1~R3] 외, 인적자원 축적의 공동체 결속효과[R4]	
[CLD B-5] 외부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결속	사. 충북 괴산 미루마을	상기 [R1~R3] 외, 인구유입으로 인한 공동체 결속약화	1) 공동체 발전과정에서 인구유입의 여부, 2)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정체성 및 공동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공유 등의 정책적 수단 필요
[CLD B-6]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의 공유	파. 충남 홍성 풀무지역공동체	[B1], 신규주민의 지역공동체 동화 과정[R5]	

이상과 같이 전 장에서 다루었던 19개의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로부터 추출한 다양한 동태적 인과관계 및 작용관계를 종합하여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발전과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14〉 CLD: 마을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모형



사례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 및 P3],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P4] 등 마을공동체의 협력과정에서 파생되는 공동체 발전의 선순환 고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 등의 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진화과정 에 대한 순작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인구유입의 지역경제 부정적 효과[N2], 공동체 약화요인[N3] 등의 역방향의 동태적 작용들도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중간지원 조직, 마을의 특화된 자원, 공동체 내부의 리더쉽 등의 주요 성공요인들이 이러한 동태적 순작용 및 역작용들을 변화시키는 매개변수 혹은 정책실험 변수로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은, 실증적 사례분석에 따른 귀납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탐색 적이며 질적인 모형으로서 최종단계의 모형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목

적에 충실하게 도출되었으며, 여타의 연구목적에 따라 기본구조의 변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형을 활용한 시스템 사고방법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모형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첫째, 공동의 목표에 의한 발전비전의 공유 및 협력의 기제, 둘째, 구체적인 협력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P1~2] 및 [R1~3]의 동태적 선순환 고리에 따라 발전이 가속화되는 과정을 따르게 되며, 인구유입에 따른 조절작용[N1~2] 등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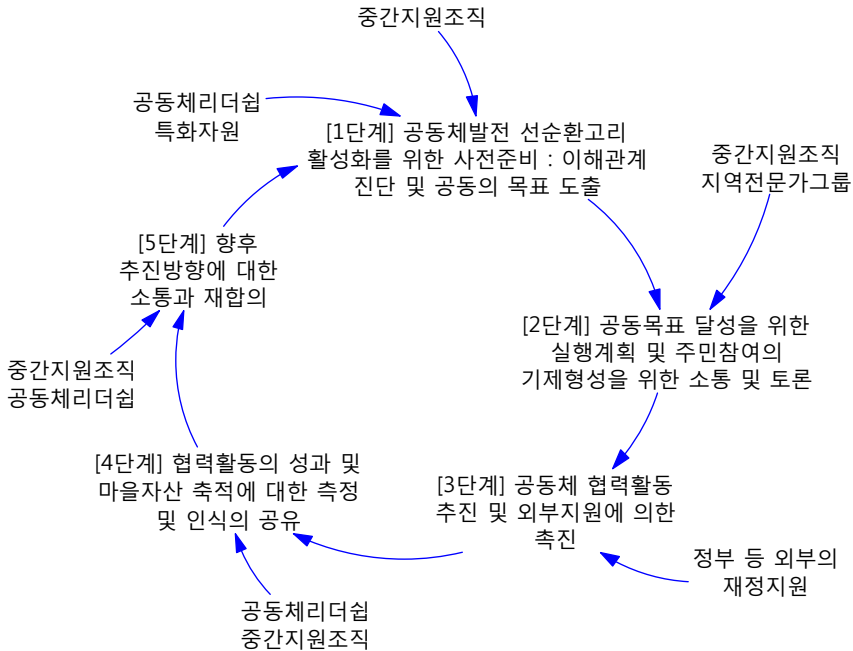
따라서 [P1~2] 및 [R1~3]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들의 동태적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내발적인 발전과정으로부터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활성화가 가능하나, 주요 선순환 고리의 작용인자가 약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P1~2] 및 [R1~3]로 제시된 선순환 고리가 지역발전 과정에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Dominant Feedback Loop)”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공동체 협력활동의 결과가 공동체의 네트워크나 신뢰에 미치는 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 선순환 고리의 상당 부분이 작용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 마을시설 등 마을자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내의 리더쉽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목표형성 등을 기점으로 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이 이러한 시발점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체계를 작동시켜야 하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마을의 단계별 목표와 소통을 원활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태적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역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원 혹은 협업의 성과창출 단계의 가시적인 지원이 주류를 이루는 바,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 소통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발전단계에서 선순환 고리들이 지배적 피드백 루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전략을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5〉 중장기적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추진 및 지원전략



첫째, 전략추진의 제1단계로서 중간지원조직 혹은 마을리더에 의한 선순환고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이해관계 진단 및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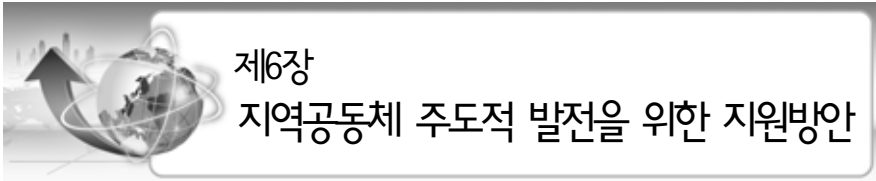
또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리더쉽과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공동체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전략추진의 제2단계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참여확대 기제의 설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혹은 지역전문가그룹에 의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략추진의 제3단계로서 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 및 정부 등 외부 지원을 통한 발전단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재정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단위로 발전단계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로 필요에 맞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넷째, 전략추진의 제4단계로서 협력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로서 축적된 마을공동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통해 일치된 공동체의 활동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전략추진의 제5단계로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사소통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목표의 수정, 필요시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한 현황의 진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의 재합의 단계로 4·5단계에서 공동체의 리더십에 의한 적극적 추진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1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조례

1.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각급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들 조례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경기 수원시 등 3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며, 또한 지역공동체 지원이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울산 북구, 강원 양양, 전북 완주, 정읍의 조례를 참고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지원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들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비록 조례의 순서와 형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총칙, 마을만들기 지원 및 지원계획,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실현,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마을을 만드는 목적을 제시하며 마을, 자

원,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기본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 주도하에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과 행정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복지증진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마을학교 운영,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문화, 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등을 포함한다.

한편 마을만들기 관련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그 역할과 기능, 구성 등이 해당된다.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심의, 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마을만들기 예산 및 집행계획,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부 시군구 지자체는 30여명까지 그 구성을 확대하고 있다. 위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지사, 부시장 등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경우와 공동위원장 2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동위원장 2인의 경우 부시장 1인과 위촉직에서 1인을 선출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종합지원센터 형식과 전담부서 형식(경기도)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 기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 지도자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현재 서울시, 전북도, 광주광역시

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조례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하고,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되,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4)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5)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지향하면서, 6) 전북도의 경우는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지사체에서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표 6-1〉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 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3.15	제정	마을공동체 담당관
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11	제정	
3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0.8.5	일부개정	
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8.1	제정	
5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9.12.28	제정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9.1.7	제정	

서울시를 제외한 5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마을만들기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조례의 명칭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 내

용을 살펴보면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차이는 서울시 조례 제2조(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09.1.7일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에서 '09.12.28일에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는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야 제정이 되었다. 서울시는 '12.3.1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 산하의 25개 기초자치단체중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간에 매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제정과 그와 관련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6-2> 참조)

이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로 마을만들기 관련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크게 전환된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12.8.1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미 경기도 내에는 31개 기초자치단체중 6개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양주시의 경우 이미 '08.5월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이미 유사한 조례가 존재하다가 이를 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는 마을만들기 형태의 지원조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조례'가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12.3.15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에 속해 있는 구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도 다른 광역시도와도 명확하게 구별되게 서울시 조례명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제정되었다. 서울시 내의 12개 기초자치단체중 강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 조례와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이며, 나머지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 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2.9.12	제정	자치행정과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27	제정	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16	일부개정	기획예산과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28	제정	자치행정과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9	제정	정책담당관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2	제정	자치행정과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5.31	제정	정책과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20	제정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10	제정	자치행정과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14	제정	참여구정담당관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5.4	제정	마을공동체 지원팀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26	제정	자치행정과
13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10	제정	기획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12.6.4	제정	
15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	'08.7.31	일부개정	주민자치과
16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08.12.31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일시와 유사하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운영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의 경우 광역시 조례보다 2년여가 빨리 제정·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6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다.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관련한 시기들을 볼 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가 먼저 제정·운영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도의 기초자치단체

다음은 도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현황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6개, 강원도 2개, 전북도 3개, 전남도 2개, 경북도 1개, 경남도 2개 등 총 16개 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아래의 16개 도의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위의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와는 일정부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해 왔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중앙정부가 최근 수년간 진행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CB형 지역공동체 사업, CB 사업,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 자립형지역 공동체 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문화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북향토산업마을 육성사업, 자연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있다.

〈표 6-3〉 도의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 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경기도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11.5.4	일부개정	마을만들기 추진단
2	경기도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조례	'12.8.8	타법개정	주민자치과
3	경기도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10.9.27	일부개정	
4	경기도 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	'08.5.13	제정	대외협력팀
5	경기도 하남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1.5.23	제정	자치행정과
6	경기도 화성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7.5	제정	재정법무 담당과
7	강원도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4.4	제정	정책기획과
8	강원도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8.6.23	제정	총무과
9	전북도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07.10.30	제정	
10	전북도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조례	'11.11.18	일부개정	도시과
11	전북도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10.5.31	제정	아토피전략 산업과
12	전남도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08.1.16	제정	기획홍보실
13	전남도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1.3.30	전부개정	건설과
14	경북도 영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5.11	제정	새마을담당
15	경남도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1.2.11	일부개정	행정과
16	경남도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조례	'11.7.29	제정	환경수도과

한편 이러한 다양한 조례명칭과 제정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유사성이 많이 있다.

5. 광역자치단체 조례비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비교하는데 있어, 일부 조례내용의 순서와 구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12년

제정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조례를 우선 비교·검토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전북도의 조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관련조례의 핵심적 내용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 둘째,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셋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표 6-4〉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구분 지역 (제정일)	분류	설명
서울 (’12.3.1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예산범위내 사업비 지원할 수 있음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조사 10.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	명칭 :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함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4. 종합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성 : 공동위원장 2명(정무부시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구분 지역 (제정일)	분류	설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p>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장의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p> <p>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심의후 재계약 가능
경기 ('12.8.1)	마을만들기 사업	<p>Ⅰ.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뜻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3. 저소득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6. 경기도 시·군 마을만들기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의료·교육·보육·교류·워크숍·포럼·국내외 견학 등의 행사 4. 마을만들기 관련된 연구·조사 5.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유치 및 지원 등
	마을만들기 위원회	<p>명칭 :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p> <p>설치 :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둠</p> <p>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4.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대상과 범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운영</p>

지역 (제정일)	구분	분류	설명
			구성 : 위원장1명(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당연직위원(업무관련 실국장) 및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임기 : 위촉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명칭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효율적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채용·배치함을 원칙 기능 :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의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6.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전파 7. 마을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지원 :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 가능
부산 (12.7.11)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각각 위원중 호선)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소속 3급이상공무원, 시의회 추천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기 : 위촉직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구분 지역 (제정일)	분류	설명
	지원센터	2.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분석 및 평가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갱신 가능
전북도 (’09.12.28)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 사업 지원 1.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도 협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1명(행정부지사), 부위원장1인(공무원아닌자 호선) 간사(마을만들기 총괄담당)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당연직(행정부지사, 담당국장), 위촉직(도의회 의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등)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임기 : 위원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마을만들기 지도자와 주민 교육 2.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조사 5. 마을만들기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기타 도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관리 및 운영 : 관련 법인이나 협의회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 가능, 위탁기간 2년, 재위탁 가능

4개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주로 사업내용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특히 위원장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위원장을 부지사가 하는 경우(경기도, 전북도)와 민관 각각 1인의 공동위원장(서울시), 위원 중 호선(부산시)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때, 위원장을 부지사로 당연직화하는 것은 주민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위의 관련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지원센터 또는 협력센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를 전담부서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참여 및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전담부서화 함으로 인해, 민간 위탁이 불가능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주도성 확보에도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기초자치단체 조례비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 존재하는 32개 기초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바, 이중 상호 비교가 용이하도록 동일 광역시 또는 광역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우선 비교·검토하며, 검토할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를 준용하기로 한다.

또한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비교를 위하여 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같이, 유사한 마을공동체 관련 팀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팀), 양천구(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와 노원구(자치행정과) 조례를 임의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표 6-5〉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1

구분 지역 (제정일)	분류	설명
공동	용어의 정의 (종로구 조례 인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마을학교”란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 종로구 (’12.5.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 : 행정지원 및 예산범위내 사업비 지원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조사 10.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조례 제20조의 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분 지역 (제정일)	분류	설명
		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10-15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종로구청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재계약 가능
서울 양천구 (’12.6.20)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로구와 동일
	마을공동체 위원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조례 제20조의 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15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양천구 의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 : 종로구와 동일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가능, 위탁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서울 노원구 (’12.6.28)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로구와 동일
	마을공동체 위원회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종로구와 동일 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양천구 의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종로구와 동일

한편 타 광역시도내 기초지자체간 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중 조례시행일시와 담당부서 등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 하남시, 강릉시 조례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최근 제정 운영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유사하며, 사업지원, 위원회, 지원센터로 구분되어진다. 경기도 하남시 조례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강릉시 조례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표 6-6〉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2

구분 지역	분류	설명
경기 수원시 (’11.5.4. 일부개정)	조례명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구성 : 위원장(제2부시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시의회 의장 추천 의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임기 :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연장가능
경기 하남시	조례명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지역	구분	분류	설명
('11.5.23)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p>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사업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구성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 호선), 포함 15명 이내 구성, 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4명 이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p> <p>임기 :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p>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존재하지 않음	
강원 강릉시 ('12.4.4)		조례명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지원내용 별도 명시없음
		마을만들기위원회	<p>마을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만들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구성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포함 12명 이내 구성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지원센터소장 위촉직 : 마을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기 :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p>
	마을만들기지원센터	<p>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3.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연장가능</p>	

7.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시·도의 장의 책무) 00광역시·도의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0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광역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 2.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 3.광역시·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4.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5.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6.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2.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3.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광역시·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광역시·도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도의 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의 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지문하기 위하여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00명과 부위원장 00명 등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위촉직 위원, 위원중 호선 등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또는 공무원 아닌 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각 자치단체별 기준을 마련하여 두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1. 해당 자치단체 소속 00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자,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주민대표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00년으로 하고 00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00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일정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일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일정(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간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3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00년으로 하고,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26조(지도 감독) ①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000 호, 2000.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당 시, 군, 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 구 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구 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란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학교”란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 해당 시, 군, 구의 장(이하 “기초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해당기초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00명을 포함하여 일정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위촉 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00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일정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일정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일정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00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기초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000 호, 2000.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절 협동조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1. 협동조합의 개요

유엔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은 대안적 경제사회발전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된 상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조직임을 알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항).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목적 및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6-7〉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협동조합은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되며 다양한 법인형태가 가능하

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이 가능하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크게 7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3가지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6-8〉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 운영원칙	우리나라 기본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⑥ 협동조합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소규모 단체가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법적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본법은 총 6장, 제1조부터 제11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된다.

협동조합과 일반 회사에서 적용되는 상법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6-9〉 협동조합과 일반회사간 비교

구분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종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일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원리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 증진
설립방식	설립 등기(신고제)	신고(일반), 인가(사회적)
운영방식	1주(좌) 1표 또는 1인 1표	1인 1표
특징	배당제한 등이 없음	지속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배당제한, 법정적립금이 존재

출처: 오은주·김선기(2012: 3)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에 대해 법적 정의를 새롭게 내려, 5인 이상의 소규모 단체가 용이하게 법인화를 용인하였다. 기존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은 본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기존 개별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년),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산림조합법(1980년), 새마을금고법(198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년) 등 총 8개 법이다.

또한,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사회적기업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 법인이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사업 범위의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목적에 규정이 없으며 10/100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 범위와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고 있다.

〈표 6-10〉 협동조합의 유형간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성격	영리/비영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인증	노동부장관 인증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각 부처 위임가능)
사업범위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사업범위 제한 없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복지 증진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자리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사회적 목적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 비율	규정없음	위 항목 중 주 사업의 40% 이상
이윤배당	이윤의 1/3범위내에서 가능(영리기업)	잉여금의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3.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협동조합의 원칙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 생존의 필수요건이기도 하며,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의 참여없는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980년대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양극화의 심화와 도시 및 농촌의 지역공동체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지역공동체 차원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의식적인 공동체 발전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들이 많았다. 캐나다 퀘벡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퀘벡의 협동조합 모델로 한 공동체경제발전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이 갖는 의미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을 연구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협동조합은 투자 또는 공급가격 결정시 조합원의 이익 및 요구,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 등 이윤 외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착도가 높고, 지역자원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시장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실업문제, 고령화, 빈곤양극화 및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서 모델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사회단체 및 지역민 함께 결합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힘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6개 추진목표를 담은 ‘협동조합 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민·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하게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OOO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협동조합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제공해 주고, 관련 전문기관에게 연결시켜주는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의 제정, 운영과 함께 설립, 운영중인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협동조합 지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제3절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추진 방안

1. 기존 한계 및 방향

기존 지역공동체 관련 다양한 사업들은 각 사업들간의 총체적인 연관성이 적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적게는 1-2년, 길어야 3-4년에 걸친 단기 또는 중기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일시적 사업으로 한정된 것이 사실이다.

지역 및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은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해당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역시민, 전문가 집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공동체 지원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상세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추진체계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각 단위별로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지역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원칙 및 방향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유관기관별 난립하고 있

는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처별로 수립하고 있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의 동시적 경쟁적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6-11〉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추진내용 및 방향

구분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실행조직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공동체사업 발굴 추진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지원조직 성격부여 (전문가그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도, 행정적 지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그린마을 및 솔로시티 에너지자립마을 위기대응 회복공동체 마을기업 및 Community Business 다문화공동체, 대안교육공동체 등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조직 계층화: 행안부-중앙실행센터-지방센터-마을조직(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중앙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방센터: 독립적 지원센터(서울, 전북 등)와 전담부서형태(경기)등 가능 관리 및 운영 위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위원회(기본계획, 연차계획수립, 행정적 지원) 민간협력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 일정부분 독립성 보장 중앙 및 지방위원회 구성과 지원 등
비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의 녹색길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희망 집수리, 지역특산물·지역자원활용 마을기업, 어린이 안전도우미, 자원재활용·자전거 일자리사업 등 기존 발전국 사업의 포괄 승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NGO, 연구조직, 민간기구 활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TMO와의 연계 법령제정과 조례관계성 검토

따라서 중앙부처는 부처간 긴밀한 협의조정회의 또는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사업내용이나 사업지침 등을 일정부분 통일하여 시달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김선기 외, 2011: 85).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가 하나의 기본정책

을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지자체가 담당사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과 마을과의 긴밀한 결합력이 강조되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조직과 별도로 이를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형태의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 제도, 행재정적 지원으로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 정책추진 방안

지역공동체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기반의 경우 각 주체 별 별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입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발굴을 담당하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분석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진흥원 혹은 중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정부 그리고 NGO 및 외부전문가 등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간 상호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즉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일회적 국비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역공동체 조성기금을 설치 및 운영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조성기금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일회적 국비지원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함으로써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세밀한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조성기금을 활용한 중앙 지원센터 중심의 장기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소액 차등지원 등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경우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기금회수를 통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산개되어 있는 CB센터 등 각종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마을만들기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 추진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로서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위법인 관련 법률도 검토되어야 한다. 조례에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기본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그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와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및 재정확보 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중개, 또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역량이 큰 곳에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되,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계약적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

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그 위탁계약은 갱신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그 업무를 윈스톱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상담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전문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선기 외, 2011: 92).

6. 중앙과 광역 시도 및 시군 마을단위 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만으로는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급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광역 시도와 시군 지자체 및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간을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령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지원 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대부분의 조례에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은 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그리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리더로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 광범위하게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이들은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TMO : Town Management Office)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공동체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주도성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사업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시스템 형태의 사업지원방식은 단기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원관행은 중장기적 지역공동체 발전사업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기적, 단발적 국비지원 형태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이외의 사용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 연구목적 및 개념적 접근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관한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의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당당한 세계무대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생겨나며, 나아가 지역공동체라는 하나의 유기적 형태로서의 주체적 역할의 정립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 주요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를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통해 그 발전모형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

용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을 뜻하는 지역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역에 대해 공유가 있어야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 및 소속감을 유지하는 상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같은 지역공동체의 주도의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해 지역 내에서는 소외된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외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 권한이 지역수준으로 위임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선행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잠재적 자원을 활용할 것, 지역정체성 확립을 통한 비전 설정,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인력양성과 교육의 필요성, 주민주도의 리더십 형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요청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공동체의 구성 요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기초분석 결과 일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유무(전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정도를 제시하였는데, 주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는 체험, 배려, 대학, 리더,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랜드, 특산품, 단체, 목표, 연구진, 중간지원, 민간지원의 경우는 지원 전의 지역공동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지원이 미약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지원 이후에는 지원 이전에 중시되던 체험, 배려, 대학, 리더, 지원 요인이 체험, 목표, 대학, 지원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지역공동체의 목표가 보다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되어 지역공동체의 목표 형성이 향후 활성화를 좌우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및 요인검증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A. Wagner의 이론 구조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실증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결정요인론적 연구에 의한 단편적인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독립변수의 설정은 지역공동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후로 구분되어 적용하였고, 전체 독립변수는 체험, 브랜드, 특산품, 단체, 목표, 배려, 대학, 연구진, 리더, 지원, 중간지원, 민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고려하였으며, 정성적인 측면 외의 정량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 향상 정도를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인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해 경로모형을 시행하였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본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지원 전에는 브랜드, 중앙 및 지방지원, 민간지원, 단체, 목표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원 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본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브랜드, 중앙 및 지방지원, 민간지원, 단체, 배려, 목표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원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 및 후에 대한 각각의 결과에 대한 검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전보다는 지원 후의 적합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요인들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의 지원 전의 만족도 향상에는 연구진에 의한 인력 및 교육으로 배양된 취약계층의 배려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자원, 인력 및 교육, 정체성, 지원, 리더에 대한 운영자 및 전

문가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확인적 요인과 경로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최적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출을 구조방정식을 구축함으로써 도출한 결과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에 대한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측변수는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운영 측면에서는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잠재변수 중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단체(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 목표(공동의 목적), 배려(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지원 전·후의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모든 항목에서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리더, 지원 중 리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운영 만족도만 절대량은 감소하였지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리더를 제외한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 지원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보다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지역자원, 중앙 및 지방, 민간에 의한 지원 중 지역자원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은 지역 정체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지역자원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에는 두 잠재요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후에는 리더에 의한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를 제외한 지역자원, 지원, 정체성, 인력 및 교육은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 효과가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보다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장기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다음으로 이러한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각 사례들로부터 연성 시스템 다이내믹스(Soft System Dynamics) 접근법에 의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장기적 발전과정을 감안한 육성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변화과정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속적으로 마을의 단계별 목표와 소통을 원활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태적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역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원 혹은 협업의 성과창출 단계의 가시적인 지원이 주류를 이루는 바,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 소통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발전단계에서 선순환 고리들이 지배적 피드백 루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전략을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략추진의 제1단계로서 중간지원조직 혹은 마을리더에 의한 선순환고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이해관계 진단 및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리더쉽과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공동체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전략추진의 제2단계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참여확대 기제의 설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혹은 지역전문가그룹에 의한 전문적 지원

이 필요하다. 셋째, 전략추진의 제3단계로서 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 및 정부 등 외부지원을 통한 발전단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재정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단위로 발전단계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로 필요에 맞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넷째, 전략추진의 제4단계로서 협력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로서 축적된 마을공동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통해 일치된 공동체의 활동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추진의 제5단계로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사소통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목표의 수정, 필요시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한 현황의 진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의 재협의 단계로 4·5단계에서 공동체의 리더십에 의한 적극적 추진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수립한다면 우선 지역공동체 지원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상세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추진체계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각 단위별로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각급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조례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원칙은 우선,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하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되,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로써 지역공동

체 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만으로는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급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광역시도와 시군 지자체 및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간을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그 업무를 윈스톱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상담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전문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기적, 단발적 국비지원 형태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방안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투자 또는 공급가격 결정시 조합원의 이익 및 요구,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므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착도가 높고, 지역자원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즉,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통하여 정부와 시장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서 모델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사회단체 및 지역민이 함께 결합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적 사례분석을 하였고, 이와 함께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 주요 사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를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내적 및 외부 형성요인에 대한 결정요인론적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측정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output)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보완하여 다양한 영향력 주체(actor)들의 관계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지역공동체 발전에 관한 선행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의 필요성, 주민주도의 리더십 형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요청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공동체의 구성 요인을 지역자원, 정체성, 인력, 리더,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그 구성 요인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만족도 정도의 제시에 추가적으로 전체 만족도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 추출에 목적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 지역에서 얻어진 결과 및 시사점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에 대한 현실과 특징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각각의 지역공동체는 서로 상이한 지역적 특성,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전략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방안으로서의 조례제정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를 연결하여 그 효율성을 더할 중간지원조직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석(1996), 「사회현상분석도전」, 나남출판사.
- 강용배(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지역사회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89-215.
- 곽행구·송태갑(2007),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 본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리전인포」통권 제111호.
- 곽현근·노병일·강용배(2003), “동구지역의 혁신과 동네 만들기 운동사업: 지방분권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동구혁신사업의 방향과 과제”, 「제19차 동구포럼발표논문집」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 구본영(1999), “우리나라 계획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4(1): 303-326.
- 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훈·문태훈·김동환(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 김동환(2004),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선학사.
- 김선기·박승규·전대욱·최인수(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정(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 김재현(2012),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서울경제」12년 5월호: 3-12.
- 김종수(2011), 「유럽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김종숙(1998), “자생적 지역공동체와 발전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9: 263-290.
- 김진모(2009),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사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임실 박사골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윤·김진영(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현식·박세훈(2005), “도시공동체를 키우자: 도시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의 도전”, 「국토정책 Brief」 제97호(2005. 12. 19): 2-4.
- 김형용(2008), “미국 지역사회개발 동향과 지역개발법인(CDCs)”, 「국제사회보장동향」2008

- 봄호(2008.3): 95-110.
- 김혜인·전대욱(2009), “지속가능발전 모델링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도입: 세 편의 시스템 다
이내믹스 모델에 대한 제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0(3): 25-45.
- 나효우(2011), “Community (Peoples) Driven Development”, 제33차 ODA 월례토크 「CSO,
개발을 꿈꾸는가 변혁을 꿈꾸는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17-19.
- 남석원·이성룡(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이슈&진단」 제47호, 경기개발연구원.
- 노형진, 정한열(2007), 「한글 SPSS」, 형설출판사.
- 다무라아키라(2008), 「마을만들기와 도시경관」, 형설출판사.
- 문태훈(2002),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3(1): 61-77.
- 박경(2006),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박승현(2009),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과제: 경제·문화·자치의 공
동체 활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 마을만들기.
- 박인규(2007), 「마을만들기의 성격과 현황 그리고 과제」, 마을만들기 세미나,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www.maeul.kr)
- 박지민·윤정숙(2010), “도시 속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대회논문집」계03. 제01분과 건축계획: 101-102.
- 박진도·유정규(2005), “지역혁신과 리더의 역할”, 「지역혁신과 지역리더」, 지역재단 2005년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 변미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SDI정책리포트.
- 송영필·박용규(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원 SERI Issue
Paper 2005. 4. 1일자.
- 송창용·성양경(2009),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REVIEW」12-30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예철(2012),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기근(2010),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공공행정연구」11(2):
69-87.
- 오은주·김선기(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 51호 (2012. 9).

- 유경화·신원형(2003), “경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간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행정학보』 37(3): 379-397.
- 이세규(2010),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163-184.
- 이영범(2011),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논총』 4(2): 97-119.
- 이일열·박문규(2010), “이미지 연출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웰빙, 녹색 관광 개발 가능성 연구: 대전지역 사례”, 『한국관광학회 2010 대전국제관광학술포럼 및 워크숍』 2010. 4: 17-27.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도시 공동체 운동』: 23-49.
-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이종열·이재호·변일용·김인(2005), “주민중심적 지역개발 전략: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139-153.
- 이흥택(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임정수(2009),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maeul.or.kr).
- 정남수·조영재·장우석·정호현·김홍연(2010),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정수화·이한주·이화진(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 정지웅·임상봉(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태인(2012),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재단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2. 3.
- 지경배·김장기(2008),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실태와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6(4): 145-166.
-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차철욱·곽현근·김선욱·김용우·김재현·이귀원·이상봉·문재원(2011), “지역공동체,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5: 3-316.
- 최경은(2006), 「현대 한국사회의 지역축체 현황과 분석」, 유럽사회문화연구소.
- 최병두(2007),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과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국토연구원.
- 최승호(2009),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최종렬(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97-132.
- 최종찬·고홍근·구하원·김형준·박금표·이명무·이은구·이춘호(2010),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상일(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 한상일(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1): 223-246.
- Asian Development Bank. (2008), *Community-Driven Development and Strategy 2020*. Manila, Philippines :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Documents/Participation/Brochure-CDD.pdf>)
- Atkinson, R. & P. Willis (2006), “Community Capacity Building . A Practical Guide,” Paper #6 Housing and Community Research Unit, School of Sociolog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 Audit Commission (2005), “Government Funding of Voluntary and Community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Third Sector Conference QEll Centre, London, 30 June 2005.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Special Issue: Self-Efficacy Theory in Contemporary Psychology, 4: 359-373.
- Berkowitz, B. (2000), “Community and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J. Rappaport & E. Seidman (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pp. 331-357.
- Boumans, R., R. Constanza, J. Farley, M. Wilson, R. Portela, J. Rotmans, F. Villa, M.

- Grasso (2002), "Modeling the dynamics of the integrated earth system and the value of global ecosystem services using the GUMBO model." *Ecological Economics*, 41: 529–560.
- Briggs, X. S. (2007), "*Rethinking Community Development: Managing Dilemmas about Goals and Values.*" Knowledge-in-Action Brief 07-1, Working Smarter in Community Development, MIT. (web.mit.edu/workingsmarter)
- Chaskin, R. J.(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521-547.
-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2004), "*There is Another Way.*" London: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 Cooper, T. L., & J. A. Musso (1999), "The Potential for neighborhood council involvement in American metropolitan governance," 2(1/2)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Theory and Behavior* 199-232. (Special Issue: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Influencing Public Policy Processes: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 Dongier, P., J. Domelen, E. Ostrom, A. Rizvi, W. Wakeman, A. Bebbington, S. Alkire, T. Esmail, and M. Polski, (2002). "Chapter 9: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In J. Klugman (Ed.),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 Volume 1 - Core Techniques and Cross-Cutting Issues*, Washington, D. C.: World Bank.
- Gupta, S. P. (1967),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Finance*, 22(4) : 423-461.
- Harris, J. (2001), "*FERDINAND TONNIES : Communit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ery Jr.,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Kretzmann, J. P., & J. L. McKnight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 Chicago, IL: ACTA Publications.
- Laville, J., B. Levesque, M. Mendell (2005), "*The Social Economy: Diverse Approached and Practices in Europe and Canada.*" Montreal: Cahiers de l'ARUC-ES,

- C-12-2005 (December). Also available from :
http://www.ssc.wisc.edu/~wright/ERU_files/social-economy-2.pdf
- Liao T. F.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101, Sage Publication.
- Loukaitou-Sideris, A. & Banerjee, T. (1998).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hie, A. & G. Cunningham (2002). "From Clients to Citizens :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Occasional Paper Series, N4.
- Mattessich, P., B. Monsey & C. Roy (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A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Community Building." Amherst H. Wilder Foundation: St Paul, Minnesota.
- McMillan, D. W. & 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rchant, F. (2010), "Analyzing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in Afghanistan using the National Solidarity Program case study." MPhil Dissertation to Department of Engineering, University of Cambridge.
- Musgrave, R. A. (1969), "Fiscal Systems,"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 Naidoo, K. & V. Finn, (2001), "From Impossibility to Reality: A reflection and position paper on the civic index of civil society project 1999-2001."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ship Participation.
<http://www.civicus.org/new/media/CIVICUSPositionPaper1.pdf>
- OECD (1998), "OECD Proceedings Valuing Rural Amenities," Paris: OECD.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김정섭, 오현석 역(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 Patterson T., T. Gulden, K. Cousins, E. Kraev (2004), "Integra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 dynamic model of tourism in Dominica." *Ecological Modeling* 175: 121 – 136.
- Pickett, S., M. Cadenasso & J. Groveb (2004), "Resilient cities: meaning, models, and

- metaphor for integrating the ecological, socio-economic, and planning realm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9: 369-384.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 Jossey-Bass.
- Sternman, J. D.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Irwin McGraw-Hill International.
- Tanaka, S. (2006), “*A review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s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www.adb.org/Documents/Participation/Review-CDD-Application-ADB.pdf)
- Verity, F. (2007), “*Community Capacity Building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 Walker, C. (2002),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their Changing Support Systems,*” Metropolitan Housing and Communities Policy Center, Washington, D. C. : The Urban Institute.
- Wagner, A. (1877), “*Finanzwissenschaft.*” Leipzig: C. F. Winter.
- Warren, R. B and Warren D. I. (1977), “*The Neighborhood Organizer's Handbook.*” Notre Dame, Ind.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Wilkinson, K. P. (1991), “*The Community in Rural America.*” New York: Greenwood Press.

■ ■ Abstract

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These days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problems of regional/local polarization that aggravates the crisis of peripheral areas such as emigrant, aging and decreasing population, and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are strongly desired to deploy a development strategy against those issues. Common approaches they have been apt to adop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re community-driven development, machi-tsukuri, and community interest bodies to revive communities and localities and to promote,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social economy, community business and co-operatives based on local resources toward the endogenous development of the area. In Korea, some of the recently-elected mayors in some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tr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to reform with citizen participation some remarkable livable community design projects which has been revealed as successful so far today, while most of similar projects performed by the central and other local/metro governments without it still seems to be fruitless.

This study is inten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such policy effor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ors affected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spective effects of such livable community projects driven mainly by administrative offices and by particip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the key success factors of and to understand community-driven development processes in order to help Korean policy mak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policy strategy and adequate tools for the development towards alleviating the possibility of undesirable results from planning and performing their community development plans.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deals with the key success factors of the processes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survey and review of 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in community level.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s approve to conceptualize the processes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and elaborate a list of the key success factors of the process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ripheral areas. Second, the in-depth case study is presented of some successful Korean cases of the development to test the factors empirically. The authors selects a set of Korean model cases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consisting of the 19 community-level projects that have been mentioned as successful in empirical literatures or awarded by the public during the last 5 yrs.

The third part of the report is to perform a questionnaire survey of main participants to measure the effect of each factors of the community-driven development. Also, a Structural-Equation model of the factors and the relevant analysis are performed to systematic effects of the factors.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the model analysis reveals that most of the factors, among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reinforcement of local identity,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ducation, formulation of community-driven leadership, participation of comprehensive local stakeholders, are significant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 Korean cases. The fourth part of the reports consists of explaining of the dynamic property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process and suggesting a mid- and long-term strategy of the relevant policy as well as the best practice model,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supporting and incubating agencies and the legislation of laws and ordinance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for Korean policy makers.

The contribution point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and practically, to provid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nd tools accelerating public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 government-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authors finally comments that the factors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derived and approved in this study would be generalized and extended if considering various local characteristics by types and changing environmen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crisis likely to affect the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further research.

[부록] 설문지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ID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체계 전·후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집단통계 처리되며,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담당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박승규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1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화 : 02) 3488-7343

이메일 : skpark@krla.re.kr

♣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 질문 ♣

1. 귀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험 ② 브랜드 ③ 특산품 ④ 자생적 활성화
 ⑤ 공동의 목적 ⑥ 취약계층 배려 ⑦ 지역대학 연계
 ⑧ 지역출신 연구진 도움 ⑨ 혁신적 지역리더
 ⑩ 리더에 대한 지원 ⑪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⑫ 민간의 지원 및 자문

2. 귀하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원 전·후로 선택해 주십시오.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지역공동체의 어메니티 관련 질문 ♣

[Q]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 중에는 ① 마을 고유의 테마와 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체험활동, ② 지역공동체의 독자적인 브랜드 유무 및 브랜드화의 추진, ③ 지역주력 상품 혹은 특산품의 유무 및 만족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 전·후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역공동체의 체험 활동(마을 고유의 테마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역공동체의 브랜드(브랜드화 추진)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3. 지역공동체의 특산품(지역주력 상품 및 특산품)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관련 질문 ♣

[Q]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체성 요인 중으로는 ① 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 ② 공동의 목적 유무 및 실현 정도, ③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 전·후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역공동체의 단체(자생적 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역공동체의 목표(공동의 목적)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3. 지역공동체의 배려(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지역공동체의 인력 및 교육 관련 질문 ♣

[Q]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인력 양성 및 교육 공급에 대한 요인 중으로는

- ① 지역대학과의 연계 유무, ② 권역 출신 연구진의 도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 전·후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역공동체의 대학(지역대학의 연계 유무)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역공동체의 목표(권역출신 연구진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지역공동체의 리더 관련 질문 ♣

[Q]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 요인 중 지도자에 의한 영향은 ① 혁신적 지역리더의 유무, ② 리더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 전·후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역공동체의 리더(혁신적 지역리더)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역공동체의 지원(리더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지역공동체의 지원 관련 질문 ♣

[Q]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 요인 중 지원에 의한 영향은 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및 협조, ② 민간의 지원 및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 전·후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역공동체의 정부지원(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역공동체의 민간지원(민간에 의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

[지원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지원후]

-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설문자 일반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
⑥ 대학원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발행인 : 한 표 환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Tel. 02)3488-7300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http://www.gpcbooks.co.kr>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7865-363-3